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29-14

#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외국인 단속과정 중심 -

2009. 12. 28



**집필자**

이병렬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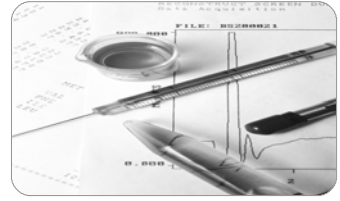
문은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 목 차



I. 총 평 .....	1
1. 조사배경 및 목적 .....	3
2. 조사내용 및 방법 .....	4
3. 용어 정의 .....	4
4. 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
5. 결론 .....	23
II. 서 론 .....	27
1. 조사 배경 .....	29
2. 조사 내용 및 방법 .....	29
3. 용어의 정의 .....	30
III. 조사개요 .....	31
1. 조사일정 .....	33
2. 조사내용 .....	33
3. 조사대상자 기초사항 .....	34
IV. 조사결과 .....	41
1. 외국인의 법적지위와 인권보장 .....	43
2. 단속 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44
3. 단속이후 호송 및 이송 관련 개선방안 .....	68
4. 단속이후 조사과정 및 공무원의 통보의무 .....	81

V.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 현황 .....	91
1. 조사대상자 .....	93
VI. 붙임 .....	119
1. 미등록이주자 단속 심층 면접지 .....	121
2. 미등록이주자 단속 설문지 .....	124



## I. 총 평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용어 정의
4. 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론



## 1. 조사배경 및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7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실 처우문제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 관련 문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미등록이주자 단속과 관련된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과정에서 부상, 강제연행 등 과잉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2009. 4. 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단속부분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방문조사는 2009. 7. 14.부터 7. 23까지 2007년 위원회의 방문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보호시설 4곳(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위 방문조사과정에서 방문조사 보호시설 4곳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4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보호외국인 30여명을 대상으로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9. 8. 24.부터 2009. 9. 31.까지는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또는 강제퇴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방문조사 결과 및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보호환경 개선 및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되었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방문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조사관(7명) 및 외부 전문가(11명), 통역(6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2009. 7. 14.부터 7. 23. 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외국인용 질문지는 네팔어·러시아어·몽골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하였고, 심층 면접표는 한글로 작성하였음. 전국 4개 보호시설 수용중인 436명이 응답한 질문지를 수거하였으나, 응답 상태가 부실한 10부는 과기하고, 4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동시에 보호외국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또한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강제퇴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2009. 8. 24.부터 9.31. 까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3. 용어 정의

정부가 체류자격이 없는 체류자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지칭하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호, 강제퇴거 등 행정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정식 형사절차를 밟는 것을 감안하여 불 때 이주민을 ‘범죄자’로 낙인(stigmatization) 찍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는 적법한 체류 및 취업자격이 없는 이주자라는 의미로 ‘미등록 이주자’(undocumented migrant)라는 용어를 써 왔음.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의하여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의무가 발생하나, 이 기간동안 등록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자를 통상적으로 ‘미등록 이주자’로 표현하고 있어 용어의 사용에 있어 혼동의 우려

가 있어 왔음.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국제규약 및 유럽평의회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미신고 또는 미등록적 상황’에 놓인 이주민이라는 표현으로 ‘비정규 이주자’(irregular migrant)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용례를 좇아 ‘미등록 이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법무부의 답변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함.

## 4. 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 단속의 권한 및 절차

우리 위원회는 2005. 5. 23.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며,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2009. 6. 15. 제정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는 여전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등 권한규정만을 두고



있고, 대상 외국인의 권리보장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09. 4. 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 외에 미등록이주자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 그리고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가 개정 법률안에 형식적으로 ‘보호’의 법률적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 외에는 여전히 단속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임의수사인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조항’과 비교해 보아도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속 대상 외국인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신원확인 의무만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즉,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미등록이주자 등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 행위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인신의 구속과 직결되는 특별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단속 대상인 외국인의 권리보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권 침해적 단속은 단속과정의 실무 운영 과정에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단속의 근거와 절차, 통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의 미비함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출입국 단속의 요건 및 절차,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규정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나. 단속반원 복장 및 신분증 제시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4%가 사복차림의 단속 반원들에게 단속을 당하였으며, 단속반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

지 않는 경우가 6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단속 전과 단속과 동시에 제시한 경우가 각각 38.2%, 26.2%였고, 단속 후에 제시한 경우가 35.6%였다. 또한 단속 당시 단속반원들의 행동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중 38.2%가 단속반원들이 보자마자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비자 제시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위원회의 2008년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47.9%가 사복차림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단속을 당하였고, 37.4%가 단속반원들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외국인을 끌고 갔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단속반원의 복장 및 신분증 제시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3. 2. 10. “미등록이주자노동자라 할지라도 단속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향후 단속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검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다른 곳으로 연행할 때 연행지를 밝히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등 최소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9. 11. 19.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면서 “미등록외국인에 대해 정지·질문 및 단속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이 외국인에게 질문하거나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2항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

리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의 외국인에 대한 의무 및 처벌 조항만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출입국사범 단속을 위한 불심검문 시 원칙적으로 외관상 신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복을 착용하고, 불심검문의 대상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과 소속, 성명 등을 고지하고, 불심검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된 단속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속 대상 외국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긴급보호가 개시되기 전의 외국인에 대한 질문 및 조사절차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없는 ‘임의조사’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속과정에서 최소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다. 단속 시 주거·사업장 진입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등록이주자들의 32.8%가 근무지에서, 21.8%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경찰서 등과 같은 관공서를 찾았다가 단속된 경우는 남성은 5.1%, 여성은 3.4%나 되었다. 거주지에서 단속된 경우

34.0%가 단속반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 주니 갑자기 집안까지 진입하여 단속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근무지에서 단속된 경우 63.7%가 단속반원이 고용주(사장)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식당, 상점 등에서 단속된 경우 주인이 단속반원의 출입을 허락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9.0%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5. 11. 21.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할 경우,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거, 사업장 출입 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9. 10. 12.에는 “미등록이주자 단속 시 주거무단진입 등의 부적절한 단속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법원도 주거나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할 경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결(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2009. 5. 23.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종래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지침」을 폐지하였는데, ‘단속지침’ 상에 있던 ‘가택 및 영업소 단속 시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얻고 단속에 임하고, 만약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거부 의사에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에 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반면, 새로 제정한 훈령 제10조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만 두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동의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것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종래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지침」보다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더 후퇴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미등록이주자 단속 업무를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야간단속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된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사이가 64.9%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에 단속된 경우는 24.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에 단속된 경우도 5.6%였고, 새벽에 집에서 단속된 경우의 사례도 심층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제125조 및 일본「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35조에서는 ‘타인의 주거 기타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인한 사망, 부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고발생 위험성이 더 높은 일출 전, 일몰 후의 단속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등록 이주자 단속할 경우,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강제단속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긴급보호 개시 시점 및 긴급보호사유 설명여부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할 당시 단속반원

들이 긴급보호서 등 서류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77.5%가 보여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단속반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76.5%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서류를 제시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보여 주지 않은 경우가 52.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보여준 경우에는 단속을 당한 후 차량에서 보여준 경우가 16.7%, 단속과 동시에 보여준 경우가 12.4%, 보호소에서 보여준 경우가 9.6%, 단속 전에 보여준 경우는 8.6%였다.

법무부는 2009. 11. 11. 국회에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조 제3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긴급보호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긴급보호서 제시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개정안 동조 제4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긴급보호 후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긴급보호제도’는 보호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 행사이므로 긴급보호의 시기는 단속차량 탑승 시가 아니라 외국인을 단속차량으로 연행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점부터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보호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 및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행

하지 않고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에 하는 것은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이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5항, 「세계인권선언」 제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2항, 「UN 피구금자 보호원칙」 10조 등에 위반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의 시비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관행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보호 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 및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행하지 않고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에 이행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바. 폭행이나 폭언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반원에게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했느냐는 질문에 구타를 당하였다는 응답은 남자의 경우는 21.1%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를 어떤 방법으로 당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자 응답자의 66.7%가 손과 발로 맞았다고 응답하였으며, 41.7%는 여러 명에 둘러 싸여 맞았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는 장비로 맞았다고 하였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1명이 손과 발로 맞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붙잡혔을 때 단속반원이 폭언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는 43.8%, 여자는 3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단속이 되어 미등록이주자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단속반원의 구타 및 폭언은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단속반원에 의한 구타 및 폭언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자 단속과정에서 출입국

관리공무원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사. 단속과정에서의 부상 및 조치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중 22.2%가 부상을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부상 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 응답자의 31.9%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여자 응답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사무소나 보호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는 12명(응답자의 17.4%)이었고, 여자는 3명(응답자의 50.0%)이었다. 한편 단속 당시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6.7%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8. 12. 29. “경기도 마석가구단지에서 단속을 당한 외국인이 무릎과 인대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이었고, 호송과정에서 단속반원들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이를 묵살하였던 점과, 단속반원들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에 대한 의료조치 등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미등록이주자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행위이므로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이주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 등의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 단속차량에서의 장시간 인치 및 수갑착용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무기 등’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와 분사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장구’도 포함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경찰장구의 사용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단속공무원들은 단속된 외국인인 원고가 이미 수갑에 채워져 단속차량에 태워진 이후 저항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갑을 벗겨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계속하여 뒤로 채운 상태로 원고를 서울에서 청주까지 호송하여 원고에게 손가락 감각 이상 및 손목 찰과상 등의 증세가 남게 한 행위는 단속공무원들이 직무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적절히 해석·적용하지 못한 과실로 「출입국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계구사용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게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5.선고 2006나5238 판결)한 바 있다.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외국인이 단속될 때 단속차량에 있었던 시간은 1시간 이내가 23.8%였고, 5시간 이상도 10.5%로 나타났다. 단속차량에 갇혀 있으면서 힘들었던 점은 수갑을 차고 있어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휴대폰사용이 어려웠다가 49.2%로 나왔고, 특히 화장실에 가지 못해 힘들었다는 응답은 여자는 37.1%였으며 남자는 22.5%였다.

단속차량에 갇혔을 때 단속된 다른 외국인은 몇 명이 더 탑승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29.3%였으며 1명에서 5명 사이

는 28.4%로 나왔고, 단속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승합차, 버스에 사람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며 단속해서 계속 차안에 갇혀있었다는 응답이 59.2%로 제일 높게 나왔다. 그 다음은 단속된 후 바로 출입국관리소로 왔다는 응답으로 남자는 39.0%였다. 한편 다른 미등록 외국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다른 공장으로 함께 동행 했다는 응답은 남자는 8.9%, 여자는 1.9%로 남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훨씬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차량 안에서의 수갑착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84.5%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처음에는 착용을 하였다가 도중에 풀어주었다고 응답한 남자는 6.9%였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보호소로 이송하는 과정 중 수갑착용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달라는 질문에 손 양쪽으로 서로 다른 사람과 수갑을 함께 차고 늘어서서 이동했다는 응답이 남자는 53.7%였으며, 하나의 수갑으로 두 명이 착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2%였다. 보호소, 병원, 법원 등 외부 장소로 이송되는 동안 수갑을 착용한 모습이 여러 사람들 앞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의 57.3%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남자는 56.8%, 여자는 59.5%가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이미 단속된 외국인을 과도하게 장시간 비좁은 단속차량에 인치한 상태로 둔 채 또 다른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행위를 계속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하고 수갑을 장시간 채우는 행위는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이미 단속된 외국인을 과도하게 장시간 비좁은 단속차량에 인치한 상태로 둔 채 또 다른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외국인의 보호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등록이주자 단속과정에서 단속된 외국인에게 수갑을 장시간 채우고, 비좁은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한 채 다른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 행위를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자. 장비사용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반원이 단속할 때 사용했던 장비를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수갑이 89.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봉 사용이 9.3%였고,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경우도 2.2%로 나타났는데,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사례도 심층조사에 있었다. 또한 단속반원이 사용한 계구, 수갑채용 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의 31.5%, 여자의 1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77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무기 등의 휴대를 할 수 있고 「경찰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보호나 강제

퇴거 등과 같은 행정작용과는 무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등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가 아닌 외국인들에 대한 물리적 사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이주자 단속 시 경찰장구 및 무기의 사용은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차. 성적 수치심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반원의 성별에서는 남자 응답자의 경우 남자단속반원이 단속한 경우는 76.4%, 남성단속반원과 여성단속반원이 같이 단속한 경우는 21.8%였다. 여자 응답자의 경우는 남성 단속반원이 단속한 경우는 59.0%, 남성단속반원과 여성단속반원이 같이 단속한 경우는 34.4%, 여성 단속반원이 단속한 경우는 6.6%였다. 단속과정이나 단속 승합차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는 16.9%, 여자는 18.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를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 차에서 내린 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묶여 끌려가서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남자는 54.7%, 여자는 50.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응답은 장시간 갇혀서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라는 응답으로 남자는 32.6%, 여자는 30.8%로 나왔다. 한편 성별로 차이가 나는 응답은 성이 다른 단속반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응답이었는데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남자는 4.2%인 반면 여자는 26.9%였다. 단속 호송차량에 장시

간 대기하던 여성보호외국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다가 화장실이 아닌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45조는 피구금자인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가능한 한 일반 공중의 면전에 수용자의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호기심·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송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이 일반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행위는 여성보호외국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카. 단속 후 권리고지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8%가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호시설에 들어올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서 친지나 가족과 면회할 권리라고 응답한 사람은

56.5%였다. 한편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람은 25.2%였다. 구금이나 강제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74.8%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69.9%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지 않고서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은 「UN 피구금자 보호원칙」에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록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외국인의 권리고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도 직접 제한 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소정의 ‘체포·구속’ 역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모든 형태의 공권력 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집행 시에도 보호외국인에게 「헌법」 제12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준용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타. 조사과정 통역지원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 직후 보호실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얼마나 잘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47.6%로 제일 높게 나왔다. 한편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2.2%로 역시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42.7%로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었는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43.9%, 여자의 경우 37.1%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사용한 언어는 한국어가 83.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반면, 출신국 언어로 조사를 받은 경우는 4.1%였다. 그런데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6%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의 보호 외국인들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만큼 되지 않음에도 한국어를 사용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의 통역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남자의 75.6%, 여자의 78.6%가 통역인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역인의 신분은 보호소 내 외국인이 34.8%, 외부에서 온 통역인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각각 32.6%였다.

위원회는 2002년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출입국 관련서류의 번역본을 송출국 별로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사증의 설명, 국내 「근로기준법」 중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항, 부당한 인권 침해나 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방안,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수사과정시 인권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책자(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지침)를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등록이주자들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일단 단속 및 보호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옮겨지게 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용의자’의 법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혹은 출장소장은 그 여부를 심사하여 강제퇴거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국내 법제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언어 상의 의사소통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6항에도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호외국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될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보호뿐 아니라 단속과 보호절차, 강제퇴거절차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방문조사결과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호외국인이 권리구제 관련 자료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외국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통역지원 등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파. 공무원의 통보의무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단속을 당한 경우에 누군가에게 신고 되어 연행된 경우가 36.3%로 제일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경찰이나 관공서에 피해신고를 하러 갔다가 단속된 경우와 증언을 하거나 목격자로 진술하다가 미등록 사실이 밝혀져 단속된 경우가 각각 15.3%, 14.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3. 2. 10.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 담당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완



화하여 미등록이주자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7. 12. 3.에는 미등록이주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른바 '선(先)구제제도 후(後)통보원칙'제도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일지라도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구제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등 '선 구제제도 후 통보원칙'을 지침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선 구제제도 후 통보원칙'을 폐지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보의무 규정은 '인권보장'이라는 보편적인 법 원리보다는 '출입국관리'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규정으로, 위와 같은 공무원의 통보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미등록이주자는 임금체불, 사기사건, 폭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노동부나 경찰 공무원에게 구제신청 등을 하기 위해 강제출국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권고한 것과 같이 '선 구제제도 후 통보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미등록이주자의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 구제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통보의무가 정지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이주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5. 결론

위원회는 방문조사로 드러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현행 단속 및 보호 관련 제도가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출입국 단속의 요건 및 절차,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규정을 법률로 규정할 것
- 나.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하는 경우, 반드시 단속 대상 외국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할 것, 또한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것, 긴급보호가 개시되기 전에 실시되는 외국인에 대한 질문 및 조사절차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없는 ‘임의조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속과정에서 최소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미등록이주자 단속 업무를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고,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라. 미등록이주자를 단속할 경우,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강제단속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제한할 것

- 마.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보호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 및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행하지 않고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에 이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 바. 미등록이주자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사. 미등록이주자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이주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 등의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 아. 미등록 이주자 단속과정에서 단속된 외국인에게 수갑을 장시간 채우고, 비좁은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한 채 다른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자. 미등록이주자 단속 시 경찰장구 및 무기의 사용은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차. 호송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이 일반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 카. 보호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보호·단속·강제퇴거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보호외국인이 권리구제 관련 자료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역지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타. ‘선 구제제도 후 통보 원칙’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여 미등록이주자의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 구제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통보의무가 정지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등록이주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Ⅱ. 서론

1. 조사 배경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용어의 정의



## 1. 조사 배경

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를 2007년, 2008년 2회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보호실 처우문제, 2008년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 관련 문제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최근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과정에서 부상, 강제연행 등 과잉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고, 법무부가 2009. 4. 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도 단속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권고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2008년 방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방문조사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음. 또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인 인천공항 입국대기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음.

한편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단속과 강제퇴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속과 강제퇴거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였음.

## 2. 조사 내용 및 방법

방문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조사관(7명) 및 외부 전문가(11명), 통역(6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2009. 7. 14.부터 7. 23. 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외국인용 질문지는 네팔어·러시아어·몽골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하였고, 심층 면접표는 한글로 작성하

였음. 전국 4개 보호시설 수용중인 436명이 응답한 질문지를 수거하였으나, 응답 상태가 부실한 10부는 파기하고, 4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동시에 보호외국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또한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강제퇴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2009. 8. 24.부터 9.31. 까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3. 용어의 정의

정부가 체류자격이 없는 체류자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지칭하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호, 강제퇴거 등 행정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정식 형사절차를 밟는 것을 감안하여 불 때 이주민을 ‘범죄자’로 낙인(stigmatization) 찍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번 방문조사에서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국제규약 및 유럽평의회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미신고 또는 미등록적 상황’에 놓인 이주민이라는 표현으로 ‘미등록 이주자’(irregular migrant)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례를 참고하여 ‘미등록 이주자’(irregular migrant)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법무부의 답변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함.



## Ⅲ. 조사개요

1. 조사일정
2. 조사내용
3. 조사대상자 기초사항





## 1. 조사일정

- 가. 방문조사에 대한 침해구제2위원회 의결 : 2009. 7. 6.
- 나. 기획회의 : 2009. 6. 29.
- 다. 방문조사 조사관 교육 : 2008. 7. 7.

〈표 1〉 방문조사 개요

일정	대상기관	외부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7. 14.(화)	화성외국인 보호소	양혜우, 장서연, 이병렬, 이영, 이훈창, 김대권, 이상재, 곽영숙, 이지영, 김미연 ※ 통역: Timothy kim, 김채화, 강실선, 윤성화, 권자뜨리, 최경식	문은현, 김수산, 황성룡, 김선아
7. 16.(목)	청주외국인 보호소	양혜우, 이병렬, 이영, 안건수, 이훈창, ※ 통역: Timothy kim, 김채화, 윤성화	문은현, 김수산, 김선아
7. 21.(화)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이상재, 장서연, 정현정	문은현, 김선아
7. 23.(목)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	양혜우, 이병렬, 이영, 이훈창, 김대권, 정현정 ※ 통역: 김채화	문은현, 김수산, 박달경, 김선아, 조정희

- 마. 평가회의 : 2009. 11. 26.

## 2. 조사내용

- 가. 미등록이주자 단속관련 국내외 기준 검토
-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 단속이후 이송 및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 보호소 이송 및 입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 위원회 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 고지 여부 등

### 3. 조사대상자 기초사항

<표 2>에 의하면, 외국인보호소 방문 당시 조사대상 보호 외국인인 총 명이었으며 이중 일부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426부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169명으로 39.7%로 가장 많이 있었으며 그 다음이 몽골 출신으로 39명으로 9.2%, 방글라데시 출신이 37명, 8.7%,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26명, 6.1%였다.

<표 2> 국적

	빈도	비율
중국	169	39.7
몽골	39	9.2
방글라데시	37	8.7
우즈베키스탄	26	6.1
베트남	21	4.9
인도네시아	18	4.2
태국	18	4.2
네팔	16	3.8
필리핀	10	2.3
스리랑카	10	2.3
파키스탄	9	2.1
인도	7	1.6
러시아	4	0.9
카자흐스탄	3	0.7
키르기즈스탄	2	0.5
나이지리아	2	0.5
이란	1	0.2
가나	1	0.2

	빈도	비율
미얀마	1	0.2
기타	15	3.6
미응답	15	3.5
합계	426	100.0

<표 3>에 의하면, 성별로는 응답자의 75.1%인 320명이 남자였으며 여자는 69명으로 19.2%였다.

<표 3> 성별

성별	빈도	비율
남자	320	75.1
여자	69	16.2
미응답	37	8.7
합계	426	100.0

<표 4>에 의하면, 보호외국인의 연령은 30대가 162명, 38.0%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19세에서 30세와 40대가 각각 98명, 23.0%였다. 50대는 28명명, 6.6%였으며, 18세 이하도 1명 있었다.

<표 4> 연령

나이	빈도	비율
10세-18세	1	0.2
19세-30세	98	23.0
31세-40세	162	38.0
41세-50세	98	23.0
51세 이상	28	6.6
미응답	39	9.2
합계	426	100.0

<표 5>에 의하면, 조사대상 보호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2-3년이 71명, 19.8%였으며 1-2년이 70명, 16.4%로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0년 이상 체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41명, 9.6%였다. 3-4년 체류한 사람은 39명, 9.2%였으며, 5-6년은 36명, 8.5%였다.

〈표 5〉 체류기간

체류기간	빈도	비율
6개월 미만	13	3.1
1년 미만	18	4.2
1-2년	70	16.4
2-3년	71	16.7
3-4년	39	9.2
4-5년	29	6.8
5-6년	36	8.5
6-7년	21	4.9
7-8년	21	4.9
8-9년	22	5.2
9-10년	25	5.9
10년 이상	41	9.6
미응답	20	4.7
합계	426	100.0

<표 6>에 의하면, 이들이 입국했을 때 소지했던 비자의 종류는 C1,C2 등과 같은 단기비자가 129명, 30.3%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이 D3 산업연수비자로 76명, 17.8%로 나왔다. E9 비전문취업비자는 40명, 9.4%였다.

〈표 6〉 비자종류

비자종류	빈도	비율
C1, C2 단기비자	129	30.3
D2 유학	17	4.0
D3 산업연수	76	17.8
F1 방문, 동거	13	3.1
F2 거주국민, 영주자의 배우자	15	3.5
F4 재외국민	1	0.2
E6 예술흥행	4	0.9
E9 비전문취업	40	9.4
E10 내향선원	11	2.6
기타	69	16.2
미응답	51	12.0
합계	426	100.0

<표 7>에 의하면, 단속되기 전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 남자의 47.0%, 여자의 53.0%가 공장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남자의 경우 32.2%가 건설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었던 반면 여자는 21.2%가 서비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표 7〉 단속 전 직업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장노동자	178	48.1	143	47.0	35	53.0
건설노동자	100	27.0	98	32.2	2	3.0
수산업노동자	21	5.7	17	5.6	4	6.1
농림축산업노동자	26	7.0	22	7.2	4	6.1
서비스업	32	8.6	18	5.9	14	21.2
가사도우미, 간병인	6	1.6	1	0.3	5	7.6
유흥업소 접대원	5	1.4	2	0.7	3	4.5
유학생	9	2.4	8	2.6	1	1.5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치료중(산재, 질병 등)	14	3.8	10	3.3	4	6.1
무직	29	7.8	23	7.6	6	9.1
기타	29	7.8	22	7.2	7	10.6

<표 8>에 의하면, 남아있는 가족 중에서 형제, 자매가 남자의 경우 25명, 16.1%, 여자는 10명, 25.6%로 제일 높게 나왔다. 그 다음이 한국인 배우자로 남자는 7명, 7.1%, 여자는 6명, 15.4%로 나타났다.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는 6명, 3.9%, 여자는 2명, 5.1%였다.

〈표 8〉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미성년 자녀	8	4.1	6	3.9	2	5.1
성년 자녀	6	3.1	6	3.9	0	0.0
한국인 배우자	17	8.8	11	7.1	6	15.4
외국국적의 배우자	11	5.7	7	4.5	4	10.3
형제자매	35	18.0	25	16.1	10	25.6
부 또는 모	9	4.6	7	4.5	2	5.1
없음	104	53.6	90	58.1	14	35.9
기타	23	11.9	16	10.3	7	17.9

<표 9>에 의하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당한 피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남, 여 공히 임금체불이었다. 남성의 경우 39.3%, 여성의 경우 34.1%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 다음은 폭언으로, 남자는 18.8%, 여자는 15.9%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폭력은 남자의 경우 4명, 여자의 경우는 2명이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가정폭력은 남자와 여자 모두 2명이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표 9〉 피해의 형태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임금체불	176	38.3	148	39.3	28	34.1
폭언	84	18.3	71	18.8	13	15.9
사기	51	11.1	43	11.4	8	9.8
산업재해	30	6.5	25	6.6	5	6.1
성폭력	6	1.3	4	1.1	2	2.4
성매매 강요	2	0.4	1	0.3	1	1.2
가정폭력	4	0.9	2	0.5	2	2.4
폭행	16	3.5	15	4.0	1	1.2
없다	62	13.5	45	11.9	17	20.7
기타	28	6.1	23	6.1	5	6.1

<표 10>에 의하면, 미등록이 된 사유로는 남, 여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미등록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1.6%, 59.3%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은 남자의 경우는 사업장이탈로 8.1%로 나왔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별거나 이혼으로 미등록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4%로 높게 나왔다. 아래의 사례는 남편의 일방적인 신고로 미등록된 경우이다.

〈표 10〉 미등록 사유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체류기간 만료	191	61.2	159	61.6	32	59.3
사업장 이탈	24	7.7	21	8.1	3	5.6
사업장변경횟수초과	9	2.9	7	2.7	2	3.7
구직기간 초과	10	3.2	9	3.5	1	1.9
구직신청기간초과	4	1.3	4	1.6	0	0.0
체류자격외노동활동	10	3.2	8	3.1	2	3.7
별거나 이혼	11	3.5	7	2.7	4	7.4
기타	53	17.0	43	16.7	10	18.5

그동안 컴퓨터 자수 공장에서 일했는데 내가 일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소개시켜주었다. 처음 만났는데 마음에 들었다. 남편도 나를 마음에 들어 했다. 우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가 지난 6월부터 같이 살기로 했다. 몽골에서 혼인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구청에다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 몽골에서 친정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갔다. 오는 9월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중략〉 그런데 최근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인데 그 여자는 여의도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비싼 옷도 선물로 사주곤 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은 3개월 전에 죽었다고 한다. 그 여자 분은 50세 정도 되었는데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본다. 무언가 따뜻한 시각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눈빛이었다. 〈중략〉 교회에서도 그 여자가 항상 가운데 자리에 앉고 남편과 나는 양쪽에 앉는다. 승용차를 타도 그 여자가 앞자리에 앉고 나는 뒷자리에 앉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다. 남편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다가 내가 들어가면 얼른 다른 걸로 바꿔버리곤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하루에 수십 통을 밤 11시가 넘도록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다. 〈중략〉 잡혀 온 날 나와 남편은 외식을 하러 나왔다. 갈비를 먹은 다음 돈을 찾는다고 나가서는 경찰에 나를 신고해서 여기로 보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남편은 항상 좋아한다고 나 같은 여자가 없다고 했다. 〈중략〉 남편도 나에게 별 불만 없는 것 같았는데 아직도 남편이 신고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아침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미팅중이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제 저녁에 여기에 왔다갔는데 다시 올지 모르겠다. (사례#36, 몽골, 여)





## IV. 조사결과

1. 외국인의 법적지위와 인권보장
2. 단속 과정에서의 개선방안
3. 단속이후 호송 및 이송 관련 개선방안
4. 단속이후 조사과정 및 공무원의 통보의무



## 1. 외국인의 법적지위와 인권보장

### 가. 헌법상 외국인의 인권 보장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시(說示)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제법상 외국인의 인권 보장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각각 제2조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제인권법은 모두 몇몇 예외적인 조항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 함으로써 국적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적용상의 상호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1)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인권조약의 조약감시기구가 행하는 인권조약의 내용이나 주제별 쟁점에 대한 유권적 해석, 즉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등의 일반논평 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의 일반권고는 각각의 인권조약들이 외국인 혹은 이주노동자, 나아가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적용됨을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논평 제15호에서 “일반적으로 규약상 권리는 국적이나 무국적,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하여 외국인에 대한 규약의 적용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협의의 참정권과 관련된 조항은 명시적으로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강제퇴거와 관련된 조항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예외가 있을 뿐임을 지적하고 있다.

## 2. 단속 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가. 단속, 보호, 강제퇴거의 법적성격 및 적법요건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그 기간을 도과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위법행위로 구성하여,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그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통고처분, 출국권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의 해당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장 등의 행정처분으로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체류외국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토 밖으로 퇴거 조치하는 처분을 말하고, 출입국관리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러한 강제퇴거의 심사 및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해당 외국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보호명령 등에 의하여 행정상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명령 및 보

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처분 및 그 집행행위로써 권력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비례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에 비해 구금과 같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더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구금형태에 주목한 바 있다.<sup>2)</sup> 특히 행정구금(administrative detention)은 공안이나 공공질서라는 명목으로 더 쉽게 용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한 통제를 덜 받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들이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을 포함한 인권침해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국제 인권 규범·원칙·기준들은 아무도 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외국인들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의 처분 및 절차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이 준수 되어야 한다.

#### 나. 단속의 법적 근거 부족의 문제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단속’은 행정상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

2) 형사구금은 정부가 미등록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국관련규칙 위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방법이다. 미등록 혹은 미등록 이주자들은 국경통과 관련 문서위조, 무허가 거주지 이탈, 미등록 체류, 체류조건 혹은 체류기간 위반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띤 형사구금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한편 여러 국가에서는 체류허가 만료이후 체류, 신분증 미소지, 타인 여행문서 사용, 체류기간 초과이후 미출국 등 출입국 관련 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구금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행정구금의 목적은 퇴거나 추방과 같은 추가조치들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특히 이러한 행정구금은 공안이나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더 쉽게 용인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OHCHR., 2005 참조)

고, 여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특히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 조치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소위 ‘강제단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미등록 이주자 등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 행위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인신의 구속과 직결되는 특별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단속 대상인 외국인의 권리보호 절차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2009년 조사결과에서도 출입국관리 단속공무원들의 위법한 단속관행은 거의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권 침해적 단속 사례들은 단속과정의 실무 운영과정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단속의 근거와 절차, 통제 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자체의 문제점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단속업무의 권한 및 절차 규정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 체계를 법률로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미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며,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

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2005. 5. 23.자 04진인139, 04진기131병합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실시한 2005년 미등록이주자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보호)와 제102조(통고처분)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출석요구 및 신문),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의 규정은 법률규정의 형식,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 출입국관리법 제50조가 용의자의 주거를 검사하는 경우 용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들은 비권력적 행정작용, 즉 임의조사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강제력을 수반한 권력적 행정작용인 단속 및 연행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은 행정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분을 규정한 것일 뿐 강제퇴거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행정처분의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조항은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의 유일한 예외 조항으로서 특정한 요건 하에서 특정한 절차에 따라 긴급보호 할 수 있는 예외적 근거조항일 뿐 강제력을 수반하는 단속 및 연행의

일반적 근거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보호명령서 발부에 의한 보호 또는 긴급보호명령서의 발부에 의한 긴급보호가 단속 및 연행의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와 그 집행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재량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단속업무 과정에서 긴급보호 개시 전에 이루어지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의 권한 및 법적성격, 절차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단속과정의 위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관행적으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여권 등의 제시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하여 미등록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단속차량 안에서 신원확인을 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신원확인을 위해 외국인을 단속차량까지 연행하여 단속차량에 탑승시키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법원의 판결도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단속승합차량으로의 연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명령서, 긴급보호서 제시도 없이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데, 긴급보호 등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절차나 현행법체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절차를 밟은 바도 없이 단속공무원들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외국인의 허리를 붙잡고 강제로 단속승합차량으로 데리고 가려했던 것은 임의동행을 요구 받은 외국인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임의동행에 거부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할 근거나 권한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단속공무원

들의 불법체류 단속 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로 판시(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7. 25. 선고 2008고단574 판결;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무부가 2007. 11. 8.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법률안에 형식적으로 ‘보호’의 법률적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관련된 인신 행정작용(인치 및 수용 등)에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 보장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권고한 바 있고, 2009. 4. 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권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2009. 4. 1. 입법예고하고 동년 11. 11 국회에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 외에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 그리고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가 개정 법률안에 형식적으로 ‘보호’의 법률적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 외에 여전히 단속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임의수사인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조항과 비교해 보아도,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속 대상 외국인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신원확인 의무만을 강요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 원리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위원회는 이미 “강제단속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보다 훨씬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큰 공권력 행사이므로, 최소한 불심검문에 준하는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부분의 국



가에서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간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 단속에 관한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문제의 해결을 단속과정에서의 지침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법무부2005.6.9 해명자료).

그러나 2009. 5. 23. 제정한 법무부훈령 제687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도 여전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등 권한규정만을 두고 있고 대상 외국인의 권리보장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권 침해적 단속 사례들은 단속 과정의 실무운영과정에서의 개별 공무원들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단속의 근거와 절차, 통제 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 자체의 문제점으로부터 파생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출입국 단속의 요건 및 절차,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규정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단속반원 복장 및 신분증 제시

### 1) 조사결과

<표 11>에 따르면, 단속될 당시 단속반원들의 복장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 여 모두 '사복차림의 단속 반원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47.0%, 49.2%로 제일 높게 나왔다. 남자의 경우에는 정복차림이라는 응답이 30.0%로 그 다음이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단속조끼착용이 25.4%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출입국관

리 단속 공무원들은 외국인의 인권보장 및 적법절차 보다는 밀행성과 신속성이라는 단속의 편의만을 추구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이나 단속용 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사복차림으로 불심검문을 하는데, <표 12>에서와 같이 단속반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62.2%나 되었고, <표 13>에 따르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단속 전과 단속과 동시에 제시한 경우가 각각 38.2%, 26.2%였고, 단속 후에 제시한 경우가 35.6%였다.

<표 11> 단속반원의 복장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복착용	98	28.3	85	30.0	13	20.6
단속조끼착용	69	19.9	53	18.7	16	25.4
사복착용	164	47.4	133	47.0	31	49.2
모르겠다	15	4.3	12	4.2	3	4.8

<표 12> 단속반원의 신분증제시 여부

	빈도	비율
보여주었다	99	37.8
보여주지 않았다	163	62.2

<표 13> 단속반원의 신분증 제시 시기

	빈도	비율
단속 전에	73	38.2
단속과 동시에	50	26.2
단속 후에	68	35.6

또한 <표14>에 의하면 단속 당시 단속반원들의 행동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중 38.2%가 단속반원들이 ‘보자마자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비자제시를 요구’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아래의 경우는 일단 제압을 하여 차에 태운 후 비자제시를 요구하는 사례이다.

<표 14> 단속 당시 단속반원의 행동

단속방법	빈도	비율
말로 비자를 보여 달라고 함	124	43.8
보자마자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비자제시 요구	108	38.2
기타	51	18.0

7월 10일 16시 30분경 진천의 병원 앞에서 단속되었다. 병원에 허리가 아파 치료차 갔으나 출입국 직원 3명이 다가와 한명은 뒤춤을 잡고 다른 함영이 목덜미를 잡아 차로 바로 끌고 들어갔다. 차안에서 신분증 보여주며 비자와 여권을 확인하였고 차안에서도 계속 목덜미와 뒤춤을 잡고 있었다. 비자 확인 후 수갑을 채웠다.(사례#29, 방글라데시, 남)

## 2) 분석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질문하거나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2항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98조 제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의 외국인에 대한 의무 및 처벌 조항만 규정하고 있다.

불심검문의 대상인 외국인에게 여권 등의 제시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합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려면 최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불심검문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이미 ‘미등록이주자노동자라 할지라도 단속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향후 단속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검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다른 곳으로 연행할 때 연행지를 밝히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등 최소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2003.2.10결정)’을 권고한 바 있고, 미등록외국인에 대해 정지·질문 및 단속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최소한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009. 11. 19.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즉, 출입국사범의 단속을 위한 불심검문 절차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외관상 신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복을 착용하고, 불심검문의 대상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과 소속, 성명 등을 고지하고 불심검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불심검문을 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의 2008년 조사결과에서도 '외국인들의 47.9%가 사복차림의 단속반원들에 단속을 당하였고, 37.4%가 단속반원들이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끌고 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조사결과에서도 이와 관련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오히려 2009. 5. 30.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재래시장에서 한국인 여성이 미등록 이주자로 오인 당하여 사복을 입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제로 연행당할 뻔한 일을 겪고 단속반원들을 납치범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sup>3)</sup> 이는 여전히 출입국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이주자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거나 신원확인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속차량까지 강제 연행하는 위법한 단속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한 단속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속 대상 외국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긴급보호가 개시되기 전의 외국인에 대한 질문, 조사절차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없는 ‘임의조사’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단속 요건 및 절차, 대상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법률로 마련하여야 한다.

## 라. 단속 시 주거·사업장 진입

### 1) 조사결과

<표 15>에 따르면, 단속된 장소는 일하는 곳에서 단속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남성은 28.9%, 여성은 51.7%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그 비율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여성의 경우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일하는 곳, 집이나 기숙사, 그리고

3) ‘인권 무시’ 불법체류자 단속... 한국인도 ‘봉변’, SBS 2009. 6. 3.자 기사

길거리 등에서 단속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경찰서 등과 같은 관공서를 찾았다가 단속된 경우도 남성은 5.1%, 여성은 3.4%나 되었다.

〈표 15〉 단속 장소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집, 기숙사	73	21.8	69	24.9	4	6.9
일하는 곳	110	32.8	80	28.9	30	51.7
길거리, 공원, 은행	83	24.8	70	25.3	13	22.4
식당, 상점	30	9.0	25	9.0	5	8.6
관공서	16	4.8	14	5.1	2	3.4
기타	23	6.9	19	6.9	4	6.9

<표 16>에 따르면, 거주지에서 단속된 경우 어떤 방식에 의해 단속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누군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니 갑자기 집 안까지 진입하여 단속하였다’는 응답이 34.0%로 제일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은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무단 진입하여 단속하였다는 응답도 17.0%나 되었고, 신분을 밝히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단속한 경우는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거주지에서의 단속

단속방법	빈도	비율
신분을 밝히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단속	25	16.3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단속	52	34.0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무단 진입하여 단속	26	17.0
집 앞에서 잠복중인 단속 반원에게 단속	11	7.2
기타	39	25.5

<표 17>에 따르면, 일하는 곳(직장, 공장)에서 단속 당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단속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단속반원이 고용주(사장)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하였다’는 응답이 63.7%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주의 동의 하에 사업장에 들어와 단속을 하였다’는 응답은 11.0%였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직장(사업장)을 방문하였다가 고용주의 신고로 연행된 경우도 12건, 8.2%나 되었다.

<표 17> 일하는 곳에서의 단속

단속방법	빈도	비율
고용주의 동의 하에 사업장에 들어와 단속	16	11.0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무단 진입하여 단속	93	63.7
출입문이나 창문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	9	6.2
체불임금을 받으려 사업장에 방문하였다가 고용주의 신고로 연행	12	8.2
기타	16	11.0

<표18>에 의하면, 식당, 상점 등에서 단속된 경우 주인이 단속반원의 출입을 허락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49.0%로 제일 높게 나왔다. 그 다음이 허락받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26.0%로 나왔으며 허락하였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하였다.

<표 18> 식당, 상점 등의 주인의 단속반원 출입허락 여부

단속방법	빈도	비율
허락하였다	6	5.8
허락하지 않았다	20	19.2
허락받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27	26.0
잘 모르겠다	51	49.0

## 2) 분석

위원회는 종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미등록이주자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압수, 수색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행위 모습이 크게 다를 바도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해석하여 그 무단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야간 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바, 출입국관리법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권고(2005. 11. 21.결정)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헌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주거의 ‘수색’이라 함은 물건이나 사람의 발견을 위해 사람의 신체나 물건 기타 장소에 대해 행해지는 검색을 말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비록 문의 개폐나 장소에 대한 적극적 검색이 없는 단순한 시각적 조사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수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주거, 사업장 출입 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2007. 12. 18.결정)한 바 있고, 최근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주거무단진입 등의 부적절한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2009. 10. 12.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 판결)’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2009. 5. 23.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종래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지침’을 폐지하였는데, ‘단속지침’ 상에 있던 ‘가택 및 영업소 단속 시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얻고 단속에 임하고, 만약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에 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진 반면에, 새로 제정한 훈령 제10조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만 두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동의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것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종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지침’보다 더 후퇴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서는 외국인동향조사를 위한 질문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입하여 미등록 이주자를 단속(수색)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50조가 불법체류 용의자의 주거를 검사(수색)하는 경우에도 용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주거를 검사(수색)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더 나아가 행정법상으로도 직접적 강제를 수반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필요로 하며, 관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실력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미등록이주자 단속 업무를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 마. 야간단속의 문제점

<표 19>에 따르면, 단속된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사이가 남자는 65.3%, 여자는 62.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에 단속된 경우는 남, 여 각각 24.5%, 24.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에 단속된 경우도 남, 여 각각 4.7%, 6.5%였다. 새벽에 집에서 단속된 경우의 사례도 있었다.

<표 19> 단속시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오전9시-오후6시	220	64.9	181	65.3	39	62.9
오후6시-자정	83	24.5	68	24.5	15	24.2
자정-오전6시	17	5.0	13	4.7	4	6.5
오전6시-오전9시	19	5.6	15	5.4	4	6.5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소 사람이 벽과 연결된 지붕을 타고 넘어와서 한명이 문을 따고 나머지 10명이 넘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대문으로 들어왔다. 같이 잡혀온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여자도 한명 있었다. 우리 집은 사각형으로 된 옛날 집으로 가운데에 마당이 있고, 외국인만 10명이 살고 있다. <중략> 나와 친구는 잠잘 때 방문을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와서 일어나라고 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출입국에서 왔다면서 무조건 손에 수갑을 채웠다. 친구는 '나 비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수갑을 풀어주고 친구는 잡아가지 않았다. 밖에 나가니까 승합차가 있었다. 우리 집에서 7명이 잡혀왔다.(사례#28, 스리랑카, 남)

단속으로 인한 사망, 부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출 전, 일몰 후의 단속은 사고발생 위험성을 더 높이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25조 및 일본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35조 등에서 타인의 주거 기타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강제단속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바. 긴급보호 개시시점 및 긴급보호사유 설명여부

### 1) 조사결과

<표 20> 및 <표 21>에 따르면, 단속할 당시 긴급보호서 등 서류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7.5%가 보여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긴급보호서 등 서류에 대해 단속단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76.5%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0〉 긴급보호서 등 서류제시 여부

	빈도	비율
보여주었다	54	22.5
보여주지 않았다	186	77.5

〈표 21〉 서류설명 여부

	빈도	비율
설명하였다	48	23.5
설명하지 않았다	156	76.5

<표 22>에 따르면, 서류를 제시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보여 주지 않은 경우가 52.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보여준 경우에는 단속을 당한 후 차량에서 보여준 경우가 16.7%, 단속과 동시에 보여준 경우가 12.4%, 보호소에서 보여준 경우가 9.6%, 단속 전에 보여준 경우는 8.6%였다.

〈표 22〉 서류제시 시기

서류제시 시기	빈도	비율
단속 전에 보여줌	18	8.6
단속과 동시에 보여줌	26	12.4
단속을 당한 후 차량 안에서 보여줌	35	16.7
보호소에서 보여줌	20	9.6
보여주지 않음	110	52.6

## 2) 분석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

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를 긴급 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 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보호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예외규정으로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 방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의 대부분은 긴급보호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긴급보호사유 및 취지의 고지, 긴급보호서의 작성 및 제시 시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긴급보호 집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긴급보호서 제시시점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지침’에 단속된 외국인을 단속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량 안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긴급보호서상의 긴급보호기간의 시기도 단속차량탑승시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단속된 외국인에게 단속된 현장이나 연행되는 현장에서 긴급보호의 취지를 알리거나 긴급보호서를 제시하는 대신, 외국인을 단속차량에 탑승시킨 후 미등록으로 신원확인이 되면 단속 차량 안이나 차량으로 이동 중에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제시하거나, 심지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해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09. 11. 11. 국회에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조 제3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긴급보호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보다 완화하였고, 긴급보호서 제시시점과 관련하여서도 개정안 동조 제4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긴급보호 사후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긴급보호제도는 보호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 행사이므로 긴급보호의 시기는 단속차량 탑승시가 아니라 외국인을 단속차량으로 연행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점부터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보호를 위한 강제력 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긴급보호 대상 외국인에게 긴급보호의 취지를 알리고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보호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등 그 외국인을 실력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및 취지에 대한 고지를 그 외국인을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이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보호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 및 미란다원칙의 고지

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행하지 않고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 하는 것은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인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5항, 세계인권선언 제9조, 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 「UN 피구금자 보호원칙」 10 등에 위반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와 직결될 수 있는 명백하게 위법한 관행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사. 폭행이나 폭언

### 1) 조사결과

<표 23>에 따르면,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하였는가를 물었을 때 구타를 당하였다는 응답은 남자의 경우는 21.4%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구타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49	17.6	49	21.4	0	0.0
아니오	229	82.4	180	78.6	49	100.0

<표 24>에 따르면, 구타를 어떤 방법으로 당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자 응답자의 66.7%가 손과 발로 맞았다고 응답하였으며, 41.7%는 여러 명에 둘러 싸여 맞았다고 했으며 25.0%는 장비로 맞았다고 하였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1명이 손과 발로 맞았다고 응답을 하였다. 아래의 사례는 단속 후 차량 안에서의 구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4〉 구타방법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손과 말로 맞음	33	67.3	32	66.7	1	100.0
장비로 맞음	12	24.5	12	25.0	0	0.0
여러 명에 둘러 싸여 맞음	20	40.8	20	41.7	0	0.0

단속차량에 태워진 후 출입국 직원 한 명이 오더니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뒤통수와 머리, 얼굴 등을 주먹, 손바닥, 발 등으로 계속 때렸다. 단속차량 안에는 나 혼자 밖에 없었고 계속 맞다가 쓰러졌는데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때리는 것을 막다가 수갑을 채운 손목이 심하게 움직이며 상처가 깊게 났다. 손목이 너무 아파 수갑을 조금 헐겁게 해달라고 해도 단속반들은 허락하지 않았고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자 계속 못들은 척 하였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수갑을 채운 손목이 아프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책을 동그랗게 말아서 아픈 부위를 3~4회 때렸다. 손목부위가 붓고 피부가 벗겨졌다. 병원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들어주지 않았다. 손가락이 부러진 다른 중국인과 함께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자 2~3시간 후에 결국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의사가 상처를 보고 뼈는 상하지 않았으나 인대가 늘어났으며 붓대를 감아야한다고 했으나 출입국직원들이 붓대는 감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의사가 잘못은 했더라도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우겨서 겨우 붓대를 감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사례#16, 중국, 남)

<표 25>에 의하면, 붙잡혔을 때 단속반원이 폭언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는 43.8%, 여자는 3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25〉 단속반원의 폭언, 욕설, 인종차별적 발언 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22	41.6	103	43.8	19	32.8
아니오	171	58.4	132	56.2	39	67.2

## 2) 분석

이미 단속이 되어 미등록 이주자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단속반원의 구타 및 폭언은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 사례 #16의 경우도, 단속 및 보호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보복성 혹은 감정적인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원회의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단속반원들의 이러한 폭력행사가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09. 4. 8.경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중국인 여성 2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남성 단속반원이 단속된 여성의 목 부위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sup>4)</sup> 단속반원들의 과도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아. 단속과정에서의 부상 및 조치

#### 1) 조사결과

<표 26>에 따르면,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중 남자는 25.5%가 여자는 8.8%가 부상을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

4)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에 ‘무자비한 단속’ 물의, SBS 2009. 4. 10.자 기사

데 <표 27>에서와 같이 부상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 응답자의 22명, 31.9%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는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이나 보호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는 12명, 17.4%, 여자는 3명, 50.0%였다. 한편 단속 당시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는 9명, 13.0%, 여자는 1명, 16.7%였다.

<표 26> 부상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55	22.2	51	25.5	4	8.3
아니오	193	77.8	149	74.5	44	91.7

<표 27> 부상에 대한 조치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단속당시 즉시 응급처치를 받음	10	13.3	9	13.0	1	16.7
출입국(보호소)와서 치료를 받음	15	20.0	12	17.4	3	50.0
치료를 받지 못함	<b>22</b>	<b>29.3</b>	22	31.9	0	0.0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하게 다치지 않음	28	37.3	26	37.7	2	33.3

아래의 사례는 사고를 당한 후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즉시 처치를 하지 않은 사례이다.

당시 밥을 먹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던 미등록이주노동자 3명은 단속반원을 확인하고 도망을 쳤다, 도주 중 2명은 잡혔으며 그중 1명은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차안에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말했으나 찬물을 뿌린 후 병원이송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단속 차량에서 6명이 봉고차에 탔고 수갑을 양쪽 팔에 채웠다. 12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포천시 송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였고 18시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하였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도착 후 다리를 다친 사람이 내리지 못하자 단속반 1명과 단속된 이주민이 함께 부축하여 출입국 안으로 들어갔으며 출입국관리 직원이 파스를 발라주었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발이 부러졌으며 병원비는 다친 사람이 지불하였다. 다음 날 아침 다리가 부러진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화성보호소로 이송되었다.(사례#35, 방글라데시, 남)

## 2) 5분석

단속반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에 대한 의료조치 등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따라서 단속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응급조치 등 의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단속이후 호송 및 이송 관련 개선방안

### 가. 단속차량에서의 장시간 인치 및 수갑착용

#### 1) 조사결과

<표 28>에 따르면, 보호외국인이 단속될 때 단속차량에 있었던 시간은 1시간 이내가 23.8%, 1시간에서 2시간이 20.5%, 2시간에서 3시간이내가 18.3%로

나타났다. 그리고 4시간에서 5시간이내에 있었다는 응답은 10.8%, 5시간 이상도 10.5%였다.

〈표 28〉 단속차량에서 있었던 시간

시간	빈도	비율
1시간 이내	86	23.8
1시간-2시간	74	20.5
2시간-3시간	66	18.3
3시간-4시간	42	11.6
4시간-5시간	39	10.8
5시간 이상	38	10.5
기타	16	4.4

<표 29>에 의하면, 단속차량에 갇혀있으면서 힘들었던 점을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남녀 공히 ‘수갑을 차고 있어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73.5%, 66.1%의 비율로 나타났다. 수갑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경우는 장시간 수갑을 차고 있어 고통을 받은 경우와 부상을 당하여 수갑을 찰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수갑을 채워서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다.

〈표 29〉 단속차량 안에서 힘든 점

	전체		남자		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갑을 차고 있어서 힘들었다	227	72.1	186	73.5	41	66.1
배가 고팠다	76	24.1	59	23.3	17	27.4
목이 말랐다	68	21.6	52	20.6	16	25.8
화장실을 가지 못해 힘들었다	80	25.4	57	22.5	23	37.1
덥고 냄새가 나서 힘들었다	63	20.0	50	19.8	13	21.0
휴대폰 사용이 어려웠다	155	49.2	119	47.0	36	58.1
도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90	28.6	80	31.6	10	16.1
기타	29	9.2	21	8.3	8	12.9

내가 탄 차는 용인에서부터 광주, 수원을 돌아다녔다. 차안에 5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두 명 이서 하나의 수갑을 찼고, 한 손은 철장에 걸었다. 창문 쪽에 앉은 사람은 다 나 같은 방법으로 수갑을 채웠다. 5시간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차는 덥고 무척 많이 힘들었다. 차에 있던 사람은 약 열 다섯 명 정도 되었다. 사람들이 손이 아프다고 수갑 좀 풀어달라고 사정했다. 출입국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했다. 나는 12시에 잡혔는데 수원 출입국에 들어오니 5시가 훨씬 넘었다. 수갑 찬 손에 멍이 들었고 지금도 그 자국이 검게 남아 있다. 철장에 매단 손이 너무 아팠다. 다섯 시간 손을 들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힘들어서 몸을 움직이면 수갑이 손목을 조여와 손목이 아프고 나중에는 손이 절여 괴로웠다. 지금도 차안에서 생각하면 끔찍하다.(사례#1, 베트남, 남)

산업재해(손가락 절단)를 당해 치료 중에 있어 단속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다. 수갑을 채울시 저항하지 않았으며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단속차량의 손잡이에 수갑을 채웠으며 손이 너무 아파 풀어달라고 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옆 사람과 함께 수갑을 채웠다. 1시간 후 수원에 도착하여 사진을 찍은 후 보호소에 이감되었다.(사례#7, 중국, 남)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휴대폰사용이 어려웠다’는 응답으로 각각 47.0%, 58.1%로 나왔다. 한편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응답에서 높게 나온 것은 생리적인 현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화장실에 가지 못해 힘들었다는 응답은 여자는 37.1%였으며 남자는 22.5%였다. 아래의 사례는 장시간 차안에 있으면서 화장실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여성의 사례이다.

우리는 잡힌 후 바로 출입국사무소로 가는 줄 알고 화장실을 가고 심을 것을 참았다. 점심으로 빵하고 식혜를 주었는데 소변이 마려울까봐 목이 말랐는데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차는 계속 어디론가 이동했다. 소변을 참다못해 출입국 사람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니깐 그냥 참으라고 했다. 승합차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보통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할 때는 참고 참은 다음 부탁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소변 너무 마려웠다. 차가 울퉁불퉁 움직일 때 마다 소변을 참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방

광이 터질 것 같았다. 안돼요 급해요 급해요 하고 3-4번을 더 재촉하니 저 아줌마 정말 화장실 가고 싶은가 보다고 하면서 어디 과수밭 같은 곳에 차를 세워주었다. 그러면서 아무데나 가서 소변을 보라고 했다. 소변을 볼 때 수갑을 풀어주고 출입국 직원은 5-6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키고 있었다. 나 외에 3명이 소변을 보았다. 나는 너무 급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소변을 보았다. 다른 외국인 남자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하고 여자 먼저 화장실 보도록 하고, 다른 남자 외국인은 발 입구에서 소변을 보게 했다.(사례#12, 중국, 여)

<표 30>에 의하면 단속차량에 간헐했을 때 단속된 다른 외국인은 몇 명이 더 탑승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이상’ 이라는 응답이 29.3%였으며 ‘1명에서 5명’ 사이는 28.4%로 나왔고, <표 31>에 의하면 단속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승합차, 버스에 사람들이 다 채워질 때 까지 계속 돌아다니며 단속해서 계속 차안에 갇혀있었다’는 응답이 남, 여 각각 59.4%, 58.5%로 제일 높게 나왔다. 그 다음은 단속된 후 바로 출입국관리소로 왔다’는 응답으로 남자는 37.5%, 여자는 45.3%였다. 한편 ‘다른 미등록 외국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아 다른 공장으로 함께 동행 했다’는 응답은 남자는 8.9%, 여자는 1.9%로 남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훨씬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동승인원

동승인원	빈도	비율
없었다	56	16.6
1명-5명	96	28.4
5명-10명	87	25.7
10이상	99	29.3

〈표 31〉 단속된 이후의 상황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바로 출입국관리소로 왔다	108	39.0	84	37.5	24	45.3
차량에 다 채워질 때 까지 감혀있었다	164	59.2	133	59.4	31	58.5
미등록 외국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구 받아 동행	21	7.6	20	8.9	1	1.9

<표 32>에 따르면, 단속차량 안에서의 수갑착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자의 88.5%, 여자의 66.7%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처음에는 착용을 하였다가 도중에 풀어준 경우는 남자는 5.0%, 여자는 15.8%였다. 한편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남자는 3.8%, 여자는 10.5%였다.

〈표 32〉 단속 차량 안에서의 수갑착용 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용	268	84.5	230	88.5	38	66.7
처음에는 착용을 하였다가 도중에 풀어줌	22	6.9	13	5.0	9	15.8
처음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도중에 수갑을 착용	11	3.5	7	2.7	4	7.0
착용하지 않음	16	5.0	10	3.8	6	10.5

<표 33>에 의하면, 단속차량 안에서의 수갑착용 시간은 남자의 경우 5시간 이상이 29.4%로 가장 많이 나왔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1시간 이내가 33.9%로 가장 많이 나왔다.

〈표 33〉 단속차량 안에서의 수갑착용 시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시간 이내	52	17.1	33	13.3	19	33.9
1시간-2시간	49	16.1	41	16.5	8	14.3
2시간-3시간	39	12.8	33	13.3	6	10.7
3시간-4시간	46	15.1	36	14.5	10	17.9
4시간-5시간	38	12.5	32	12.9	6	10.7
5시간 이상	80	26.3	73	29.4	7	12.5

<표 34>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보호소로 이송하는 과정 중 수갑착용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달라는 질문에 ‘손 양쪽으로 서로 다른 사람과 수갑을 함께 차고 늘어서서 이동했다’는 응답이 남자는 47.3%, 여자는 49.2%였으며 ‘하나의 수갑으로 두 명이 착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는 39.7%, 여자는 32.2%였다.

〈표 34〉 이송 중 수갑착용 방법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혼자 수갑 차고 이동	54	18.2	41	17.3	13	22.0
하나의 수갑에 두 명이 착용	113	38.2	94	39.7	19	32.2
서로 다른 사람과 수갑을 함께 차고 이동	141	47.6	112	47.3	29	49.2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이동	18	6.1	14	5.9	4	6.8

<표 35>에 따르면, 보호소, 병원, 법원 등 외부 장소로 이송되는 동안 수갑착용이 여러 사람들 앞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의 57.3%, 이중 남자는 56.8%, 여자는 59.5%가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5〉 이송 중 수갑착용의 노출 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18	57.3	96	56.8	22	59.5
아니오	88	42.7	73	43.2	15	40.5

한편 지하철 등에서 단속을 한 후 수갑을 채운 채로 지하철역에 세워둔 경우도 있었다.

친구와 함께 강변역 지하철 개찰구를 나오고 있었다. 개찰구를 통과하자마자 한국인 남자 3명이 둘러싸며 팔을 잡았다. 그 한국인들은 팔을 잡은 상태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며 출입국직원이라고 말하였다. 비자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대답하였더니 바로 수갑을 채웠다. 출입국 직원들은 하나의 수갑을 사용하여 친구와 나를 연결하였다. 출입국직원들은 그 상태로 지하철 개찰구 옆에서 1시간 정도 서서 기다리게 하였다. 개찰구 옆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잡힌 몽골 여성 2명이 수갑을 차고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쳐다보았다. 20분 후에 출입국직원 한 명이 와서 수갑 찬 부분을 종이로 가렸다. 아마도 다른 외국사람들이 수갑을 보고 도망칠까봐 그렇게 한 것 같았다.(사례#15, 이란, 남)

## 2) 분석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무기 등’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와 분사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장구”도 포함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번 방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이미 단속된 외국인을 과도하게 장시간 비좁은 단속차량에 인치한 상태로 둔 채 또 다른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행위를 계속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불법체류자 등을 단속하여 보호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에는 그 직무의 성질상 어느 정도의 강제력 행사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이 저항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강제력의 행사를 종료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단속공무원들은 원고가 이미 수갑에 채워져 단속차량에 태워진 이후 저항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갑을 벗겨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계속하여 뒤로 채운 상태로 원고를 서울에서 청주까지 호송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가락 감각이상 및 손목 찰과상 등의 증세가 남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단속공무원들이 직무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적절히 해석·적용하지 못한 과실로 출입국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계구사용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게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5.선고 2006나5238 판결)한바 있다.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하고 수갑을 장시간 채우는 행위는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단속된 외국인을 과도하게 장시간 비좁은 단속차량에 인치한 상태로 둔 채 또 다른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외국인의 보호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나. 장비사용

<표 36>에 따르면, 단속반원이 단속할 때 사용했던 장비를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수갑이 남, 여 모두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남자는 89.7%, 여자는 86.9%였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은 남자의 경우는 경찰봉으로 10.7%였으며, 여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이 11.5%였다. 한편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경우는 남자는 6명, 여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는데,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표 36〉 단속 장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갑	287	89.1	234	89.7	53	86.9
줄(포승)	4	1.2	4	1.5	0	0.0
경찰봉	30	9.3	28	10.7	2	3.3
가스총	3	0.9	3	1.1	0	0.0
전자충격기	7	2.2	6	2.3	1	1.6
그물총	3	0.9	3	1.1	0	0.0
기타	7	2.2	6	2.3	1	1.6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음	25	7.8	18	6.9	7	11.5

그 사람들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나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 차고 있던 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나왔다. 그 사람들이 나를 차에 태웠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단속으로 잡힌 줄 알았다. 나는 너무 황당하고, 절망스러워서 핸드폰으로 내 머리를 막 내리쳤다. 머리가 찢겨지고 피가 났다. 그러자 그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옆에서 내 팔을 하나씩 붙잡고, 한 명은 앞에서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전기 봉을 옆구리에 댔다. 나는 전기봉의 충격으로 그 자리 쓰러졌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다시 부추겨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내 머리채를 잡은 사람은 또 다시 전기봉으로 옆구리와 배 등 총 세 번을 전기봉으로 찔렀다. 그들은 목을 계속 목을 했다. 그 때 내 머리에는 피도가 많이 났고 옷이 피로 젖었다. 그들은 때리지는 않고 전기 충격기로 고통을 주었다.(사례#11, 중국. 남)

<표 37>에 의하면, 단속반원이 사용한 계구, 수갑채용 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의 31.5%, 여자의 1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37〉 계구, 수갑채용으로 인한 부상 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72	28.8	64	31.5	8	17.0
아니오	178	71.2	139	68.5	39	83.0

### 1) 분석

출입국관리법 제77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무기 등의 휴대를 할 수 있고 경찰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수갑 등 경찰장구는 “형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보호나 강제퇴거 등과 같은 행정작용과는 무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등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가 아닌 외국인들에 대한 물리력 사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장구 및 무기의 사용은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

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 다. 성적 수치심

### 1) 조사결과

<표 38>에 따르면 단속반원의 성별에서는 남자의 경우 남자가 단속한 경우는 76.4%, 남성과 여성이 같이 단속한 경우는 21.8%였다. 여자의 경우는 남성이 단속한 경우는 59.0%, 남성과 여성이 같이 단속한 경우는 34.4%, 여성 단속반원이 단속한 경우는 6.6%였다.

〈표 38〉 단속반원의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성	243	73.2	207	76.4	36	59.0
여성	9	2.7	5	1.8	4	6.6
남성, 여성 모두	80	24.1	59	21.8	21	34.4

<표 38>에 의하면 단속과정이나 단속 승합차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는 16.9%, 여자는 18.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표 39>에서와 같이 단속과정이나 단속 승합차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를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 ‘차에서 내린 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묶여 끌려가서’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남자는 54.7%, 여자는 50.0%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응답은 ‘장시간 간혀서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라는 응답으로 남자는 32.6%, 여자는 30.8%로 나왔

다. 한편 성별로 차이가 나는 응답은 ‘성이 다른 단속반원들에 의해 연행되어’라는 응답이었다. 여기에 응답한 사람은 남자는 4.2%인 반면 여자는 26.9%였다.

〈표 39〉 단속과정, 단속 승합차 안에서의 성적 수치심 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46	17.2	37	16.9	9	18.8
아니오	220	82.4	182	83.1	38	79.2

〈표 40〉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이 다른 단속반원들에 의해 연행되어	11	9.1	4	4.2	7	26.9
비좁은 차량 안에서 장시간 이성들과 밀착되어 있어서	18	14.9	14	14.7	4	15.4
장시간 갇혀서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	39	32.2	31	32.6	8	30.8
차에서 내린 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묶여 끌려가서	65	53.7	52	54.7	13	50.0
단속 반원이 성적인 농담을 해서	9	7.4	7	7.4	2	7.7
기타	6	5.0	5	5.3	1	3.8

## 2) 분석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에 대하여 ‘차에서 내린 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묶여 끌려가서’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피구금지처우에관한최저기준

규칙」 제45조는 피구금자인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가능한 한 일반 공중의 면전에 수용자의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호기심·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송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이 일반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응답은 ‘장시간 간혀서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었다. 조사결과 단속 호송차량에 장시간 대기하던 여성보호외국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다가 화장실이 아닌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여성보호외국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전체 응답 중 ‘비좁은 차량 안에서 장시간 이성들과 밀착되어 있어서’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성이 다른 단속반원들에 의해 연행되어’라는 응답이 26.9%로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호송과정에서 이성간의 격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단속반원이 연행하고 계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속반원의 성적인 농담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응답이 있었다. 국가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단속을 당한 미등록 이주자들의 입장에서는 단

속반원의 행위로 인하여 일상생활 보다 더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단속반원들에 대한 성희롱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4. 단속이후 조사과정 및 공무원의 통보의무

### 가. 권리고지

#### 1) 조사결과

<표 41>에 따르면, 변호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8%가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남자는 71.2%가 여자의 경우에는 68.9%가 권리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41> 변호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변호할 권리 고지 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75	29.2	61	28.8	14	31.1
아니오	182	70.8	151	71.2	31	68.9

<표 42>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들어 올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서 ‘친지나 가족과 면회할 권리’에 응답한 사람은 남자는 53.1%, 여자는 69.7%였다. 그 다음은 ‘편지를 쓰거나 전화할 권리’로 남자는 53.9%, 여자는 45.5%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한편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람은 전체



16.1%로 남자는 14.8%, 여자는 21.2%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표 42〉 보호시설 입소 시의 권리고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친지나 가족과 면회할 권리	91	56.5	68	53.1	23	69.7
변호사나 영사와 면회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	43	26.7	34	26.6	9	27.3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권리	26	16.1	19	14.8	7	21.2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권리	35	21.7	28	21.9	7	21.2
편지를 쓰거나 전화할 권리	84	52.2	69	53.9	15	45.5

<표 43>에 의하면 구금이나 강제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74.8%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남자는 78.5%, 여자는 57.7%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표 43〉 구금, 강제퇴거에 대해 이의신청 권리 인지 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75	25.2	53	21.5	22	42.3
아니오	223	74.8	193	78.5	30	57.7

<표 44>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69.9%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는 71.8%, 여자는 62.1%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표 4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권리 인지 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92	30.1	70	28.2	22	37.9
아니오	214	69.9	178	71.8	36	62.1

## 2) 분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지 않고서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란다원칙으로 알려진 이 원칙은 UN 피구금자 보호원칙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외국인의 권리고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도 직접 제한 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소정의 ‘체포, 구속’ 역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모든 형태의 공권력 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4. 3.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에 해당 한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집행 시에도 보호외국인에게 헌법 제12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준용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

## 나. 언어문제

### 1) 조사결과

<표 45>에 따르면, 단속 직후 보호실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얼마나 잘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47.6%로 제일 높게 나왔다. 이 중 남자의 경우는 46.6%, 여자의 경우는 51.9%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한편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2.2%로 역시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42.7%로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었는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43.9%, 여자의 경우 37.1%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다.

〈표 45〉 의사소통 정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136	47.6	108	46.6	28	51.9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28	9.8	22	9.5	6	11.1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30	10.5	27	11.6	3	5.6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	92	32.2	75	32.3	17	31.5

<표 46>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사용한 언어는 한국어가 83.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출신국어로 조사를 받은 경우는 4.1%였다. 그런데 <표 45>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6%에 지나지 않아 상당수의 보호 외국인들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만큼 되지 않음에도 한국어를 사용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조사과정에서의 사용언어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국어	245	83.1	199	82.9	46	83.6
영어	27	9.2	21	8.8	6	10.9
출신국어	12	4.1	11	4.6	1	1.8
기타	11	3.7	9	3.8	2	3.6

<표 47>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의 통역인 여부는 남자의 75.6%, 여자의 78.6%가 통역인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표 48>에서와 같이 통역인의 신분은 보호소 내 외국인이 34.8%, 외부에서 온 통역인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각각 32.6%였다.

〈표 47〉 조사과정에서의 통역인 여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59	23.9	50	24.4	9	21.4
아니오	188	76.1	155	75.6	33	78.6

〈표 48〉 통역인의 신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입국 관리소 직원	30	32.6	24	30.8	6	42.9
외부에서 온 통역인	30	32.6	28	35.9	2	14.3
보호소 내 외국인	32	34.8	26	33.3	6	42.9

## 2) 분석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등록이주자들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일단 단속 및 보호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옮겨지게 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용의자”의 법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혹은 출장소장은 그 여부를 심사하여 강제퇴거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국내 법제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언어 상의 의사소통 문제가 매우 중요함.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6항에도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문제는 비단 조사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감시, 감독하는 외국인들의 고립된 생활시설인 외국인보호시설은 그 자체로 언어상의 의사소통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외국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될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보호뿐 아니라 단속과 보호절차, 강제퇴거절차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UN 피구금자 보호원칙 원칙 14는 체포, 억류, 구금을 집행하는 당국에 의하여 사용되는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에 의하여 원칙 11의 제2항(억류명령 및 그 이유), 원칙 12의 제1항(체포이유, 체포시간, 관계된 법집행관의 성명, 구류시설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원칙 13(체포, 억류, 구금에 관한 피구금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즉시 고지 받을 권리를 갖고, 체포에 이어지는 법률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하다면 무료로 통역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언어상의 장애가 피구금자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 보호원칙 원칙 16의 제2항에서는 외국인이 자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신을 할 권리도 고지 받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이 시의 적절하게 자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2년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출입국 관련서류의 번역본을 송출국 별로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사증의 설명, 국내 근로기준법 중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항, 부당한 인권 침해나 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방안,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수사과정시 인권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책자(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지침)를 제작·배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방문조사 결과 아직도 위원회 권고내용을 외국인보호시설에  
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호 외국인이  
권리구제 관련 자료 등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과,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통역  
지원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다. 공무원의 통보의무

### 1) 조사결과

<표 49>에 의하면, 관공서에서 단속을 당한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신고 되  
어 연행’된 경우가 36.3%로 제일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경찰이나 관공서  
에 피해신고를 갔다가 단속’된 경우와 ‘증언, 목격자로 진술하다가 미등록 사  
실이 밝혀져 단속’된 경우가 각각 15.3%, 14.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9〉 관공서에서의 단속

단속방법	빈도	비율
경찰이나 관공서에 피해신고를 갔다가 단속	19	15.3
증언, 목격자로 진술하다가 미등록 사실이 밝혀져 단속	18	14.5
비자신청을 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연행	6	4.8
누군가에게 신고 되어 연행	45	36.3
기타	36	29.0

### 2) 분석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강제퇴거사  
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보의무 규정은 ‘인권보장’이라는 보편적인 법 원리보다는 ‘출입국관리’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규정으로, 위와 같은 공무원의 통보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미등록이주자는 임금체불, 사기사건, 폭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노동부나 경찰 공무원에게 구제신청 등을 하기 위해 강제 출국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 담당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완화하여 미등록이주자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2003.2.10.결정)’한 바 있으며, 나아가 ‘미등록이주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른바 “선(先)구제제도 후(後)통보원칙”제도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2007.12.3.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6. 2. ‘출입국관리행정변화전략계획’을 통해 외국인보호의 인도적 차원에서 이른바 ‘선(先) 구제후(後) 통보제도’의 도입 추진을 발표하고, 2006. 7. 12. 동일한 내용이 반영된 공청회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이러한 ‘선구제 후통보제도’의 도입이 배제된 채, 현행법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일지라도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구제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등 ‘선 구제제도 후 통보원칙’을 지침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선 구



제제도 후 통보원칙'을 폐지하였음. 과거 이 지침은 관련 공무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등록이주자의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는데, 현재 이 지침을 폐지하여 더욱 미등록이주자의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를 받는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권고한 것과 같이 '선 구제제도 후 통보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미등록이주자의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 구제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통보의무가 정지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이주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 현황

### 1. 조사대상자



## 1. 조사대상자

<표 50>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는 단속 담당은 69명, 41.3%, 강제퇴거 담당은 53명, 31.7%이며 둘 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45명으로 26.9%였다. 남자의 경우는 강제퇴거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37명, 26.2%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16명, 61.5%가 강제퇴거를 담당하고 있다.

〈표 50〉 종사업무

(단위: 명, %)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단속담당	69	41.3	62	44.0	7	26.9
강제퇴거담당	53	31.7	37	26.2	16	61.5
단속·강제퇴거담당	45	26.9	42	29.8	3	11.5

<표 51>에 의하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경우 누구와 함께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출입국관리국 직원들만 단속을 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91.5%였으며 공익근무요원들과 함께 단속하였다는 응답은 8.5%였다.

〈표 51〉 함께 단속한 사람

(단위: 명, %)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입국관리국 직원들만	107	91.5	98	91.6	9	90.0
용역업체 직원들도 함께	0	0.0	0	0.0	0	0.0
공익근무요원들도 함께	10	8.5	9	8.4	1	10.0
위 모든 분들과 함께	0	0.0	0	0.0	0	0.0

<표 52>에 의하면, 2009년 1-6월 기간 중 한 달에 평균 몇 회 정도 단속에 참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5회 이하가 30명, 25.6%, 6-10회가 45명, 38.5%, 11회-15회가 11명, 9.4% 그리고 16회 이상은 31명, 26.5%였다. 남자의 경우는 6회-10회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의 경우는 5회이하가 40.0%로 가장 많았다.

〈표 52〉 한 달 평균 단속 횟수

(단위: 명, %)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회 이하	30	25.6	26	24.3	4	40.0
6-10회	45	38.5	43	40.2	2	20.0
11-15회	11	9.4	10	9.3	1	10.0
16회 이상	31	26.5	28	26.2	3	30.0

<표 53>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심야 단속은 한 달에 평균 몇 회 참석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회이하가 71명, 60.2%였으며 6회-15회가 6명, 5.1%였으며 11회-15회도 2명, 1.7%였다. 그리고 심야단속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9명, 33.1%였다. 남자의 경우는 5회이하가 66명, 61.1%로 가장 많이 나왔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명, 50%, 5회이하도 5명, 50%로 나왔으며 6회 이상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 53〉 한 달 평균 심야단속 횟수

(단위: 명, %)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다	39	33.1	34	31.5	5	50.0
5회 이하	71	60.2	66	61.1	5	50.0
6-10회	6	5.1	6	5.6	0	0.0
11-15회	2	1.7	2	1.9	0	0.0
16회 이상	0	0.0	0	0.0	0	0.0

<표 54>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단속 시 출입국관리국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54> 단속 시 자기 신분증 제시 법적 근거 인지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안다	118	100.0	107	100.0	11	100.0
모른다	0	0.0	0	0.0	0	0.0

<표 55>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단속 시 얼마나 자주 출입국관리국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본인의 신분을 밝혔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항상 그렇게 행동 한다’가 105명으로 88.2%였으며 ‘대체로 그렇게 행동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13명, 10.9%였으며 ‘별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사람이었다. 남자의 경우는 90.7%가 ‘항상 그렇게 행동한다.’고 했으며 여자의 경우는 6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55> 단속 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정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항상 그렇게 행동	105	88.2	98	90.7	7	63.6
대체로 그렇게 행동	13	10.9	9	8.3	4	36.4
별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	1	0.8	1	0.9	0	0.0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	0	0.0	0	0.0	0	0.0

<표 55>에 의하면, 긴급보호서에 의한 보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의 특수성상 긴급보호서에 의한 보호는 불가피하다’

는 응답이 98명으로 84.5%였다. 반면 ‘보호 명령서에 의한 보호가 원칙이고 긴급보호서에 의한 보호는 예외로 규정한 현행법상 시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명, 6.9%였다. ‘사실상 보호명령서와 긴급 보호서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명, 6.0%였다.

<표 56> 긴급보호서에 의한 보호에 대한 이견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외로 규정한 현행법상 시정되어야 한다	8	6.9	8	7.6	0	0.0
단속의 특수성상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98	84.5	88	83.8	10	90.9
보호명령서와 긴급보호서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	7	6.0	7	6.7	0	0.0
잘 모르겠다	3	2.6	2	1.9	1	9.1

<표 57>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강제력·물리력 사용의 현실적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66명, 56.9%였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5명, 38.8%였다. 남자의 경우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3명, 41.0%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18.2%였다. 대체로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의 경우 54.3%, 여자는 81.8%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 전체에서 5명, 4.3%였다.

〈표 57〉 단속과정에서의 강제력·물리력사용의 필요성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필요하다	45	38.8	43	41.0	2	18.2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	66	56.9	57	54.3	9	81.8
대체로 불필요한 편이다	5	4.3	5	4.8	0	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0	0.0

<표 55>에 의하면, 강제력·물리력 사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명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1명, 45.9%,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60명, 54.1%였다. 이를 성별로 분류하면 남자의 경우는 ‘명확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9.0%인 반면 여자의 경우는 18.2%였다.

〈표 58〉 강제력·물리력 사용의 법적 근거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명확하다	51	45.9	49	49.0	2	18.2
명확하지 않다	60	54.1	51	51.0	9	81.8

<표 59>에 의하면, 단속 시 외국인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구급차를 불러 치료를 받게 한 후 신원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110명, 93.2%였으며, ‘신원을 먼저 확인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한다.’는 응답은 7명, 5.9%였다. 남자의 경우 ‘구급차를 불러 치료를 받게 한 후 신원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100명, 92.6%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모두 그렇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9〉 부상을 당한 사례 발생 시 조치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급차를 불러 치료를 받게 한 후 신원을 확인	110	93.2	100	92.6	10	100.0
구급차를 불러주고 현장을 떠남	1	0.8	1	0.9	0	0.0
신원을 먼저 확인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	7	5.9	7	6.5	0	0.0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이후는 책임없음	0	0.0	0	0.0	0	0.0
사고현장을 외면함	0	0.0	0	0.0	0	0.0

<표 60>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보호외국인이 보호 시 긴급보호서 혹은 이와 유사한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긴급보호서 제시가 잘 지켜진다는 응답이 110명, 94.8%,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6명, 5.2%였다.

〈표 60〉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에 대한 생각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잘 지켜진다	110	94.8	100	94.3	10	100.0
잘 지켜지지 않는다	6	5.2	6	5.7	0	0.0



<표 61>에 의하면, 긴급보호서 제시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언어상의 문제 등으로 긴급보호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2명, 39.6%였으며, ‘보호외국인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5명, 33.0% 그리고 ‘이전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명, 26.4%였다.

<표 61> 긴급보호서 제시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호외국인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	35	33.0	33	33.3	2	28.6
언어 상의 문제 등으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42	39.6	40	40.4	2	28.6
이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잘 지켜짐	28	26.4	25	25.3	3	42.9
잘 모르겠다	1	0.9	1	1.0	0	0.0

<표 62>에 의하면, 긴급보호서를 주로 언제 작성하여 제시하는가에 대해서는 ‘단속 현장에서 작성하여 현장에서 제시한다’는 응답이 66명, 68.0%였으며 ‘단속 후 이동 시 작성하여 이동 중에 제시한다’는 응답은 21명, 21.6%였다.

〈표 62〉 긴급보호서 작성 및 제시 시기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단속 현장에서 작성하여 현장에서 제시	66	68.0	60	66.7	6	85.7
단속 후 이동 시에 작성하여 이동 중에 제시	21	21.6	20	22.2	1	14.3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이동한 후 작성하여 제시	1	1.0	1	1.1	0	0.0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이동한 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보호명령서 제시	0	0.0	0	0.0	0	0.0
본인이 요구할 때 제시	0	0.0	0	0.0	0	0.0
기타	9	9.3	9	10.0	0	0.0

<표 63>에 의하면, 단속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의 언어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말을 잘하는 같은 나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42명, 36.2%였으며, ‘세밀한 부분은 어렵지만 대체적 내용은 영어·한자·손짓·발짓 등을 통해 대부분 전달이 가능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9명, 33.6%였으며, ‘필요한 경우 통역 등이 즉시 제공되어 의사소통이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9명, 25.0%였다. 반면 ‘비록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역제공 등의 법적 의무가 없고 소요예산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명, 5.2%였다.

<표 63> 단속이나 조사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한 경우 통역 등이 즉시 제공되어 문제된 적이 없음	29	25.0	28	26.4	1	10.0
한국말을 잘하는 같은 나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대부분 의사소통 가능함	42	36.2	38	35.8	4	40.0
대체적 내용은 영어·한자·손짓·발짓 등을 통해 대부분 의사소통 가능	39	33.6	34	32.1	5	50.0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	6	5.2	6	5.7	0	0.0

<표 64>에 의하면, 출국권고서, 출국명령서 혹은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면서 그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내용과 이유를 설명한다’가 99명, 85.3%였으며, ‘본인이 요구하면 설명한다’는 12명, 10.3%, ‘문서를 제시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5명, 4.3%였다. 이를 성별로 나누면 남자의 경우는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86명, 89.6%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13명, 65.0%였다. 본인이 요구하면 설명하는 경우는 남자는 6명, 6.3%였고 여자는 6명, 30.0%였다.

<표 64> 출국권고서 등을 제시하면서 그 사유를 어떻게 설명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내용과 이유를 설명	99	85.3	86	89.6	13	65.0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음	5	4.3	4	4.2	1	5.0
본인이 요구하면 설명	12	10.3	6	6.3	6	30.0

<표 65>에 의하면, 보호외국인이 위 명령서 등의 내용을 언어 상의 문제로 읽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한국말을 하는 같은 나라 사람을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응답이 61명, 53.5%였으며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언어 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8명, 24.6%였다. 그리고 ‘통역을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응답은 22명, 19.3%였다. ‘통역제공 등의 법적 의무가 없고 소요예산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3명, 2.6%였다. 한편 ‘한국말을 하는 같은 나라 사람을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는 47.4%, 여자는 84.2%로 나왔다.

<표 65> 외국인인 명령서 등을 읽지 못하는 경우의 조치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언어상의 문제는 없었다	28	24.6	27	28.4	1	5.3
통역을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22	19.3	20	21.1	2	10.5
한국말을 하는 같은 나라 사람을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61	53.5	45	47.4	16	84.2
법적 의무가 없고 소요예산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3	2.6	3	3.2	0	0.0

<표66>에 의하면, 외국인 보호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1개월 미만이 87명, 52.7%, 1-2개월은 26명, 15.8%, 3-4개월은 5명, 3.0% 5개월 이상은 3명, 1.8%였다. 한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보호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4명, 26.7%였다.

〈표 66〉 보호기간에 대한 의견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개월 미만	87	52.7	69	50.0	18	66.7
1-2개월	26	15.8	22	15.9	4	14.8
3-4개월	5	3.0	3	2.2	2	7.4
5개월 이상	3	1.8	3	2.2	0	0.0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44	26.7	41	29.7	3	11.1

<표 67>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예방을 위해서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액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39명, 23.1%, 대체로 동의한다는 사람은 64명, 37.9%로 찬성하는 경우가 61.0%였다. 반면 대체로 반대하는 경우는 25명, 14.8%,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우는 6명, 3.6%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18.4%였다.

〈표 67〉 벌금에 대한 의견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적으로 동의	39	23.1	33	23.2	6	22.2
대체로 동의	64	37.9	52	36.6	12	44.4
동의도 반대도 아님	35	20.7	32	22.5	3	11.1
대체로 반대	25	14.8	19	13.4	6	22.2
강력 반대	6	3.6	6	4.2	0	0.0

<표 67>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수갑 등 장비 사용을 적극적으로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가 76명,

45.0%, 강력 반대가 62명, 36.7%로 반대하는 의견이 81.7%로 나타났다. 반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4명, 2.4%, 대체로 동의는 11명, 6.5%로 찬성하는 의견은 8.9%로 나타났다.

〈표 68〉 장비사용에 대한 의견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적으로 동의	4	2.4	4	2.8	0	0.0
대체로 동의	11	6.5	10	7.0	1	3.7
동의도 반대도 아님	16	9.5	14	9.9	2	7.4
대체로 반대	76	45.0	55	38.7	21	77.8
강력 반대	62	36.7	59	41.5	3	11.1

<표 69>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속 권한을 외사경찰에 이관하고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다른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력반대는 65명, 38.5%, 대체로 반대는 43명, 25.4%로 반대하는 의견이 63.9%였다. 이를 성별로 분석하면 남자의 경우는 반대하는 의견이 68.3%였고 여자는 40.7%였다.

〈표 69〉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 업무의 외사경찰에의 이관에 대한 의견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적으로 동의	12	7.1	10	7.0	2	7.4
대체로 동의	28	16.6	20	14.1	8	29.6
동의도 반대도 아님	21	12.4	15	10.6	6	22.2
대체로 반대	43	25.4	34	23.9	9	33.3
강력 반대	65	38.5	63	44.4	2	7.4

<표 70>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보호 업무를 법무부 교정국으로 이관하고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다른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력반대가 53명, 31.4%, 대체로 반대가 47명, 27.8%로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9.2%였다. 한편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은 16명, 9.5%,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은 32명, 18.9%로 찬성하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8.4%였다. 반대하는 의견을 성별로 나누면 남자의 경우는 64.1%가 여자의 경우는 33.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보호 업무의 법무부 교정국으로의 이관에 대한 의견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적으로 동의	16	9.5	16	11.3	0	0.0
대체로 동의	32	18.9	22	15.5	10	37.0
동의도 반대도 아님	21	12.4	13	9.2	8	29.6
대체로 반대	47	27.8	40	28.2	7	25.9
강력 반대	53	31.4	51	35.9	2	7.4

<표 71>에 의하면,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이 강제퇴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재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가 15명, 8.9%, 대체로 동의는 57명, 33.9%로 동의하는 의견은 42.8%로 나왔다. 반면 강력반대는 17명, 10.1%, 대체로 반대는 35명, 20.8%로 반대하는 의견은 30.9%였다. 그리고 동의도 반대도 아니라는 의견은 44명, 26.2%로 나왔다. 한편 찬성하는 의견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는 40.9%가, 여자는 5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표 71> 강제퇴거 이의제기를 심사할 법적 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적으로 동의	15	8.9	14	9.9	1	3.8
대체로 동의	57	33.9	44	31.0	13	50.0
동의도 반대도 아님	44	26.2	37	26.1	7	26.9
대체로 반대	35	20.8	31	21.8	4	15.4
강력 반대	17	10.1	16	11.3	1	3.8

<표 72>에 의하면, 현재 직무량을 고려할 때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수가 어떻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111명, 66.9%,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는 54명, 32.5%로 직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99.3%로 나타났다.

<표 72>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수에 대한 의견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터무니없이 적다	111	66.9	99	71.2	12	44.4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	54	32.5	39	28.1	15	55.6
적당하다	1	0.6	1	0.7	0	0.0
대체로 남아도는 편이다	0	0.0	0	0.0	0	0.0
잉여 인력이 너무 많다	0	0.0	0	0.0	0	0.0

<표 73>에 의하면, 인원이 충원된다면 현재 보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0%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21명, 74.2%였으며 16-20%라고 응답한 사람은 22명, 13.5%였다. 16%이상을 충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의 경우는 90.9%, 여자의 경우는 68.9%로 나왔다.



〈표 73〉 인원충원에 대한 의견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 이하	0	0.0	0	0.0	0	0.0
6-10%	13	8.0	8	5.8	5	19.2
11-15%	7	4.3	4	2.9	3	11.5
16-20%	22	13.5	15	10.9	7	26.9
20% 이상	121	74.2	110	80.3	11	42.3

<표 74>에 의하면, 좋은 근로환경이 주어지는 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가 42명, 25.1%, ‘대체로 적게 주어진다’는 66명, 39.5%였으며, 따라서 좋은 근로 환경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은 64.6%였다. 한편 ‘대체로 많이 주어진다’는 응답은 3명, 1.3%, ‘충분히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 1.2%로 근로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5명, 2.5%였다. 그리고 근로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을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65.2%, 강제퇴거를 담당하는 사람은 66.0%, 두 가지 업무에 다 종사하는 사람은 62.2%로 나왔다. 따라서 근무환경에 대한 의견은 담당하는 업무에 다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좋은 근로환경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42	25.1	17	24.6	15	28.3	10	22.2
대체로 적게 주어진다	66	39.5	28	40.6	20	37.7	18	40.0
보통이다	54	32.3	23	33.3	15	28.3	16	35.6
대체로 많이 주어진다	3	1.8	1	1.4	1	1.9	1	2.2
충분히 주어진다	2	1.2	0	0.0	2	3.8	0	0.0

<표 75>에 의하면,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에 대해서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16명, 9.6%, ‘대체로 적게 주어진다’는 의견은 60명, 36.1%였다. 따라서 자기개발 기회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은 45.7%였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인 ‘대체로 많이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15명, 9.0%, ‘충분히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 2.4%로 나타났으며 이를 합친 비율은 11.4%였다. 자기개발 기회 부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을 한 사람을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는 47.8%, 강제퇴거는 42.3%, 두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46.7%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표 75> 자기개발 기회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16	9.6	10	14.5	3	5.8	3	6.7
대체로 적게 주어진다	60	36.1	23	33.3	19	36.5	18	40.0
보통이다	71	42.8	29	42.0	23	44.2	19	42.2
대체로 많이 주어진다	15	9.0	6	8.7	7	13.5	2	4.4
충분히 주어진다	4	2.4	1	1.4	0	0.0	3	6.7

<표 76>에 의하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 등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34명, 20.5%, ‘대체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55명, 33.1%로 나왔다. 따라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쪽으로 응답한 사람의 총 비율은 53.6%였다. 반면 ‘대체로 많이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5명, 3.0%였으며 ‘충분히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표 76〉 새로운 진로의 모색 기회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34	20.5	15	21.7	11	21.2	8	17.8
대체로 적게 주어진다	55	33.1	23	33.3	18	34.6	14	31.1
보통이다	72	43.4	29	42.0	21	40.4	22	48.9
대체로 많이 주어진다	5	3.0	2	2.9	2	3.8	1	2.2
충분히 주어진다	0	0.0	0	0.0	0	0.0	0	0.0

<표 77>에 의하면, 개인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가 38명, 22.9%였으며 ‘대체로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81명, 48.8%였다. 따라서 개인 시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총 비율은 71.7%였다. 반면 개인 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대체로 많이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 1.8%였으며 ‘충분히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개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응답을 종사 업무 별로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68.1%, 강제퇴거를 담당하는 사람은 82.7%, 두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사람은 64.5%였다.

〈표 77〉 개인시간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38	22.9	18	26.1	12	23.1	8	17.8
대체로 적게 주어진다	81	48.8	29	42.0	31	59.6	21	46.7
보통이다	44	26.5	20	29.0	9	17.3	15	33.3
대체로 많이 주어진다	3	1.8	2	2.9	0	0.0	1	2.2
충분히 주어진다	0	0.0	0	0.0	0	0.0	0	0.0

<표 78>에 의하면, 사회적 인정 또는 존경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가 37명, 22.3%, ‘대체로 적게 주어진다’고 응답한 것이 60명, 36.1%로 나왔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8.4%였다. 반면 ‘대체로 많이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9명, 5.4%였으며 ‘충분히 주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 1.8%였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 또는 존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2%에 지나지 않았다. 부정적 응답을 종사하는 업무별로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56.5%, 강제퇴거는 65.4%, 두 업무 모두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53.3%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표 78> 사회적 인정 또는 존경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37	22.3	15	21.7	12	23.1	10	22.2
대체로 적게 주어진다	60	36.1	24	34.8	22	42.3	14	31.1
보통이다	57	34.3	24	34.8	14	26.9	19	42.2
대체로 많이 주어진다	9	5.4	6	8.7	2	3.8	1	2.2
충분히 주어진다	3	1.8	0	0.0	2	3.8	1	2.2

<표 79>에 의하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수행에서 정신적 노동의 비중이 어떤지를 9점 척도로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에서 1,2,3에 응답한 비율, 즉 정신적 노동의 비중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9명, 9명, 5.5%였다. 4점에 응답한 사람은 4명, 5점에 응답한 사람은 44명, 6점에 응답한 사람은 22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43.0%였다. 한편 정신적 노동의 비중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7점에 응답한 사람은 42명, 8점은 14명, 9점은 28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51.6%였다. 정신적 노동비중이 많은 것으로 응답한 것을 담당업무 별

로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의 경우는 57.4%, 강제퇴거는 39.6%, 두 업무를 다 하는 경우는 57.1%로 나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노동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정신적 노동의 비중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매우 적음)	1	0.6	1	1.5	0	0.0	0	0.0
2	3	1.8	3	4.4	0	0.0	0	0.0
3	5	3.1	3	4.4	1	1.9	1	2.4
4	4	2.5	1	1.5	3	5.7	0	0.0
5(중간)	44	27.0	15	22.1	21	39.6	8	19.0
6	22	13.5	6	8.8	7	13.2	9	21.4
7	42	25.8	22	32.4	8	15.1	12	28.6
8	14	8.6	4	5.9	7	13.2	3	7.1
9(매우 많음)	28	17.2	13	19.1	6	11.3	9	21.4

<표 80>에 의하면, 육체적 노동의 비중에 대해서는 적은 것으로 응답한 경우인 1점은 2명, 2점도 2명, 3점은 6명으로 이들의 응답의 총 비율은 6.1%였다. 중간 그룹에 응답한 사람은 4점은 7명, 5점은 29명, 6점은 21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35.0%였다. 그리고 육체적 노동의 비중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7점에 응답한 사람은 41명, 8점은 28명, 9점은 27명으로 총 비율은 59.0%였다. 육체적 노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응답한 것을 종사업무별로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의 경우는 64.7%, 강제퇴거업무의 경우는 47.1%, 두 업무를 다하는 경우는 64.3%였다. 따라서 육체적 노동의 비중도 또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0〉 육체적 노동의 비중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매우 적음)	2	1.2	1	1.5	1	1.9	0	0.0
2	2	1.2	1	1.5	1	1.9	0	0.0
3	6	3.7	2	2.9	4	7.5	0	0.0
4	7	4.3	2	2.9	4	7.5	1	2.4
5(중간)	29	17.8	10	14.7	13	24.5	6	14.3
6	21	12.9	8	11.8	5	9.4	8	19.0
7	41	25.2	13	19.1	13	24.5	15	35.7
8	28	17.2	15	22.1	6	11.3	7	16.7
9(매우 많음)	27	16.6	16	23.5	6	11.3	5	11.9

<표 81>에 의하면, 일에 투입한 노력의 정도는 적은 것으로 응답한 1점은 2명, 2점은 1명, 3점은 0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2.8%였다. 중간그룹에 속하는 4점은 4명, 5점은 26명, 6점은 25명으로 이들의 총비율은 34.1%였다. 한편 일에 투입한 노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7점에 응답한 사람은 49명, 8점은 27명, 9점도 27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64.0%였다. 이를 단속업무 별로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68.6%가, 강제퇴거의 경우는 61.5%가, 두 업무를 다 담당하는 경우는 59.5%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표 81> 일에 투입한 노력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매우 적음)	2	1.2	1	1.5	0	0.0	1	2.4
2	1	0.6	1	1.5	0	0.0	0	0.0
3	0	0.0	0	0.0	0	0.0	0	0.0
4	4	2.5	2	3.0	1	1.9	1	2.4
5(중간)	26	16.1	9	13.4	13	25.0	4	9.5
6	25	15.5	8	11.9	6	11.5	11	26.2
7	49	30.4	22	32.8	15	28.8	12	28.6
8	27	16.8	12	17.9	11	21.2	4	9.5
9(매우 많음)	27	16.8	12	17.9	6	11.5	9	21.4

<표 82>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대한 만족은 제일 적은 것을 의미하는 1점에 응답한 사람은 8명, 2점에 응답한 사람도 8명, 3점은 15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19.1%였다. 중간그룹에 속하는 4점에 응답한 사람은 16명, 5점은 60명, 6점은 14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55.5%였다. 한편 일의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7점에 응답한 사람은 26명, 8점에 응답한 사람은 9명, 9점에 응답한 사람은 6명으로 총 25.3%가 이 그룹에 응답하였다.

<표 82> 일의 성과에 대한 만족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매우 적음)	8	4.9	4	5.9	2	3.8	2	4.8
2	8	4.9	2	2.9	5	9.6	1	2.4
3	15	9.3	9	13.2	6	11.5	0	0.0
4	16	9.9	7	10.3	3	5.8	6	14.3
5(중간)	60	37.0	21	30.9	14	26.9	25	59.5
6	14	8.6	5	7.4	7	13.5	2	4.8
7	26	16.0	14	20.6	8	15.4	4	9.5
8	9	5.6	4	5.9	3	5.8	2	4.8
9(매우 많음)	6	3.7	2	2.9	4	7.7	0	0.0

<표 83>에 의하면, 일의 양, 속도로 인한 시간적 압박감에 대한 질문에서 압박감이 매우 적은 것으로 응답한 1점의 경우는 1명, 2점은 2명, 3점도 2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3.0%였다. 그리고 중간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4점에 응답한 사람은 4명, 5점은 31명, 6점은 19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33.3%였다. 한편 일에 대한 시간적 압박감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 7점에 응답한 사람은 34명, 8점에 응답한 사람은 38명, 9점은 31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63.6%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나타냈다. 시간적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종사하는 업무별로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의 경우는 73.2%가, 강제퇴거의 경우는 47.2%가, 두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는 69.0%가 이 그룹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게 시간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83> 일의 양, 속도에 대한 시간적 압박감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매우 적음)	1	0.6	0	0.0	1	1.9	0	0.0
2	2	1.2	2	3.0	0	0.0	0	0.0
3	2	1.2	0	0.0	2	3.8	0	0.0
4	4	2.5	1	1.5	3	5.7	0	0.0
5(중간)	31	19.1	8	11.9	16	30.2	7	16.7
6	19	11.7	7	10.4	6	11.3	6	14.3
7	34	21.0	15	22.4	8	15.1	11	26.2
8	38	23.5	19	28.4	9	17.0	10	23.8
9(매우 많음)	31	19.1	15	22.4	8	15.1	8	19.0

<표 84>에 의하면, 이로 인한 짜증이나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매우 적게 느낀다고 응답한 1점의 경우는 2명, 2점은 1명, 3점은 5명으로 이들의 비율은 합하여 4.9%였다. 중간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4점에 응답한 사람은 3



명, 5점은 29명, 6점은 24명으로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총 비율은 34.6%였다. 그리고 일로 인한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7점에 응답한 사람은 39명, 8점에 응답한 사람은 27명, 매우 많이 느낀다는 9점에 응답한 사람은 32명으로 이 들의 총 비율은 60.6%였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그룹으로 볼 수 있는 7,8,9점에 응답한 사람들을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의 경우는 65.7%가, 강제퇴거의 경우는 52.9%가, 그리고 두 가지 업무를 다하는 경우는 61.9%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로 인한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84〉 일로 인한 짜증이나 스트레스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매우 적음)	2	1.2	1	1.5	1	1.9	0	0.0
2	1	0.6	1	1.5	0	0.0	0	0.0
3	5	3.1	2	3.0	2	3.8	1	2.4
4	3	1.9	1	1.5	1	1.9	1	2.4
5(중간)	29	17.9	7	10.4	12	22.6	10	23.8
6	24	14.8	11	16.4	9	17.0	4	9.5
7	39	24.1	17	25.4	9	17.0	13	31.0
8	27	16.7	9	13.4	10	18.9	8	19.0
9(매우 많음)	32	19.8	18	26.9	9	17.0	5	11.9

<표 85>에 의하면, 현재 자신의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9점 척도로 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1,2, 3점에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중간그룹인 4점에 응답한 사람은 3명, 5점에 응답한 사람은 45명, 6점에 응답한 사람은 29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46.7%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7점에 응답한 사람은 58명, 8

점에 응답한 사람은 17명, 매우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9점에 응답한 사람은 13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비율은 53.4%였다. 이 그룹에 속하는 응답을 종사업무별로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58.8%, 강제퇴거의 경우는 54.7%, 두 업무를 다 담당하는 사람은 43.1%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표 85〉 직무수행 정도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매우 못함)	0	0.0	0	0.0	0	0.0	0	0.0
2	0	0.0	0	0.0	0	0.0	0	0.0
3	0	0.0	0	0.0	0	0.0	0	0.0
4	3	1.8	1	1.5	1	1.9	1	2.3
5(중간)	45	27.3	18	26.5	16	30.2	11	25.0
6	29	17.6	9	13.2	7	13.2	13	29.5
7	58	35.2	22	32.4	21	39.6	15	34.1
8	17	10.3	12	17.6	3	5.7	2	4.5
9(매우 잘함)	13	7.9	6	8.8	5	9.4	2	4.5

<표 86>에 의하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서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는 어떤지 일의 보람, 소득 수준 및 노동강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9점 척도를 응답하라고 한 질문의 응답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1점에 응답한 사람은 3명, 2점에 응답한 사람은 2명, 3점에 응답한 사람은 16명으로 이들의 총 비율은 12.6%이다. 중간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4점에 응답한 사람은 18명, 5점의 경우는 50명, 6점은 14명으로 이 그룹에 속하는 응답의 총 비율은 49.3%였다.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7점에 응답한 사람은 32명, 8점에 응답한 사람은 16명, 매우 불만족한 것을 의미하는 9점에 응답한 사람은 15명으로 이 그룹의 총 비율은 37.9%였다. 이 그룹에 응답한 것을 담당업무별로 나누어 보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32.4%가, 강제퇴거의 경우는 45.2%, 그리고 두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사람은 37.7%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표 86〉 생활만족도

	전체		단속		강제퇴거		단속·강제퇴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매우 만족)	3	1.8	2	2.9	0	0.0	1	2.2
2	2	1.2	1	1.5	1	1.9	0	0.0
3	16	9.6	8	11.8	3	5.7	5	11.1
4	18	10.8	7	10.3	6	11.3	5	11.1
5(중간)	50	30.1	21	30.9	16	30.2	13	28.9
6	14	8.4	7	10.3	3	5.7	4	8.9
7	32	19.3	7	10.3	12	22.6	13	28.9
8	16	9.6	7	10.3	7	13.2	2	4.4
9(매우 불만족)	15	9.0	8	11.8	5	9.4	2	4.4

<표 87>에 의하면, 응답자를 성별로 분류하면 남자의 경우는 14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2.8%였으며 여자는 27명으로 15.5%였다.

〈표 87〉 성별

	빈도	비율
남자	144	82.8
여자	27	15.5
미응답	3	1.7
합계	174	100.0

<표 88>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를 연령으로 분류를 하면 만 30세-39세가 87명으로 5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만 40-49세로 45명, 25.9%였으며 만 50세 이상은 21명, 12.1%, 그리고 만 30세 미만은 17명, 9.8%로 가장 적었다.

〈표 88〉 연령

	빈도	비율
만 30세 미만	17	9.8
만 30-39세	87	50.0
만 40-49세	45	25.9
만 50세 이상	21	12.1
미응답	4	2.3
합계	174	100.0

<표 89>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단속 업무 및 강제퇴거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3개월 이하가 90명, 51.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개월-6개월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명으로 13.2%, 7개월-9개월은 10명, 6.3%였다. 한편 1년 이상 이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5.7%였다.

〈표 89〉 업무담당기간

	빈도	비율
3개월 이하	90	51.7
4개월-6개월	23	13.2
7개월-9개월	11	6.3
10개월-12개월	10	5.7
13개월-15개월	2	1.1
16개월-18개월	3	1.7
19개월-21개월	5	2.9
미응답	30	17.2
합계	174	100.0



## Ⅵ. 붙임

1. 미등록이주자 단속 심층 면접지

2. 미등록이주자 단속 설문지

- 베트남어
- 영어
- 필리핀어
- 인도네시아어
- 러시아어
- 몽골어
- 우즈베크어
- 태국어
- 중국어
- 네팔어



## 1. 미등록이주자 단속 심층 면접지

### 2009년 심층 면접지

이번 조사에서는 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좀더 무거운 주제에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답자가 단속이나 보호소내의 생활에 별로 응답하고 싶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인터뷰 대상자의 국적, 나이, 성별 등은 마지막에 기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I. 단속 과정 중 폭언, 폭행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1. 단속된 장소와 시간은?
  
2. 단속한 사람이 누구인지(경찰, 출입국직원 등)?
  
2. 함께 단속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와 숫자는? (공장 동료, 가족 등)
  
3. 단속 방법과 과정은? (공장 근무 중에서, 집에서 식사 중, 취침중 등)

4. 단속을 당할 때 저항을 했는지?
5. 폭언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누가,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6. 폭행을 당했다면 그 내용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몇 차례 정도 때렸는지 구체적으로)
7.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 진정을 하거나 출입국 직원에게 항의를 했는지?
8. 보호소에 수감된 이후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거나 부상 부위에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지?
9. 폭행을 당했다면 부상의 정도는?
10. 치료를 받았다면 어떤 치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는지?  
(병원에 갔는지? 약만 받았는지 등)
11. 외부 치료를 받았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했는지?

1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13. 폭행을 당한 후 출입국관리직원으로부터 출국하라는 종용을 받은 적이 있는지?
1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아 본 적이 있는지?

- 난민 관련 -

15. 난민신청중에 단속된 경우 단속된 이유
16. 난민신청자인데 단속당한 경우 단속된 이유
17. 단속된 후에 난민 신청한 경우 구금으로 인한 난민신청 및 그 후의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18. 구금된 후 난민신청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 2. 미등록이주자 단속 설문지

### 2009년 외국인 보호소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는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호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외국인보호 정책을 개선시켜나가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사항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문 조사자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면 설문조사를 종료한 후 별도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응답 요령은 ‘\_’에 ✓를, ‘□’ 안에 숫자를, ‘( )’안에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전화) 02-2125-9875, 9656 팩스) 02-2125-9658





9. 당신이 미등록이 된 사유는?

-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 (2) 허가 기간이 남았으나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 (3) 사업장 변경 횟수를 초과하였다.
- (4) 구직 기간을(2개월) 초과하였다.
- (5) 고용해지 이후 구직 신청 기간(1개월)을 초과하였다.
- (6) 체류자격 외 노동활동을 하다가 단속 당하였다. (9-1번으로 가시오)
- (7) 한국인과 혼인하였다가 별거나 이혼으로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였다.
- (8) 기타( )

▶ 9-1.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1)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고 단속되었다.
- (2)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해서 단속 당했다.
- (3) 단기비자, 기타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일을 했다고 해서 단속 당했다.
- (4) 노동운동, 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서 단속당했다.
- (5) 기타( )

10. 난민 혹은 비호신청자인 경우만 체크해 주세요.

- (1) 난민신청이 기각된 경우 단속 당했다.
- (2) 난민 신청 중에 단속 당했다.
- (3) 단속된 이후 난민신청을 하였다.

## B. 단속 과정

11. 귀하는 언제 단속되었습니까?

200  년  월  일

12. 귀하가 단속된 시간은 언제입니까?

- (1) 09 : 00 ~ 18 : 00 (오전 9시~오후 6시)
- (2) 18 : 00 ~ 00 : 00 (오후 6시~자정)
- (3) 00 : 00 ~ 06 : 00 (자정~오전 6시)
- (4) 06 : 00 ~ 09 : 00 (오전 6시~오전 9시)



- ▶ 15-4. 관공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경찰서 등)에서 단속 당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단속되었습니까?
- \_\_ (1) 경찰이나 관공서(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에 피해신고를 하러 갔다가 단속되었다.
  - \_\_ (2) 증언, 목격자로 진술하다가 미등록 사실이 밝혀져 연행되었다.
  - \_\_ (3) 비자신청을 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연행되었다.
  - \_\_ (4) 누군가에게 신고 되어 연행되었다.
  - \_\_ (5) 기타( )

※ 다음은 귀하가 단속되었을 때 단속반원이 법을 지켰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16. 단속반원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단속반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반원의 신분증 제시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사항을 고르세요.
- \_\_ (1)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_\_ (2)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17번으로 가시오)

- ▶ 16-1. 단속반원이 신분증을 제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 \_\_ (1) 단속전에 보여주었다.      \_\_ (2) 단속과 동시에 보여주었다.
  - \_\_ (3) 단속후에 보여주었다.

17. 단속을 당할 당시 단속반원의 행동은 어떠했나요?
- \_\_ (1) 말로 비자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 \_\_ (2) 보자마자 물리적으로 제압을 하면서 비자제시를 요구하였다.
  - \_\_ (3) 기타( )

18. 귀하를 단속할 당시 단속반원이 긴급보호서 등 서류를 보여주었는가?
- \_\_ (1) 보여주었다(18-1, 18-2번으로 가시오)      \_\_ (2) 보여주지 않았다.(19번으로 가시오)

- ▶ 18-1. 긴급보호서등 서류에 대해 단속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가?
- \_\_ (1) 설명하였다.      \_\_ (2) 설명하지 않았다.

- ▶ 18-2. 귀하에게 단속반원이 서류를 보여준 시기는 언제인가요?
- \_\_ (1) 단속 전에 보여주었다.
  - \_\_ (2) 단속과 동시에 보여주었다.
  - \_\_ (3) 단속을 당한 후 차량 안에서 보여주었다.
  - \_\_ (4) 보호소에서 보여주었다.
  - \_\_ (5) 보여주지 않았다.

## C. 단속 후 이송 및 조사 과정

※ 단속당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9. 귀하가 단속차량 안에서 있었던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1) 1시간 이내
- (2) 1시간~2시간
- (3) 2시간~3시간
- (4) 3시간~4시간
- (5) 4시간~5시간
- (6) 5시간이상
- (7) 기타( )

▶ 19-1. 단속차량에 갇혀있으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다음 중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1) 수갑을 차고 있어서 힘들었다.
- (2)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팠다.
- (3)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랐다
- (4)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힘들었다.
- (5) 차안이 덥고 냄새가 나서 힘들었다.
- (6) 휴대폰 사용이 어려웠다.
- (7)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아예 들어주지 않았다.
- (8) 기타( )

▶ 19-2. 귀하가 단속차량 갇혔을 때, 단속된 다른 외국인은 몇 명이 더 탑승하고 있었습니까?

- (1) 없었다.(혼자 있었다.)
- (2) 1명~5명
- (3) 5명~10명
- (4) 10명 이상

20. 단속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 다음 중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1) 단속된 후 바로 출입국관리소로 왔다.
- (2) 승합차, 버스에 사람들이 더 채워질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며 단속해서 계속하





25. 단속차량 안에서 수갑을 착용했습니까?

- \_\_ (1)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  
 \_\_ (2) 처음에는 수갑을 착용했다가 도중에 풀어주었다.  
 \_\_ (3) 처음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도중에 수갑을 착용했다.  
 \_\_ (4) 착용하지 않았다.(26번으로 가시오)

▶ 25-1. 장비(수갑)를 사용 당하였다면 몇 시간 동안 장비를 착용하였습니까?

- \_\_ (1) 1시간 이내                      \_\_ (2) 1시간-2시간                      \_\_ (3) 2시간-3시간  
 \_\_ (4) 3-4 시간                      \_\_ (5) 4-5시간                      \_\_ (6) 5시간 이상

26. 귀하를 단속할시 단속반원의 성별은?

- \_\_ (1) 남성                      \_\_ (2) 여성                      \_\_ (3) 남성, 여성 모두

27. 귀하는 단속과정이나 단속 승합차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나요?

- \_\_ (1) 예                      \_\_ (2) 아니오(28번으로 가시오)

▶ 27-1.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에 대하여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_\_ (1) 성이 다른 출입국 단속반원들에 의해 연행되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_\_ (2) 비좁은 단속 차량 안에 장시간 동안 이성들과 밀착되어 갇혀 있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_\_ (3) 단속 승합차 안에 장시간 갇혀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다.  
 \_\_ (4) 차에서 내린 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묶여 끌려 갈 때 수치심을 느꼈다.  
 \_\_ (5) 단속반원이 성적인 농담을 해서 수치심을 느꼈다.  
 \_\_ (6) 단속반원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  
 \_\_ (7) 기타(                      )

28. 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 \_\_ (1) 강요받았으며 서명했다.                      \_\_ (2) 강요받았으나 거부했다.

29. 단속반원에게 변호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까?

- \_\_ (1) 예                      \_\_ (2) 아니오



- ▶ 33-1. 전세금, 임금체불, 소송진행, 산업재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_\_ (1)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받아들여졌다(33-2으로 가시오)  
\_\_ (2)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34번으로 가시오)  
\_\_ (3)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34번으로 가시오)
- ▶ 33-2. 도움을 요청한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_\_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_\_ (2) 조금 도움이 되었다.  
\_\_ (3) 그저 그렇다      \_\_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_\_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D. 보호소 이송 및 입소 과정

34.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몸 검사를 받았습니까?  
\_\_ (1) 옷을 입은 채    \_\_ (2) 속옷만 입은 채로    \_\_ (3) 알몸으로    \_\_ (4) 기타
35.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사진 촬영 등 요청한 적이 있는지?  
\_\_ (1) 예      \_\_ (2) 아니오(36번으로 가시오)
- ▶ 35-1. 신체검사를 요청한 적이 있으면 보호소에서 어떠한 방식의 증거를 남겨 놓았습니까?  
\_\_ (1) 사진 촬영      \_\_ (2) 신체검사 기록지  
\_\_ (3) 의사 진단서      \_\_ (4) 기타방법
36.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소로 이송하는 과정 중 수갑착用に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_\_ (1) 혼자 수갑을 차고 이동했다.  
\_\_ (2) 하나의 수갑으로 두명이 착용했다.  
\_\_ (3) 손 양쪽으로 서로 다른 사람과 수갑을 함께 차고 길게 늘어서서 이동했다.  
\_\_ (4) 수갑을 차지 않은 채 그냥 이송했다.



## Phiếu điều tra nơi giam giữ người nước ngoài 2009

베트남어

Xin kính chào Quý vị.

Nhằm mục tiêu luôn giữ vững và bảo vệ nhân quyền cơ bản của tất cả mọi cá nhân,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thông qua các cơ quan nhà nước đang nỗ lực không ngừng để bảo vệ quyền lợi không chỉ của người dân Hàn Quốc mà còn bảo vệ quyền lợi của tất cả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rên lãnh thổ Hàn Quốc.

Lần này, Ủy ban chúng tôi đã thực hiện chuyến viếng thăm điều tra nhằm tìm hiểu tình hình nhân quyền trong quá trình truy quét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chưa có đăng kí. Căn cứ vào kết quả này, chúng tôi dự định soạn thảo phương án đổi mới để luôn giữ vững và bảo vệ nhân quyền của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bảo hộ.

Những câu trả lời của quý vị do được vận dụng vào việc thống kê nên sẽ được đảm bảo giữ bí mật tuyệt đối. Mong quý vị đừng e dè mà hãy trả lời thành thật. Và nếu như Quý vị muốn trình bày thêm về tình hình phân biệt hoặc vi phạm nhân quyền một cách cụ thể hơn với người làm bảng điều tra thì chúng tôi sẽ sẵn lòng lắng nghe ý kiến của Quý vị riêng sau khi kết thúc cuộc điều tra.

Chân thành cảm ơn Quý vị đã bớt chút thời gian quý báu giúp chúng tôi hoàn thành phiếu điều tra này.

Tháng 7 năm 2009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Toà nhà Kum-sê-ki, Số 16, 1ga, U'I-Chi-lô Chung-ku, TP Seoul, (Hòm thư) 100-842

Cách thức trả lời: điền dấu '✓' vào chỗ '\_\_\_' (chỗ trống), điền số vào '□' (ô vuông), điền chữ vào '( )' (dấu ngoặc đơn). Đối với những câu trả lời khó Quý vị hãy viết suy nghĩ đầu tiên khi đọc xong câu hỏi

Nếu có những vấn đề thắc mắc liên qua tới bảng điều tra này, mong Quý vị liên hệ tới số điện thoại dưới đây: Khoa điều tra vi phạm,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ĐT: 02-2125-9875, 9656, Fax: 02-2125-9658

## A. Thông tin cá nhân

1. Bạn là người nước nào?

- |   |  |
|---|--|
| <input type="checkbox"/> (1) Băng la đét    | <input type="checkbox"/> (2) Trung Quốc  |
| <input type="checkbox"/> (3) Ấn Độ          | <input type="checkbox"/> (4) Indonesia   |
| <input type="checkbox"/> (5) I ran          | <input type="checkbox"/> (6) Ghana       |
| <input type="checkbox"/> (7) Nhật Bản       | <input type="checkbox"/> (8) Kazakhstan  |
| <input type="checkbox"/> (9) Kyrgyzstan     | <input type="checkbox"/> (10) Mông cổ    |
| <input type="checkbox"/> (11) Mianma        | <input type="checkbox"/> (12) Nepal      |
| <input type="checkbox"/> (13) Nigeria       | <input type="checkbox"/> (14) Pakistan   |
| <input type="checkbox"/> (15) Philipin      | <input type="checkbox"/> (16) Nga        |
| <input type="checkbox"/> (17) Srilanca      | <input type="checkbox"/> (18) Thái Lan   |
| <input type="checkbox"/> (19) Uzbekistan    | <input type="checkbox"/> (20) Việt Nam   |
| <input type="checkbox"/> (21) Cambodia      | <input type="checkbox"/> (22) Đông Timor |
| <input type="checkbox"/> (23) Nước khác ( ) |  |

2. Giới tính của bạn?

- |                                  |                                 |
|----------------------------------|---------------------------------|
| <input type="checkbox"/> (1) Nam | <input type="checkbox"/> (2) Nữ |
|----------------------------------|---------------------------------|

3. Độ tuổi của bạn?

- |   |   |
|---|---|
| <input type="checkbox"/> (1) Dưới 9 tuổi            | <input type="checkbox"/> (2) Từ 10 tuổi đến 18 tuổi |
| <input type="checkbox"/> (3) Từ 19 tuổi đến 30 tuổi | <input type="checkbox"/> (4) Từ 31 tuổi đến 40 tuổi |
| <input type="checkbox"/> (5) Từ 41 tuổi đến 50 tuổi | <input type="checkbox"/> (6) Trên 51 tuổi           |

4. Bạn đã cư trú ở Hàn Quốc bao lâu?

- |   |   |
|---|---|
| <input type="checkbox"/> (1) Dưới 6 tháng | <input type="checkbox"/> (2) Dưới 1 năm   |
| <input type="checkbox"/> (3) 1~2 năm      | <input type="checkbox"/> (4) 2~3 năm      |
| <input type="checkbox"/> (5) 3~4 năm      | <input type="checkbox"/> (6) 4~5 năm      |
| <input type="checkbox"/> (7) 5~6 năm      | <input type="checkbox"/> (8) 6~7 năm      |
| <input type="checkbox"/> (9) 7~8 năm      | <input type="checkbox"/> (10) 8~9 năm     |
| <input type="checkbox"/> (11) 9~10 năm    | <input type="checkbox"/> (12) Trên 10 năm |

5. Khi nhập cảnh Hàn Quốc, Visa của bạn thuộc loại nào?

- (1) C2, C3 visa ngắn hạn                       (2) D2 du học  
 (3) D3 Tu nghiệp sinh                       (4) F1 Thăm thân  
 (5) F2 Vợ (hoặc chồng) của người dân bản địa hoặc người có tư cách định cư lâu dài  
 (6) F4 Hàn kiều                       (7) E6 Hoạt động nghệ thuật  
 (8) E9 Lao động phổ thông                       (9) E10 Thuyền viên biển gần  
 (10) Các visa khác (                      )

6. Bạn hãy lựa chọn tất cả những việc bạn đã từng làm trước khi bị truy quét.

- (1) Công nhân công trường  
 (2) Công nhân xây dựng  
 (3) Đánh bắt cá hoặc làm trong doanh nghiệp thủy sản  
 (4) Người lao động ngành nông lâm, chăn nuôi  
 (5) Ngành dịch vụ - phụ bếp nhà hàng (quán ăn), dọn dẹp vệ sinh, bồi bàn  
 (6) Người giúp việc, y tá, hộ lý  
 (7) Lễ tân trong các ngành giải trí  
 (8) Du học sinh  
 (9) Người đang điều trị bệnh (tai nạn lao động, tai nạn giao thông, mắc bệnh)  
 (10) Người thất nghiệp  
 (11) Các ngành khác (                      )

7. Hiện tại bạn còn gia đình, người thân ở lại Hàn Quốc không?

- (1) Có (Xem câu số 7-1)                       (2) Không (Xem câu số 8)

▶ 7-1. Nếu còn gia đình người thân thì đó là ai? Bạn có thể lựa chọn tất cả nếu phù hợp.

- (1) Con cái chưa trưởng thành                       (2) Con cái đã trưởng thành  
 (3) Người bạn đời (vợ hoặc chồng)                       (4) Người bạn đời không phải người Hàn  
 (5) Anh chị em                       (6) Bố hoặc mẹ  
 (7) Không có                       (8) Những người khác (                      )





## B. Quá trình truy quét

11. Bạn bị truy quét khi nào?

200  năm  tháng  ngày

12. Thời gian bạn bị truy quét là vào thời điểm nào?

(1) 09 : 00 ~ 18 : 00 (từ 9 giờ sáng đến 6 giờ chiều)

(2) 18 : 00 ~ 00 : 00 (từ 6 giờ chiều đến nửa đêm)

(3) 00 : 00 ~ 06 : 00 (từ nửa đêm đến 6 giờ sáng)

(4) 06 : 00 ~ 09 : 00 (từ 6 giờ sáng đến 9 giờ)

13. Bạn bị ai truy quét?

(1) Cán bộ nhân viên củ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2) Cảnh sát

(3) Những người khác ( )

(4) Không biết

14. Thời điểm bạn bị truy quét trang phục của nhân viên truy quét trông thế nào?

(1) Mặc đồng phục

(2) Mặc áo gilê loại giành cho bắt giữ

(3) Mặc thường phục

(4) Không biết

15. Bạn bị truy quét ở nơi nào?

(1) Nhà, kí túc xá (nơi cư trú) (Xem mục 15-1)

(2) Nơi làm việc (cơ quan) (Xem mục 15-2)

(3) Trên đường, công viên, ngân hàng, bến tàu xe (Xem câu số 16)

(4) Nhà hàng, cửa hàng (Xem mục 15-3)

(5) Nơi cơ quan công sở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rung tâm hỗ trợ việc làm, Sở cảnh sát) (Xem mục 15-4)

(6) Các nơi khác ( ) (Xem câu 16)

▶ 15-1. Trường hợp bị truy quét ở nhà (nơi cư trú), bạn bị truy quét bằng cách nào?

(1) Nhân viên Cục xuất nhập cảnh hoặc cảnh sát giơ thẻ chứng minh và yêu cầu bạn mở cửa, bạn mở cửa và bị khám xét

(2) Ai đó không trình thẻ chứng minh mà yêu cầu mở cửa, sau khi bạn mở cửa nhân viên truy quét đột nhiên vào thẳng nhà và khám xét

- \_\_\_ (3) Nhân viên truy quét tự động vào nhà bằng lối cửa ra vào hoặc cửa sổ khám xét bạt
- \_\_\_ (4) Bạn bị truy quét ngay trước cửa nhà bởi những nhân viên truy quét ngầm
- \_\_\_ (5) Các phương thức khác ( )

▶ 15-2. Trường hợp bị truy quét ở nơi làm việc (cơ quan, nhà máy), bạn bị truy quét bằng cách nào?

- \_\_\_ (1) Nhân viên truy quét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chủ lao động (giám đốc) ra vào nơi làm việc để khám xét
- \_\_\_ (2) Nhân viên truy quét không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chủ lao động (giám đốc), tự ý ra vào nơi làm việc khám xét
- \_\_\_ (3) Nhân viên truy quét phá cửa ra vào hoặc cửa sổ, tự ý vào nơi làm việc khám xét
- \_\_\_ (4) Bạn đến nhà máy (nơi làm việc) để đòi số lương bị thiếu thì chủ lao động (giám đốc) đã báo cảnh sát và bạn bị bắt giải đi.
- \_\_\_ (5) Bạn bị nhân viên truy quét khám xét ngay trước cửa nhà máy
- \_\_\_ (6) Các cách khác ( )

▶ 15-3. Trường hợp bị truy quét tại các điểm như nhà hàng, cửa hiệu thì chủ nhân có cho phép nhân viên truy quét được ra vào tự do hay không?

- \_\_\_ (1) Có cho phép
- \_\_\_ (2) Không cho phép
- \_\_\_ (3) Không xin phép mà cứ tự động vào
- \_\_\_ (4) Không biết

▶ 15-4. Trường hợp bị truy quét ở nơi cơ quan công sở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rung tâm hỗ trợ việc làm, Sở cảnh sát), bạn bị truy quét bằng cách nào?

- \_\_\_ (1) Bị khám xét khi đi khai báo bị hại tại sở cảnh sát hoặc cơ quan công sở (Bộ lao động, Trung tâm hỗ trợ việc làm v.v...).
- \_\_\_ (2) Đang tường trình với nhân chứng và lời khai giải trình sự thật về việc không đăng kí thì bị bắt giải đi
- \_\_\_ (3) Bị bắt giải đi khi đế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để xin visa
- \_\_\_ (4) Bị bắt giải đi do bị người khác tố cáo
- \_\_\_ (5) Các lý do khác ( )

※ Sau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hỏi nhân viên điều tra có giữ đúng luật hay không khi bạn bị truy quét.





\_\_\_ (2) Liên tục bị nhốt trên xe sau khi bị truy quét và phải liên tục đi lòng vòng cho đến khi xe áp tải được lên đầy người.

\_\_\_ (3) Họ yêu cầu bạn chỉ điểm nơi có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đăng kí khác ẩn náu và cùng đi đến địa điểm đó

21. Khi bạn bị bắt, nhân viên truy quét có hành hung (tấn công) bạn không?

\_\_\_ (1) Có                      \_\_\_ (2) Không (Xem câu số 22)

▶ 21-1. Bạn bị tấn công bằng cách nào? Hãy đánh dấu ✓ vào những câu trả lời thích hợp.

\_\_\_ (1) Bị đánh bằng tay và chân                      \_\_\_ (2) Bị đánh bằng công cụ

\_\_\_ (3) Bị mấy người vây quanh và đánh đập

22. Bạn có bị thương trong quá trình bị truy quét hay không?

\_\_\_ (1) Có                      \_\_\_ (2) Không (Xem câu số 23)

▶ 22-1. Khi bị thương thì bạn có nhận được sự chăm sóc nào từ những nhân viên truy quét hay không?

\_\_\_ (1) Khi bị truy quét thì ngay lập tức được cấp cứu

\_\_\_ (2) Về đến cục xuất nhập cảnh (nơi giam cầm) bạn mới được điều trị

\_\_\_ (3) Không được điều trị

\_\_\_ (4) Không bị thương nặng đến độ phải cấp cứu hay điều trị

23. Khi bạn bị bắt, nhân viên truy quét có chửi mắng, nhục mạ, hay có những lời phân biệt chủng tộc hay không?

\_\_\_ (1) Có                      \_\_\_ (2) Không

24. Nhân viên truy quét đã sử dụng những công cụ gì khi bắt bạn. Hãy chọn tất cả những cái thích hợp trong số những câu sau.

\_\_\_ (1) Còng tay                      \_\_\_ (2) Dây trói                      \_\_\_ (3) Túi cảnh sát

\_\_\_ (4) Súng hơi ga                      \_\_\_ (5) Máy tấn công điện tử                      \_\_\_ (6) Súng lưới

\_\_\_ (7) Dụng cụ khác ( )                      \_\_\_ (8) Không sử dụng bất cứ thứ gì (Xem câu số 25)

▶ 24-1. Bạn có bị thương do nhân viên truy quét dùng còng tay và công cụ bắt giữ?

(1) Có                      (2) Không



29. Nhân viên truy quét có cho bạn biết sự thật là bạn có quyền tự biện hộ cho mình hoặc nhận được sự giúp đỡ của những người khác như luật sư chẳng hạn?

\_\_\_ (1) Có                      \_\_\_ (2) Không hề

▶ Sau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liên quan tới quá trình bạn bị điều tra và trả lời những câu hỏi khi ngồi đối diện với nhân viên củ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rước khi bị đưa vào nơi tạm giam sau khi bị bắt về nơi giam giữ.

30. Bạn đã hiểu được bao nhiêu phần trăm trong quá trình điều tra tại phòng giam ngay sau khi bị bắt về?

- \_\_\_ (1) Có thể giao tiếp bằng tiếng Hàn nên không có vấn đề gì  
\_\_\_ (2) Không có vấn đề gì trong giao tiếp do có sự giúp đỡ của thông dịch viên  
\_\_\_ (3) Dù có thông dịch viên nhưng vẫn nảy sinh nhiều vấn đề về giao tiếp  
\_\_\_ (4) Gần như không thể giao tiếp được do không có thông dịch viên

▶ 30-1. Cuộc điều tra được tiến hành bằng ngôn ngữ nào?

\_\_\_ (1) Tiếng Hàn    \_\_\_ (2) Tiếng Anh    \_\_\_ (3) Tiếng mẹ đẻ    \_\_\_ (4) Các tiếng khác (       )

31. Có thông dịch viên trong quá trình điều tra xét hỏi không?

\_\_\_ (1) Có                      \_\_\_ (2) Không (Xem câu số 32)

▶ 31-1. Nếu có sự trợ giúp của thông dịch viên thì thông dịch viên là người thế nào?

\_\_\_ (1) Là nhân viê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_\_\_ (2) Thông dịch từ ngoài vào  
\_\_\_ (3) Là người nước ngoài ở trong nơi giam giữ

32. Tổng số thời gian bạn ở nơi giam giữ là bao lâu?

- \_\_\_ (1) Dưới 1 tuần                      \_\_\_ (2) Dưới 2 tuần  
\_\_\_ (3) Dưới 3 tuần                      \_\_\_ (4) Dưới 4 tuần  
\_\_\_ (5) 1~2 tháng                      \_\_\_ (6) 2~3tháng  
\_\_\_ (7) 3~6 tháng                      \_\_\_ (8) 6 tháng ~ 1năm  
\_\_\_ (9) Trên 1năm

\* Những người có câu trả lời (1), (2), (3), (4) xin hãy xem tiếp câu số 33.

33. Nếu bạn bị bắt giữ trên 1 tháng thì đó là những lý do nào? Hãy lựa chọn tất cả nếu thích hợp.

\_\_\_ (1) Không có vé máy bay

- \_\_\_ (2) Chưa giải quyết được vấn đề tiền bạc như tiền thuế, tiền lương (xem câu số 33-1)
- \_\_\_ (3) Do đang tiến hành tố tụng dân-hình sự, đệ đơn trình bày, kháng cáo (xem câu số 33-1)
- \_\_\_ (4) Do đang đăng ký xin tị nạn
- \_\_\_ (5) Do chưa nhận được đồ dùng cá nhân như túi xách (xem câu số 33-1)
- \_\_\_ (6) Do phải chờ nhận bồi thường và điều trị tai nạn lao động (xem câu số 33-1)
- \_\_\_ (7) Do có vấn đề không thể trở về quê hương

▶33-1 Bạn có yêu cầu nhân viê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giúp đỡ khi bị vướng mắc như  
khó khăn như tiền thuế, tiền lương, tiến hành kiện tụng hay tai nạn lao động không?

- \_\_\_ (1) Có yêu cầu và được đồng ý giúp đỡ (Xem câu số 33-2)
- \_\_\_ (2) Có yêu cầu nhưng bị từ chối (Xem câu số 34)
- \_\_\_ (3) Chưa từng yêu cầu giúp đỡ (Xem câu số 34)

▶33-2. Bạn có hài lòng với kết quả yêu cầu giúp đỡ không?

- \_\_\_ (1) Giúp ích được rất nhiều                      \_\_\_ (2) Giúp ích được đôi chút
- \_\_\_ (3) Cũng bình thường                              \_\_\_ (4) Chẳng giúp gì được nhiều
- \_\_\_ (5) Hoàn toàn không giúp ích được gì

## D. Quá trình dẫn giải về nơi giam giữ và bị nhốt

34. Bạn bị khám người bằng cách nào khi về nhà giam?

- \_\_\_ (1) Mặc nguyên quần áo                      \_\_\_ (2) Chỉ mặc đồ lót
- \_\_\_ (3) Để trần cơ thể                              \_\_\_ (4) Các cách khác (                      )

35. Bạn có từng yêu cầu chụp ảnh để làm tư liệu chứng cứ về những vết thương trên cơ thể  
trong quá trình bị khám người không?

- \_\_\_ (1) Có    \_\_\_ (2) Không (Xem câu số 36)

▶35-1 Nếu từng yêu cầu khám người, có để lại chứng cứ nào ở phòng giam không?

- \_\_\_ (1) Chụp ảnh                                      \_\_\_ (2) Văn bản khám người
- \_\_\_ (3) Giấy chuẩn đoán của bác sỹ                      \_\_\_ (4) Các phương pháp khác



36. Đây là tình huống về việc bị còng tay trong quá trình bị dẫn giải từ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ề nơi giam giữ. Mong bạn hãy lựa chọn tất cả những câu trả lời thích hợp với tình huống trên.

- (1) Bị còng tay dẫn đi  
 (2) Hai người bị khoá bằng 1 còng tay  
 (3) Cả hai tay đều bị còng với người khác và bị kéo dẫn đi  
 (4) Bị dẫn giải đi mà không bị còng tay

37. Ngoài những nơi như nhà giam, bệnh viện, viện kiểm soát, việc bị còng tay của bạn có bị lộ ra trước mặt nhiều người trong quá trình bị dẫn giải không?

- (1) Có  (2) Không

### E. Vấn đề liên quan tới đơn trình bày

38. Bạn có từng được nghe nhân viên cục xuất nhập cảnh giải thích về những quyền lợi mà bạn có thể nhận được kể từ khi bạn bị giam giữ trong nhà giam người nước ngoài hay không? Bạn 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những câu phù hợp.

- (1) Quyền được gặp nói chuyện với gia đình người thân  
 (2) Quyền được giúp đỡ và gặp gỡ với lãnh sự nước bạn hoặc luật sư  
 (3) Quyền được đăng ký kháng cáo về việc bị giam giữ  
 (4) Quyền được gửi đệ trình lên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về việc bị xâm hại hay vi phạm nhân quyền trong nhà giam người nước ngoài.  
 (5) Quyền được gọi điện hay gửi thư ra ngoài.

39. Bạn có biết mình được quyền kháng cáo về việc bị giam giữ và cưỡng chế trục xuất hay không?

- (1) Có  (2) Không

40. Bạn có biết mình được quyền đệ đơn lên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hay không?

- (1) Có  (2) Không

**- Xin chân thành cảm ơn -**

## 2009 Survey on Immigration Processing

Greetings and Salutation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rives to maintain the basic rights of all people and, 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to promote this goal, the Commission works not only to protect the rights of Korean citizens, but of all those who find themselves in Korean territory.

At the moment, the Commission is performing a survey of unregistered aliens who are currently being processed at immigration processing facilities to understand the state of their rights. From these findings we plan to create and implement measures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foreigners. That is why your responses to this questionnaire are so important to the improvement of immigration processing policy.

As the responses you indicate in this questionnaire will be collected statistically, they wi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That is why we ask that you answer honestly and without worry. Also, if you have further remarks to make in regard to infringements of your rights, or in regard to discrimination you have experienced, please explain these to the surveyor and, after completing the survey, these remarks will be heard separately.

Thank you for contributing your precious time to this cause.

July, 200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humanrights.go.kr>

100-842 Seoul, Jung-gu, Euljiro-1ga 16 Keumsai Building

When responding, please mark '✓' where you see '\_\_\_', numbers where you see '□' and letters where you see '( )'. For questions you find difficult to answer, please select the first response that comes to mind.

If you should have questions regarding this survey please contact the following:  
The NHRCK Infringements Survey Division: Ph) 02-2125-9875, 9658 Fx) 02-2125-9658

## A. Personal Information

1. What is your nationality?

- |  |   |
|--|---|
| <input type="checkbox"/> (1) Bangladeshi                   | <input type="checkbox"/> (2) Chinese        |
| <input type="checkbox"/> (3) Indian                        | <input type="checkbox"/> (4) Indonesian     |
| <input type="checkbox"/> (5) Iranian                       | <input type="checkbox"/> (6) Ghanaian       |
| <input type="checkbox"/> (7) Japanese                      | <input type="checkbox"/> (8) Kazakhstani    |
| <input type="checkbox"/> (9) Kyrgyzstani                   | <input type="checkbox"/> (10) Mongolian     |
| <input type="checkbox"/> (11) Burmese                      | <input type="checkbox"/> (12) Nepalese      |
| <input type="checkbox"/> (13) Nigerian                     | <input type="checkbox"/> (14) Pakistani     |
| <input type="checkbox"/> (15) Filipino                     | <input type="checkbox"/> (16) Russian       |
| <input type="checkbox"/> (17) Sri Lankan                   | <input type="checkbox"/> (18) Thai          |
| <input type="checkbox"/> (19) Uzbekistani                  | <input type="checkbox"/> (20) Vietnamese    |
| <input type="checkbox"/> (21) Cambodian                    | <input type="checkbox"/> (22) East Timorese |
| <input type="checkbox"/> (23) Other (                    ) |   |

2. What is your sex?

- |                                   |                                     |
|-----------------------------------|-------------------------------------|
| <input type="checkbox"/> (1) Male | <input type="checkbox"/> (2) Female |
|-----------------------------------|-------------------------------------|

3. How old are you?

- |  |  |
|--|--|
| <input type="checkbox"/> (1) Younger than 9    | <input type="checkbox"/> (2) Between 10 and 18 |
| <input type="checkbox"/> (3) Between 19 and 30 | <input type="checkbox"/> (4) Between 31 and 40 |
| <input type="checkbox"/> (5) Between 41 and 50 | <input type="checkbox"/> (6) 51 or older       |

4.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in total?

- |   |  |
|---|--|
| <input type="checkbox"/> (1) Less than 6 months | <input type="checkbox"/> (2) Less than one year  |
| <input type="checkbox"/> (3) 1-2 years          | <input type="checkbox"/> (4) 2-3 years           |
| <input type="checkbox"/> (5) 3-4 years          | <input type="checkbox"/> (6) 4-5 years           |
| <input type="checkbox"/> (7) 5-6 years          | <input type="checkbox"/> (8) 6-7 years           |
| <input type="checkbox"/> (9) 7-8 years          | <input type="checkbox"/> (10) 8-9 years          |
| <input type="checkbox"/> (11) 9-10 years        | <input type="checkbox"/> (12) More than 10 years |





11. When were you first detained?

200  m  dd

12. At what time were you arrested?

- (1) Between 9:00 am and 6:00 pm  
 (2) Between 6:00 pm and  
 (3) Between midnight and 6:00 am  
 (4) Between 6:00 am and 9:00 am

13. By whom were you arrested?

- (1) An immigration official                       (2) A police officer  
 (3) Other (                      )                       (4) I do not know.

14. What kind of attire was the person who arrested you wearing?

- (1) A uniform     (2) An official vest     (3) Plain clothes     (4) I do not recall.

15. Where were you arrested?

- (1) At home (Proceed to question 15-1)  
 (2) At work (Proceed to question 15-2)  
 (3) In a public place (street, park, bank, terminal, etc.) (Proceed to question 16)  
 (4) At a restaurant or store (Proceed to question 15-3)  
 (5) At a government office (immigration office, employment office, police station, etc.)  
 (Proceed to question 15-4)  
 (6) Other (                      ) (Proceed to question 16)

▶ 15-1. What were the circumstances of your arrest at home?

- (1) An immigration official or police officer showed his/her credentials, asked that I open the door, and as soon as I opened it, he/she arrested me.  
 (2) Someone asked that I open the door without showing credentials, and as I opened the door he/she just came in and arrested me.  
 (3) The officer came into the house through the door or window without permission.







\_\_ (6) More than 5 hours

\_\_ (7) Other ( )

- ▶ 19-1 As you were being held in the vehicle, what were the difficulties you experienced? Please mark all that apply.

\_\_ (1) It was difficult because I was wearing handcuffs.

\_\_ (2) I was hungry.

\_\_ (3) I was thirsty.

\_\_ (4) I had to use the restroom but could not.

\_\_ (5) It was hot and smelly inside the vehicle.

\_\_ (6) I could not make any calls.

\_\_ (7) I asked for help and no one listened.

\_\_ (8) Other ( )

- ▶ 19-2. As you were being held in the vehicle, how many other foreigners were being held at the same time?

\_\_ (1) None

\_\_ (2) 1-5 people

\_\_ (3) 5-10 people

\_\_ (4) More than 10 people

20. Please describe the situation after your arrest. Mark all that apply.

\_\_ (1) After being arrested I was taken directly to an immigration office.

\_\_ (2) After being arrested, we were driven around to find others to arrest to fill the vehicle.

\_\_ (3) After being arrested we were asked where other undocumented immigrants were and then went to those places.

21. Were you physically beaten by the officer at the time of your arrest?

\_\_ (1) Yes

\_\_ (2) No (Proceed to question 22)

- ▶ 21-1. In what way were you beaten? Please mark all that apply.

\_\_ (1) I was hit and kicked

\_\_ (2) I was beaten with an object.

\_\_ (3) I was beaten by multiple individuals.

22. Did you incur any injuries during your arrest?



27. During the course of your arrest or in the vehicle, did you experience any sense of discomfort in regard to gender?

(1) Yes  (2) No (Proceed to question 28)

▶ 27-1. Please mark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that apply in regard to the way in which you experienced such discomfort.

(1) As an officer of the opposite gender was involved in my arrest, I felt uncomfortable.

(2) As I was kept in the vehicle for a long time with members of the opposite gender I felt uncomfortable.

(3) As we were kept in the vehicle for a long time, we were unable to go to the restroom.

(4) After getting out of the vehicle people watched as I was taken in while cuffed to others, and I felt uncomfortable.

(5) The officers made sexual jokes and I felt uncomfortable.

(6) As I came into physical contact with officers I felt uncomfortable.

(7) Other ( )

28. Were you ever coerced into signing documents the nature of which you did not understand?

(1) I was coerced into signing them.  (2) They tried to coerce me but I did not sign.

29. Did the officer inform you that you have a right to receive legal counsel or other aid?

(1) Yes  (2) No

※ The following questions are in regard to the time after you were arrested but before you arrived at the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when you were being questioned by the immigration official.

30. After you arrest and during processing, how well did communication work?

(1) We spoke Korean with no problems.

(2) We spoke using an interpreter without problem.

(3) There was an interpreter, but we still had many problems communicating.

(4) There was no interpreter, making communication nearly impossible.

▶ 30-1. In what language did your questioning take place?  
 \_\_ (1) Korean \_\_ (2) English \_\_ (3) In my language \_\_ (4) Other  
 ( )

31. Was there an interpreter present during questioning?  
 \_\_ (1) Yes \_\_ (2) No (Proceed to question 32)

▶ 31-1. Who served as your interpreter?  
 \_\_ (1) An immigration official \_\_ (2) An outside interpreter  
 \_\_ (3) Another foreigner at the processing center

32. How long have you been/were you in the processing center in total?  
 \_\_ (1) Less than 1 week \_\_ (2) Less than 2 weeks  
 \_\_ (3) Less than 3 weeks \_\_ (4) Less than 4 weeks  
 \_\_ (5) 1-2 months \_\_ (6) 2-3 months  
 \_\_ (7) 3-6 months \_\_ (8) Between 6 months and 1 year  
 \_\_ (9) More than 1 year

\* If you checked (1), (2), (3) or (4) please proceed to question 33.

33. If you were in the processing facility for longer than one month, please check all reasons that apply.

\_\_ (1) I did not have a plane ticket.  
 \_\_ (2) I had a problem regarding *jeonsae*, unpaid wages, or other valuable goods.  
 (Proceed to question 33-1)  
 \_\_ (3) I was in the process of appealing, making a formal objection or a civil or criminal case. (Proceed to question 33-1)  
 \_\_ (4) I was applying for asylum.  
 \_\_ (5) I was unable to retrieve a bag or other personal objects. (Proceed to question 33-1)  
 \_\_ (6) I was receiving treatment or compensation for an on-the-job accident. (Proceed to question 33-1)  
 \_\_ (7) Other circumstances prevented me from returning to my country.

▶ 33-1 If you were experiencing problems regarding *jeonsae*, unpaid wages, a lawsuit or on-the-job accident, did you request help from immigration officials?

- (1) I requested help and it was provided. (Proceed to question 33-2)
- (2) I request help but was refused. (Proceed to question 34)
- (3) I did not request help. (Proceed to question 34)

▶ 33-2. When you requested help, were you satisfied with the outcome?

- (1) Yes, I received much help.                       (2) I received some help.
- (3) I did not receive much help.                       (4) I did not receive much help.
- (5) I received no help.

#### D. Transport to the Processing Facility and Entry

34. When you entered the processing facility, what kind of physical examination did you receive?

- (1) Clothed     (2) Undergarments only     (3) Unclothed     (4) Other

35. As you were receiving your medical exam, did you request that photos or other documentary evidence be taken in order to keep evidence of any injuries?

- (1) Yes     (2) No (Proceed to question 36)

▶ 35-1 If you request a physical exam, how was evidence recorded?

- (1) Photographically                       (2) In a report
- (3) Medical report                       (4) Other

36. The following regards the use of handcuffs as you were being transported to the immigration office. Please mark all that apply.

- (1) I was handcuffed to myself and transported.
- (2) I was handcuffed to another person.
- (3) Both hands were handcuffed to other people as we were transported.
- (4) I was not handcuffed as I was transported.

37. On your way to the immigration processing facility, hospital, court or other location, were you ever released without handcuffs in front of other people?

\_\_ (1) Yes

\_\_ (2) No

### E. In Regard to Appeals

38. When you first entered the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did an immigration official ever explain to you your rights? Please check all that apply.

\_\_ (1) The right to meet with friends or family.

\_\_ (2) The right to meet with an attorney or with an advisor from your own country.

\_\_ (3) The right to contest the facts surrounding your detainment.

\_\_ (4) The right to take up any issues regarding infringements to your rights in the foreigner processing facility with the NHRCK.

\_\_ (5) The right to write letters and make calls to those outside the facility.

39. Did you know you have the right to contest your detention or impending deportation?

\_\_ (1) Yes

\_\_ (2) No

40. Did you know you have a right to appeal to the NHRCK?

\_\_ (1) Yes

\_\_ (2) No

- Thank you for your time. -

2009 Kwestyonaryo para sa Pagpoproseso ng mga Dayuhan sa migrasyon

필리핀어

Ang aming pagbati!

A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y itinatag bilang nasyonal na institusyon sa Republika ng Korea upang pangalagaan ang mga pundamental na karapatang pantao ng bawat indibidwal at isulong ang pangangalaga sa karapatang pantao hindi lamang sa mga mamamayang sakop ng teritoryo subalit gayundin ang mga dayuhang nagtatrabaho sa bansa.

Ang pagsasagawa sa kasalukuyang survey ay upang labis na maunawaan ng komite ang karapatang pantao sa sitwasyon ng pagproseso sa regulasyon ng mga hindi dokumentadong dayuhan. At base sa magiging resulta nito ay inaasahang maipapatupad ang mga panukalang magsusulong sa pangangalaga ng karapatang pantao ng mga dayuhan. Samakatuwid, ang mga nilalaman ng inyong mga kasagutan ay napakahalagang materyal para sa pagpapaganda sa pandayuhang polisiya. Sinisigurong magiging lihim ang lahat dahil sa istatistikal na pagpoproseso ng inyong mga sagot. Huwag mag-aalala sa pagsagot ng tapat sa mga katanungan.

Hulyo 200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Geumsegi Building, No. 16 Euljiro 1-ga Jung-gu, Seoul (zipcode:100-842)

Ilagay ang hinihiling na marka sa mga sagot ✓ ‘\_’, numero ‘□’, o letra ‘( )’. Lagyan ng marka ang unang naisip na sagot sa mga katanungan,

Para sa mga katanungang kaugnay sa survey na ito, maaring makipag-ugnayan sa mga sumusunod na kontak.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vestigation Division on Violation Telopono) 02-2125-9875, 9656 Fax) 02-2125-9658

## A. Personal na Impormasyon

1. Ano ang bansang pinanggalingan?

- |   |   |
|---|---|
| <input type="checkbox"/> (1) Bangladesh     | <input type="checkbox"/> (2) Chinese          |
| <input type="checkbox"/> (3) India          | <input type="checkbox"/> (4) Indonesia        |
| <input type="checkbox"/> (5) Iran           | <input type="checkbox"/> (6) Ghana            |
| <input type="checkbox"/> (7) Japan          | <input type="checkbox"/> (8) Kazakhstan       |
| <input type="checkbox"/> (9) Kyrgyzstan     | <input type="checkbox"/> (10) Mongolia        |
| <input type="checkbox"/> (11) Myanmar       | <input type="checkbox"/> (12) Nepal           |
| <input type="checkbox"/> (13) Nigeria       | <input type="checkbox"/> (14) Pakistan        |
| <input type="checkbox"/> (15) Pilipinas     | <input type="checkbox"/> (16) Russia          |
| <input type="checkbox"/> (17) Sri Lanka     | <input type="checkbox"/> (18) Thailand        |
| <input type="checkbox"/> (19) Uzbekistan    | <input type="checkbox"/> (20) Vietnam         |
| <input type="checkbox"/> (21) Cambodia      | <input type="checkbox"/> (22) Silangang Timor |
| <input type="checkbox"/> (23) at iba pa ( ) |   |

2. Ano ang iyong kasarian?

- |                                     |                                    |
|-------------------------------------|------------------------------------|
| <input type="checkbox"/> (1) Lalaki | <input type="checkbox"/> (2) Babae |
|-------------------------------------|------------------------------------|

3. Ilang taon ka na?

- |   |  |
|---|--|
| <input type="checkbox"/> (1) 9 edad pababa    | <input type="checkbox"/> (2) 10 eda~18 edad  |
| <input type="checkbox"/> (3) 19 edad 30 edad  | <input type="checkbox"/> (4) 31 edad~40 edad |
| <input type="checkbox"/> (5) 41 edad ~50 edad | <input type="checkbox"/> (6) 51 edad pataas  |

4. Hanggang kailan ang pananatili sa Korea?

- |  |  |
|--|--|
| <input type="checkbox"/> (1) 6 na buwan pababa | <input type="checkbox"/> (2) 1 taon pababa   |
| <input type="checkbox"/> (3) 1~2 taon          | <input type="checkbox"/> (4) 2~3 taon        |
| <input type="checkbox"/> (5) 3~4 taon          | <input type="checkbox"/> (6) 4~5 taon        |
| <input type="checkbox"/> (7) 5~6 taon          | <input type="checkbox"/> (8) 6~7 taon        |
| <input type="checkbox"/> (9) 7~8 taon          | <input type="checkbox"/> (10) 8~9 taon       |
| <input type="checkbox"/> (11) 9~10 taon        | <input type="checkbox"/> (12) 10 taon pataas |





8. Sa panahong nagtatrabaho ka sa Korea, ano ang naranasang problema? Piliin ang sagot sa mga sumusunod.

- |   |   |
|---|---|
| <input type="checkbox"/> (1). Pagka-delay ng sahod    | <input type="checkbox"/> (2). Berbal na pang-aabuso       |
| <input type="checkbox"/> (3). Pandaraya               | <input type="checkbox"/> (4). Pang-industriyang aksidente |
| <input type="checkbox"/> (5). Sekswal na pang-aabuso  | <input type="checkbox"/> (6). Prostitusyon                |
| <input type="checkbox"/> (7). Domestikong pang-aabuso | <input type="checkbox"/> (8). Karahasan                   |
| <input type="checkbox"/> (9). Wala                    | <input type="checkbox"/> (10). at iba pa                  |

9. Ano ang dahilan ng pagiging hindi rehistrado?

- (1). Natapos ang panahon ng pananatili.
- (2). Iniwan ang negosyo sa panahong may natitirang permiso sa pagsasagawa nito.
- (3). Lumagpas sa nakatakandang bilang ng pagpapalit sa kumpanya.
- (4). Lumagpas sa (2 buwan) panahon ng paghahanap ng trabaho.
- (5). Makatwirang terminasyon ng empleo matapos ang panahon ng aplikasyon sa trabaho (1 buwan).
- (6). Ang labor na aktibidad ay hindi naayon sa kwalipikasyon ng pananatili ay napapailalim sa crackdown (maglungo sa numero 9-1).
- (7). Hindi maaaring i-extend ang panahon ng pananatili kapag nakipag-diborsyo sa asawang Koreano.
- (8). at iba pa ( )

▶ 9-1. Anong ibang mga aktibidad ang nais gawin liban sa kwalipikasyon ng pananatili?

- (1). Ang paghuhuli sa pagtatrabaho sa ibang kumpanya maliban sa kumpanya kung saan naka-rehistro sa Employment Stabilization Center.
- (2). Ang paghuli sa mga nagtatrabahong may visa bilang estudyante na walang permiso sa pagtatrabaho.
- (3). Ang paghuli sa mga may Short-term visa, at iba pang visitation visa na nagtatrabaho.
- (4). Ang paghuli sa mga nagsagawa ng labor movement at pampulitikang aktibidad.

\_\_ (5). at iba pa( )

10. Lagyan ng check ang kaso kung saan ang isang refugee ay maari mag-aplay ng proteksyon.

- \_\_ (1). Na-deny ang aplikasyon para sa refugee dahil sa pagkahuli.
- \_\_ (2). Nag-aplay para sa pagiging refugee sa panahon ng pagkahuli.
- \_\_ (3). Nag-aplay para sa pagiging refugee matapos mahuli.

## B. Proseso ng Regulasyon

11. Kailan ka nahuli?

200  Ta  bu  ara  
on  wa  w  
n

12. Anong oras ka nahuli?

- \_\_ (1). 09 : 00 ~ 18 : 00 (9 umaga ~ 6 hapon)
- \_\_ (2). 18 : 00 ~ 00 : 00 (6 hapon ~ hatinggabi)
- \_\_ (3). 00 : 00 ~ 06 : 00 (hatinggabi ~ 6 umaga)
- \_\_ (4). 06 : 00 ~ 09 : 00 (6 umaga ~ 9 umaga)

13. Sino ang nagsagawa ng crackdown?

- \_\_ (1). Opisyales ng Imigrasyon
- \_\_ (2). Pulisya
- \_\_ (3). Iba( )
- \_\_ (4). Hindi ko alam.

14. Ano ang kasuotan ng mga grupong nagsagawa ng crackdown?

- \_\_ (1). Nakasuot ng pormal na kasuotan
- \_\_ (2). Nakasuot ng crackdown vest
- \_\_ (3). Nakasuot ng pangkaraniwang kasuotan
- \_\_ (4). Hindi ko alam

15. Saan ka nahuli?















\_\_ (1) Koreano \_\_ (2) English \_\_ (3) Inang wika \_\_ (4) at iba pa( )

31. Nagkaroon ka ba ng interpreter noong isinagawa ang proseso ng imbestigasyon?

\_\_ (1) Oo \_\_ (2) Hindi (magtungo sa numero 32)

▶ 31-1. Kung tumanggap ng tulong mula sa interpreter, sino ang interpreter?

\_\_ (1) Opisyal ng Immigration management \_\_ (2) interpreter mula sa labas

\_\_ (3) mula sa mga dayuhan sa loob ng shelter

32. Gaano katagal ang inilagi sa shelter?

\_\_ (1) sa loob ng isang linggo \_\_ (2) sa loob ng 2 linggo

\_\_ (3) sa loob ng 3 linggo \_\_ (4) sa loob ng 4 na linggo

\_\_ (5) 1~2 buwan \_\_ (6) 2~3 buwan

\_\_ (7) 3~6 buwan \_\_ (8) 6 buwan~1 taon

\_\_ (9) 1 taon pataas

\* Para sa (1), (2), (3), (4) respondent ay magtungo sa numero 33.

33. Ano ang dahilan ng paglagi sa shelter ng isang buwan pataas, piliin ang sagot sa mga sumusunod?

\_\_ (1) walang tiket

\_\_ (2) Hindi pa naayos ang mga suliranin sa pera at iba tulad ng deposito sa nirentahang bahay at hindi nabayaranang sahod.

\_\_ (3) Dahil sa pagpoproseso ng mga ipinilang petisyon, sibil at kriminal na litigasyon (magtungo sa 33-1).

\_\_ (4) nag-aaplay para sa refugee

\_\_ (5) dahil hindi ko pa nakukuha ang bag ko na naglalaman ng mga personal na bagay (magtungo sa 33-1)

\_\_ (6) Pagtanggap ng kompensasyon o nagpapagaling dahil sa pang-industriyang aksidente. (magtungo sa 33-1)

\_\_ (7) hindi maaring bumalik sa bansa dahil sa ilang sirkumstansya

▶ 33-1. Nakatanggap ka ba ng tulong mula sa mga opisyaes sa tanggapan ng imigrasyon sa pag-aayos ng mga suliranin sa renta, hindi nabayaranang sahod, kasalukuyang proseso ng litigasyon, at pang-industriyang aksidente?

\_\_ (1) nakatanggap ako ng tulong matapos akong humiling sa kanila (magtungo sa 33-2)

\_\_ (2) humiling ako ng tulong subalit hind ako tinulungan (magtungo sa numero 34)

\_\_ (3) hindi ako humingi ng tulong (magtungo sa numero 34)

▶ 33-2. Ano ang resulta ng hininging tulong?

\_\_ (1) Labis na nakatulong.                      \_\_ (2) Nakatulong ng kaunti.

\_\_ (3) So-so    \_\_ (4) Hindi masyadong nakatulong.

\_\_ (5) Walang naitulong.

## D. Proseso ng Pagpasok at Paglabas ng Shelter

34. Nakatanggap ba ng gamit para sa proteksyon ng katawan?

\_\_ (1) nanatili ang damit na suot ko    \_\_ (2) nanatiling suot ang underwear    \_\_ (3) nakahubad  
\_\_ (4) at iba pa

35. Humiling na makunan ng larawan bilang ebidensya sa tinamong sugat sa katawan?

\_\_ (1) Oo    \_\_ (2) Hindi (magtungo sa numero 36)

▶ 35-1 Kung naghumiling ng pisikal na ebidensya, mayroon bang anumang naiwan sa shelter?

\_\_ (1) kinuhang larawan                      \_\_ (2) pisikal na eksaminasyon sa pamamagitan ng sonogram

\_\_ (3) medikal na sertipiko                      \_\_ (4) iba pang paraan

36. Tungkol sa proseso ng paglilipat mula sa tanggapan ng imigrasyon papunta sa shelter ng naka-posas. Lagyan ng marka ang naayon sa sitwasyon.

\_\_ (1) Pinosasan ako upang ilipat.

\_\_ (2) Isang posas ang gamit ng dalawang tao.

\_\_ (3) Magkakarugtong ang kamay nilang naka-posas.

\_\_ (4). Inilipat ng walang posas.



## Survei Pertanyaan Mengenai Penahanan Orang Asing Tahun 2009

인도네시아

Apa kabar?

Lembaga komisi hak azasi manusia didirikan oleh pemerintah korea untuk melindungi hak azasi setiap individu yang berada dinegara korea ini, bukan hanya kepada orang korea saja melainkan kepada orang asing juga mendapatkannya.

Pada kesempatan kali ini, kantor lembaga komisi hak azasi manusia kami mengadakan survei dengan memberikan pertanyaan yang berkaitan dengan razia penangkapan dan kondisi lainnya secara langsung. Hasil daripada survei ini adalah untuk menjamin hak azasi dari para orang asing ilegal agar mendapatkan jaminan yang lebih baik lagi dan juga membangun agar tidak akan ada lagi pelanggaran hak azasi manusia dikemudian hari. Untuk itu jawaban pertanyaan dari saudara sekalian akan sangat menentukan terhadap perubahan yang akan terjadi nantinya.

Karena jawaban dari saudara adalah hal yang sangat kami butuhkan, dan kami akan menjamin kerahasiaannya. Janganlah saudara menjadi khawatir dan segeralah isi jawaban dari pertanyaan yang ada ini. Jika saudara mengalami pelanggaran hak azasi manusia, maka silahkan saudara isi kertas survei ini dengan lengkap dan jelas, atau jika ada perkataan yang ingin disampaikan secara langsung kepada petugas yang membawa kertas ini, dan begitu kami selesai mengumpulkan hasil dari kertas survei ini maka kami akan segera melakukan tindakan untuk membantu menyelesaikannya.

Ditengah kesibukan dan juga waktu yang berharga yang saudara berikan, kami ucapkan teima kasih.

2009. 7 .

Lembaga Komisi Hak Azasi Manusia di Korea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alamat: Eujiro 1 ga, 16 dong, jung-Gu, Seoul, Korea

Silahkan beri tanda ✓ pada setiap jawaban yang pilih, dikolom dengan tanda ‘\_’  
atau didalam kurung ‘ ( ) ’ jika saudara merasa ada pertanyaan yang sulit dimengerti  
mulailah menjawab dari yang mudah dahulu.

Jika saudara memiliki pertanyaan mengenai survei pertanyaan ini, silahkan hubungi nomor telepon kami dibawah ini.

Lembaga Komisi Hak Azasi Manusia di Korea, bagian penyelidikan pelanggaran.

Nomor telepon) 02-2125-9875, 9656 Fax) 02-2125-9658

## A. Keterangan Pribadi

1. Apakah kebangsaan anda?

- |   |   |
|---|---|
| <input type="checkbox"/> (1) Bangladesh   | <input type="checkbox"/> (2) China        |
| <input type="checkbox"/> (3) india        | <input type="checkbox"/> (4) Indonesia    |
| <input type="checkbox"/> (5) iran         | <input type="checkbox"/> (6) Ghana        |
| <input type="checkbox"/> (7) Jepang       | <input type="checkbox"/> (8) Kazakstan    |
| <input type="checkbox"/> (9) Kyrgyzstan   | <input type="checkbox"/> (10) Monggolia   |
| <input type="checkbox"/> (11) Myanmar     | <input type="checkbox"/> (12) Nepal       |
| <input type="checkbox"/> (13) Nigeria     | <input type="checkbox"/> (14) Pakistan    |
| <input type="checkbox"/> (15) Philippina  | <input type="checkbox"/> (16) Rusia       |
| <input type="checkbox"/> (17) Srilangka   | <input type="checkbox"/> (18) Thailand    |
| <input type="checkbox"/> (19) Uzbekistan  | <input type="checkbox"/> (20) Vietnam     |
| <input type="checkbox"/> (21) Kamboja     | <input type="checkbox"/> (22) Timor-timur |
| <input type="checkbox"/> (23) Lainnya ( ) |   |

2. Apakah jenis kelamin anda?

- |                                   |                                     |
|-----------------------------------|-------------------------------------|
| <input type="checkbox"/> (1) Pria | <input type="checkbox"/> (2) Wanita |
|-----------------------------------|-------------------------------------|

3. Berapakah usia anda?

- |   |   |
|---|---|
| <input type="checkbox"/> (1) dibawah 9 tahun      | <input type="checkbox"/> (2) antara 10 ~ 18 tahun |
| <input type="checkbox"/> (3) antara 19 ~ 30 tahun | <input type="checkbox"/> (4) antara 31 ~ 40 tahun |
| <input type="checkbox"/> (5) antara 41 ~ 50 tahun | <input type="checkbox"/> (6) lebih dari 51 tahun  |

4. Berapa lama anda telah tinggal di korea?

- |   |   |
|---|---|
| <input type="checkbox"/> (1) kurang dari 6 bulan  | <input type="checkbox"/> (2) kurang dari 1 tahun  |
| <input type="checkbox"/> (3) antara 1 ~ 2 tahun   | <input type="checkbox"/> (4) antara 2 ~ 3 tahun   |
| <input type="checkbox"/> (5) antara 3 ~ 4 tahun   | <input type="checkbox"/> (6) antara 4 ~ 5 tahun   |
| <input type="checkbox"/> (7) antara 5 ~ 6 tahun   | <input type="checkbox"/> (8) antara 6 ~ 7 tahun   |
| <input type="checkbox"/> (9) antara 7 ~ 8 tahun   | <input type="checkbox"/> (10) antara 8 ~ 9 tahun  |
| <input type="checkbox"/> (11) antara 9 ~ 10 tahun | <input type="checkbox"/> (12) lebih dari 10 tahun |





8. selama anda bekerja dikorea, hal apakah yang paling ingin sekali anda hindari?  
Silahkan pilih beberapa jawaban dibawah ini.

- |  |  |
|--|--|
| <input type="checkbox"/> (1) gaji yang tidak dibayar | <input type="checkbox"/> (2) kata-kata kasar             |
| <input type="checkbox"/> (3) penipuan                | <input type="checkbox"/> (4) kecelakaan kerja            |
| <input type="checkbox"/> (5) pelecehan seksual       | <input type="checkbox"/> (6) pemaksaan dari para pelacur |
| <input type="checkbox"/> (7) pelecehan keluarga      | <input type="checkbox"/> (8) tindakan kekerasan          |
| <input type="checkbox"/> (9) tidak ada               | <input type="checkbox"/> (10) lainnya:                   |

9. Apakah alasan anda menjadi ilegal?

- (1) ijin tinggalnya telah habis.
- (2) ijin tinggalnya masih ada, tetapi anda kabur dari tempat kerja.
- (3) jumlah ijin untuk pindah kerja telah melebihi batas [jadi tidak bisa pindah lagi].
- (4) karena ijin mencari kerja [selama 2 bulan] telah melampaui batas.
- (5) setelah membatalkan kontrak kerja, tidak segera melapor untuk mencari kerja [lewat dari 1 bulan].
- (6) karena bekerja diluar dari status ijin tinggal yang dimiliki, kemudian tertangkap razia.  
[jika menjawab hal ini, silahkan jawab pertanyaan no. 9-1]
- (7) bercerai dengan pasangan korea dengan alasan yang tidak kuat, sehingga ijin tinggalnya tidak bisa diperpanjang.
- (8) Lainnya( )

▶ 9-1. Jika anda melakukan pekerjaan diluar dari status ijin tinggal yang dimiliki, cobalah jelaskan bagaimana?

- (1) perusahaan tempat saya bekerja ketika saya ditangkap, bukanlah tempat bekerja yang terdaftar resmi didalam ijin tinggal saya [bekerja dipabrik lain]
- (2) memegang visa pelajar, tetapi bekerja tanpa memiliki ijin terlebih dahulu.
- (3) visa sementara atau visa kunjungan, lalu pergi bekerja, sehingga akhirnya tertangkap razia.
- (4) ikut mogok kerja, sehingga menjadi ilegal dan akhirnya tertangkap razia.
- (5) Lainnya ( )

10. harap diisi hanya bagi mereka yang telah mengajukan menjadi pengungsi.
- \_\_ (1) pengajuan untuk menjadi pengungsi telah ditolak, sehingga menjadi ilegal dan akhirnya tertangkap razia.
  - \_\_ (2) saat dalam masa pengajuan untuk menjadi pengungsi tertangkap razia.
  - \_\_ (3) setelah tertangkap razia, lalu mengajukan menjadi pengungsi.

## B. Proses Tertangkap

11. Kapanakah anda tertangkap razia?
- 200  tahun  bulan  hari
12. jam berapakah anda tertangkap razia?
- \_\_ (1) 09 : 00 ~ 18 : 00 (antara jam 9 pagi ~ 6 sore)
  - \_\_ (2) 18 : 00 ~ 00 : 00 (antara jam 6 sore ~ tengah malam)
  - \_\_ (3) 00 : 00 ~ 06 : 00 (antara tengah malam ~ 6 pagi)
  - \_\_ (4) 06 : 00 ~ 09 : 00 (antara jam 6 pagi ~ jam 9 pagi)
13. Anda terkena razia penangkapan oleh siapa?
- \_\_ (1) petugas imigrasi
  - \_\_ (2) polisi
  - \_\_ (3) Lainnya (            )
  - \_\_ (4) tidak tahu
14. Pada saat terkena razia, bagaimanakah seragam petugas yang melakukan razia?
- \_\_ (1) seragam resmi
  - \_\_ (2) seragam rompi khusus penangkapan
  - \_\_ (3) pakaian bebas
  - \_\_ (4) tidak tahu
15. Dimanakah anda berada saat tertangkap razia?
- \_\_ (1) rumah, asrama pabrik(tempat tinggal), (jika menjawab ini, lanjutkan pertanyaan no.15-1)
  - \_\_ (2) ditempat bekerja (dipabrik). (jika menjawab ini, lanjutkan pertanyaan no.15-2)
  - \_\_ (3) dijalanan, taman, bank, terminal. (jika menjawab ini, lanjutkan pertanyaan no.16)
  - \_\_ (4) di restoran, toko. (jika menjawab ini, lanjutkan pertanyaan no.15-3)

\_\_ (5) digedung gedung pemerintahan (gedung kantor imigrasi, gedung depnaker, kantor polisi). (jika menjawab ini, lanjutkan pertanyaan no.15-4)

\_\_ (6) lainnya ( ). (lanjutkan pertanyaan no.16)

▶ 15-1. Jika tertangkap dirumah(tempat tinggal), dengan cara bagaimanakah anda terkena razia?

\_\_ (1) petugas imigrasi atau polisi yang merazia menunjukkan kartu pengenalnya terlebih dahulu lalu meminta agar anda membukakan pintu dan menangkap anda setelah itu.

\_\_ (2) mereka tidak menunjukkan kartu tanda pengenal terlebih dahulu dan hanya meminta agar dibukakan pintu lalu menangkap anda setelah pintu dibukan sambil berkata bahwa mereka sedang melakukan razia penangkapan.

\_\_ (3) petugas razia menerobos masuk secara paksa melalui pintu ataupun jendela lalu melakukan penangkapan.

\_\_ (4) mereka bersembunyi didepan rumah anda dan begitu melihat anda mereka langsung menangkap.

\_\_ (5) Lainnya ( )

▶ 15-2. Jika tertangkap ditempat bekerja (pabrik), dengan cara bagaimanakah anda terkena razia?

\_\_ (1) petugas yang melakukan razia mendapatkan ijin dari pihak majikan pabrik, lalu masuk kedalam untuk melakukan penangkapan.

\_\_ (2) petugas yang melakukan razia tidak mendapatkan ijin dari pihak majikan pabrik, lalu masuk kedalam pabrik secara paksa untuk melakukan penangkapan.

\_\_ (3) petugas yang melakukan razia mendobrak pintu gerbang ataupun jendela, lalu masuk kedalam pabrik secara paksa untuk melakukan penangkapan.

\_\_ (4) karena menagih tunggakan gaji yang belum dibayar dan pihak majikan melaporkan kepada pihak imigrasi pada saat kami datang kesana.

\_\_ (5) petugas yang melakukan razia melakukan penangkapannya didepan pabrik.

\_\_ (6) Lainnya ( )

▶ 15-3. Jika tertangkap direstoran atau ditoko, apakah pemilik toko mengijinkan petugas yang merazia untuk masuk ke dalam?

\_\_ (1) diberikan ijin.

\_\_ (2) tidak diberikan ijin.

\_\_ (3) tidak diberikan ijin, mereka tetap saja masuk.

\_\_ (4) tidak tahu.

- ▶ 15-4. Jika tertangkap ditempat gedung pemerintahan (kantor imigrasi, kantor depnaker, kantor polisi, dll), dengan cara bagaimanakah anda terkena razia?

\_\_ (1) polisi ataupun petugas gedung pemerintahan (di depnaker, ataupun dipusat kantor untuk mencari pekerjaan, dll) mereka melaporkan kepada petugas razia untuk datang melakukan penangkapan.

\_\_ (2) ada bukti ataupun saksi yang tahu bahwa anda adalah orang ilegal, lalu melaporkan kepada petugas untuk menangkap anda.

\_\_ (3) datang untuk mengajukan visa dikantor imigrasi, akan tetapi malah tertangkap oleh mereka.

\_\_ (4) ada orang melaporkan agar anda ditangkap oleh petugas razia.

\_\_ (5) Lainnya ( )

※ Pertanyaan berikut ini adalah mengenai petugas yang telah menangkap anda apakah mentaati hukum atau tidak.

16. petugas yang melakukan razia penangkapan, disaat sebelum menangkap menunjukkan kartu tanda pengenal sambil menjelaskan tugas dan misi yang mereka lakukan. Silahkan anda jawab apakah mereka melakukan seperti yang dijelaskan diatas.

\_\_ (1) mereka menunjukkan kartu tanda pengenal. (silahkan jawab pertanyaan no.16-1)

\_\_ (2) mereka tidak menunjukkan kartu tanda pengenal.(silahkan jawab pertanyaan no.17)

- ▶ 16-1. Kapanakah petugas yang melakukan penangkapan menunjukkan kartu pengenalnya?

\_\_ (1) menunjukkan terlebih dahulu sebelum melakukan razia.

\_\_ (2) menunjukkan kartu pengenal sambil melakukan razia.

\_\_ (3) menunjukkan kartu pengenal setelah melakukan razia.

17. pada saat melakukan razia, bagaimanakah tingkah laku petugas yang melakukan razia?

\_\_ (1) bertanya apakah anda memiliki visa dan bisakah menunjukkannya.

\_\_ (2) pada saat melihat anda mereka langsung memegang dan mengontrol tubuh anda,  
lalu meminta agar anda menunjukkan visa.

\_\_ (3) Lainnya ( )

18. pada saat melakukan razia terhadap anda, apakah mereka menunjukkan surat penangkapan darurat atau dokumen lainnya kepada anda?

\_\_ (1) mereka menunjukkan (silahkan jawab pertanyaan no.18-1, 18-2)

\_\_ (2) mereka tidak menunjukkan. ( silahkan jawab pertanyaan no.19)

▶ 18-1. Surat penangkapan darurat yang ditunjukan kepada anda. Apakah petugas menjelaskannya dengan rinci kepada anda?

\_\_ (1) mereka menjelaskannya. \_\_ (2) mereka tidak menjelaskannya.

▶ 18-2. Kapankah petugas yang merazia menunjukkan surat dokumen penangkapannya kepada anda?

\_\_ (1) sebelum melakukan penangkapan, mereka menunjukkan lebih dahulu.

\_\_ (2) pada saat melakukan penangkapan, mereka juga menunjukkan dokumen itu.

\_\_ (3) setelah melakukan penangkapan, mereka menunjukkan surat itu didalam mobil.

\_\_ (4) mereka menunjukkannya setelah berada didalam penjara.

\_\_ (5) mereka tidak menunjukkannya sama sekali.

### C. Setelah tertangkap, maka proses perpindahan dan juga proses wawancara

※ beriku ini adalah pertanyaan seputar proses selanjutnya , setelah anda tertangkap oleh petugas imigrasi.

19. Berapa lamakah anda berada didalam mobil yang dipakai untuk merazia?

\_\_ (1) dibawah 1 jam

\_\_ (2) antara 1 jam ~ 2 jam

\_\_ (3) antara 2 jam ~ 3 jam

\_\_ (4) antara 3 jam ~ 4 jam

\_\_ (5) antara 4 jam ~ 5 jam

\_\_ (6) lebih dari 5 jam.

\_\_ (7) Lainnya ( )

- ▶ 19-1 Selama berada didalam mobil yang digunakan untuk menangkap, hal apakah yang membuat anda merasa tidak nyaman? Silahkan berikan tanda ✓ untuk jawaban yang anda berikan.

- \_\_ (1) borgol yang diberikan membuat anda tidak nyaman.  
 \_\_ (2) terasa lapar karena belum sempat makan.  
 \_\_ (3) tengorokan terasa haus karena tidak bisa minum air.  
 \_\_ (4) tidak nyaman karena tidak bisa ke kamar mandi.  
 \_\_ (5) didalam mobil udaranya sangat panas dan bau, terasa tidak nyaman.  
 \_\_ (6) sangat sulit untuk pakai handphone.  
 \_\_ (7) sangat membutuhkan pertolongan, tetapi mereka tidak mendengarkan.  
 \_\_ (8) Lainnya( )

- ▶ 19-2. Saat anda dibawa kedalam mobil razia, adakah orang asing lainnya yang sudah berada didalam mobil?

- \_\_ (1) tidak ada. (hanya saya sendiri)  
 \_\_ (2) 1 orang ~ 5 orang  
 \_\_ (3) 5 orang ~ 10 orang  
 \_\_ (4) lebih dari 10 orang

20. setelah anda terkena razia penangkapan, jelaskan keadaan selanjutnya dengan memberi tanda ✓ pada setiap jawaban yang anda pilih.

- \_\_ (1) setelah tertangkap langsung dibawa kekantor imigrasi.  
 \_\_ (2) setelah berada didalam mobil atau bis yangdigunakan untuk merazia, saya dikunci didalam mobil sambil mereka tetap berkeliling merazia dan menangkap orang-orang sampai mobilnya menjadi penuh.  
 \_\_ (3) mereka meminta saya menunjukkan tempat dimana ada orang asing ilegal dan pergi kesana bersama-sama.

21. saat anda sedang dipegang oleh petugas razia, apakah mereka juga memukuli anda?

- \_\_ (1) iya                                    \_\_ (2) tidak (silahkan jawab pertanyaan no.22)

- ▶ 21-1. Jelaskan jenis tindakan kasar seperti apa yang dilakukan oleh petugas razia terhadap anda. Silahkan berikan tanda ✓ untuk jawaban yang anda berikan.

- (1) tangan anda langsung dipukul.
- (2) anda dipukul pakai sebuah alat.
- (3) banyak orang secara bergantian memukuli anda.

22. Apakah anda terluka saat terkena razia penangkapan?

- (1) iya
- (2) tidak (silahkan jawab pertanyaan no.23)

▶ 22-1. Setelah anda terluka, apakah yang dilakukan petugas untuk menolong anda?

- (1) pada saat dirazia langsung diberikan pertolongan darurat.
- (2) setelah sampai dikantor imigrasi (ruang penahanan) langsung diberikan pengobatan.
- (3) tidak diberikan pengobatan.
- (4) diberikan pengobatan biasa karena lukanya tidak terlalu parah.

23. Apakah petugas yang merazia berkata-kata kasar atau berbicara kotor terhadap anda?

- (1) iya
- (2) tidak

24. Pada saat petugas yang merazia memegang anda, alat apakah yang mereka gunakan? Silahkan isi jawaban dibawah ini.

- (1) borgol
- (2) tali(tambang)
- (3) pentungan polisi
- (4) tembakan gas
- (5) setruman listrik
- (6) pistol karet
- (7) alat lainnya ( )
- (8) tidak menggunakan alat apapun (jawab pertanyaan no.25)

▶ 24-1. Alat yang digunakan oleh petugas yang merazia seperti borgol dan alat lainnya.

Apakah sampai melukai anda saat mereka menggunakannya?

- (1) iya
- (2) tidak

25. Apakah anda juga diborgol saat berada didalam mobil?

- (1) dari pertama sampai terakhir terus diborgol.
- (2) pertamanya diborgol, tetapi ditengah jalan dilepaskan.
- (3) pertama dimasukan mobil tidak diborgol, tetapi ditengah jalan dipakaikan.

\_\_ (4) tidak dipakaikan borgol. (silahkan jawab pertanyaan no 26)

- ▶ 25-1. Alat (borgol) yang dipakaikan oleh petugas, berapa lama anda mengenakannya?

\_\_ (1) kurang dari 1 jam.

\_\_ (2) antara 1 ~ 2 jam.

\_\_ (3) antara 2 ~ 3 jam.

\_\_ (4) antara 3 ~ 4 jam.

\_\_ (5) antara 4 ~ 5 jam.

\_\_ (6) lebih dari 5 jam.

26. Apakah jenis kelamin dari petugas yang menangkap anda?

\_\_ (1) pria

\_\_ (2) wanita

\_\_ (3) semuanya, pria dan wanita.

27. Apakah anda mendapatkan pelecehan seksual dari petugas dilapangan ataupun didalam mobil, pada saat anda terkena razia penangkapan?

\_\_ (1) iya

\_\_ (2) tidak (silahkan jawab pertanyaan no. 28)

- ▶ 27-1. Pelecehan seksual seperti apa yang anda rasakan? Silahkan pilih jawaban dibawah ini.

\_\_ (1) anda merasa dilecehkan karena petugas yang melakukan razia berbeda jenis kelamin dengan anda.

\_\_ (2) berada didalam mobil dengan orang-orang yang berlainan jenis dan dalam waktu yang lama.

\_\_ (3) berada didalam mobil dalam waktu yang sangat lama sehingga tidak bisa pergi ke kamar kecil.

\_\_ (4) anda merasa dilecehkan karena begitu turun dari mobil langsung diikat bersama-sama dengan para pria.

\_\_ (5) petugas yang merazia bercanda dengan menyinggung soal jenis kelamin.

\_\_ (6) anda merasa dilecehkan karena petugas terebut memegang tubuh anda.

\_\_ (7) Lainnya ( )

28. Apakah anda dipaksa menandatangani surat atau dokumen yang anda sendiri tidak tahu apa artinya?

\_\_ (1) dipaksa untuk menandatangani.





33. anda sudah berada lebih dari 1 bulan didalam ruang penahanan imigrasi, bisakah jelaskan alasannya?

- (1) tidak punya tiket pesawat.
- (2) karena masih ada uang deposit, tunggakan gaji dan juga pembayaran uang gaji yang masih belum diselesaikan. (silahkan jawab pertanyaan no.33-1)
- (3) karna masih ada tuntutan, ataupun perkara pengadilan dan penyelidikan yang maish belum selesai. (silahkan jawab pertanyaan no.33-1)
- (4) karena mendaftar untuk jadi pengungsi.
- (5) karena barang-barang pribadi atau tas masih belum diterima. (silahkan jawab pertanyaan no.33-1)
- (6) karena sedang dalam masa peyembuhan dari kecelakaan kerja dan dari luka yang belum sembuh. (silahkan jawab pertanyaan no.33-1)
- (7) karena ada masalah atau kondisi yang membuat saya tidak bisa kembali ketanah air.

▶ 33-1 jika ada uang deposit, gaji yang belum dibayar, tuntutan sipil yang masih belum diselesaikan. Apakah petugas imigrasi menawarkan bantuan kepada anda?

- (1) saya meminta bantuan dan mereka melakukannya. (silahkan jawab pertanyaan no.33-2)
- (2) saya meminta bantuan, tetapi mereka menolaknya. (silahkan jawab pertanyaan no.34)
- (3) saya tidak pernah meminta bantuan kepada mereka (silahkan jawab pertanyaan no.34)

▶ 33-2. Apakah anda puas dengan hasil dari bantuan mereka.

- (1) sangat puas.                       (2) sedikit membantu.
- (3) biasa saja.                         (4) bantuan yang diberikan tidak cukup.
- (5) sangat tidak membantu.

#### D. Pada Saat Pindah Dan Masuk Dalam Ruang Penahanan

34. pada saat anda memasuki ruang penahanan, dengan cara apakah tubuh anda diperiksa?

- \_\_ (1) masih pakai pakaian \_\_ (2) hanya pakai baju dalam \_\_ (3) ditelanjangi  
\_\_ (4) lainnya ( )

35. pada saat pemeriksaan tubuh, jika ditemukan ada luka apakah mereka melakukan pengambilan photo ataupun pengumpulan bukti?

- \_\_ (1) iya \_\_ (2) tidak (silahkan jawab pertanyaan no.36)

▶ 35-1 jika mereka melakukan pemeriksaan tubuh didalam ruang penahanan, dengan cara apakah mereka melakukannya?

- \_\_ (1) mengambil photo \_\_ (2) melakukan pencatatan pemeriksaan  
\_\_ (3) dengan laporan dokter \_\_ (4) dengan cara lain:

36. berikut ini tentang perpindahan dari kantor imigrasi menuju keruang tahanan, berikut juga penggunaan borgol. Silahkan pilih jawaban dibawah ini.

- \_\_ (1) diborgol seorang diri dan dipindah.  
\_\_ (2) 2 orang diborgol menjadi satu.  
\_\_ (3) kedua tangan diborgol, lalu dirantai menjadi satu dengan orang lain dan berjalan berbaris untuk pindah.  
\_\_ (4) tidak diborgol, dan hanya disuruh pindah saja.

37. diruang tahanan, rumah sakit, ataupun dipengadilan dan ditempat lainnya. Apakah anda diborgol dan dilihat oleh orang banyak?

- \_\_ (1) iya \_\_ (2) tidak

## E. Seputar Kebenaran

38. Pada saat anda masuk kedalam ruang penahanan imigrasi, apakah petugas imigrasi menjelaskan hak-hak anda dengan rinci? Silahkan beri tanda ✓ untuk jawaban yang anda pilih.

- \_\_ (1) hak untuk dikunjungi teman dekat dan keluarga.  
\_\_ (2) hak untuk dikunjungi dan meminta bantuan pengacara.  
\_\_ (3) hak untuk mengajukan segala keperluan yang dibutuhkan.



## Анкета для выявления условий надзора над нелегально находящимися иностранцами 2009

Здравствуй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являяс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чреждением, прикладывает все усилия к тому, чтобы защитить все права лич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х, но 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Комиссия проводит исследование соблюд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органами надзора над иностранными рабочими, для чего и была составлена эта анкета. На основе эт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ы планируем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ект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оэтому Ваша анкета послужит ценным материалом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Поскольку на Ваши ответы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статистике, Вам гарантируется полная анонимность. Просим искренне отвечать на вопросы. Кроме этого, если вы хотите что-то высказать по поводу дискриминации или ущемление прав, можете поделиться с сотрудником, который ведет опрос.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опрос-анкеты, мы выслушаем ваши мнения отдельно.

Выражаем вам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то, что уделите нам свое драгоценное время.

Июль 2009г.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100-842 Здание Гымсэги, Ыльчиро -1- Га 16, Чунгу, Сеул

Форма ответов на вопросы: в “\_\_” ставить галочку; в “□” ставить цифру; в “( )” ставить букву.  
Если вы затрудняетесь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 то напишите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Если у вас возникли вопросы по данной анкете, обратитесь по этим координат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отдел по дискриминации  
тел.) 02-2125-9875, 9656 факс) 02-2125-9658

## A. Личные данные

1. Укажите гражданство.

- |   |  |
|---|--|
| <input type="checkbox"/> (1) Бангладеш                        | <input type="checkbox"/> (2) Китай     |
| <input type="checkbox"/> (3) Индия                            | <input type="checkbox"/> (4) Индонезия |
| <input type="checkbox"/> (5) Иран                             | <input type="checkbox"/> (6) Гана      |
| <input type="checkbox"/> (7) Япония                           | <input type="checkbox"/> (8) Казахстан |
| <input type="checkbox"/> (9) Киргизстан                       | <input type="checkbox"/> (10) Монголия |
| <input type="checkbox"/> (11) Мьянма                          | <input type="checkbox"/> (12) Непал    |
| <input type="checkbox"/> (13) Нигерия                         | <input type="checkbox"/> (14) Пакистан |
| <input type="checkbox"/> (15) Филиппины                       | <input type="checkbox"/> (16) Россия   |
| <input type="checkbox"/> (17) Шри-ланка                       | <input type="checkbox"/> (18) Таиланд  |
| <input type="checkbox"/> (19) Узбекистан                      | <input type="checkbox"/> (20) Вьетнам  |
| <input type="checkbox"/> (21) Камбоджа                        | <input type="checkbox"/> (22) Тимор    |
| <input type="checkbox"/> (23) Другое (                      ) |  |

2. Укажите Ваш пол.

- |                                      |                                      |
|--------------------------------------|--------------------------------------|
| <input type="checkbox"/> (1) Мужчина | <input type="checkbox"/> (2) Женщина |
|--------------------------------------|--------------------------------------|

3. Укажите Ваш возраст.

- |   |  |
|---|--|
| <input type="checkbox"/> (1) меньше 9 лет | <input type="checkbox"/> (2) 10~18 лет     |
| <input type="checkbox"/> (3) 19~30 лет    | <input type="checkbox"/> (4) 31~40 лет     |
| <input type="checkbox"/> (5) 41~50 лет    | <input type="checkbox"/> (6) более 51 года |

4. Сколько Вы уже находитесь в Корее??

- |  |  |
|--|--|
| <input type="checkbox"/> (1) менее 6 месяцев | <input type="checkbox"/> (2) менее года    |
| <input type="checkbox"/> (3) год-два         | <input type="checkbox"/> (4) 2-3 года      |
| <input type="checkbox"/> (5) 3-4 года        | <input type="checkbox"/> (6) 4-5 лет       |
| <input type="checkbox"/> (7) 5-6 лет         | <input type="checkbox"/> (8) 6-7 лет       |
| <input type="checkbox"/> (9) 7-8 лет         | <input type="checkbox"/> (10) 8-9 лет      |
| <input type="checkbox"/> (11) 9-10 лет       | <input type="checkbox"/> (12) более 10 лет |

5. С какой визой Вы въехали в Корею?

- (1) C2, C3 краткосрочная                       (2) D2 учебная  
 (3) D3 рабочая (по контракту)               (4) F1 визит, сожительство  
 (5) F2 супруг гражданина Кореи или иностранца, имеющего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6) F4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7) E6 с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8) E9 рабочая (без специальности)       (9) E10 виза моряка  
 (10) другое (    )

6. Чем Вы занимались до задержания? Отметьте все подходящие виды деятельности.

- (1) работа на заводе                               (2) 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ернорабочий)  
 (3) работа в сфере рыболовства  
 (4) работа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 ле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5) работа в ресторане (повар, уборщик, официант)  
 (6) домработница, няня, сиделка  
 (7) обслуживание гостей увесели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8) студент  
 (9) был в периоде леч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травма, автокатастрофа, болезнь)  
 (10) безработный                                   (11) другое (    )

7. Есть ли родственни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 (1) Да (Перейти к вопросу 7-1)                       (2) Нет (Перейти к вопросу 8)

▶ 7-1. Если имеются родственники, то отметьте все подходящие пункты.

- (1)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й ребенок               (2)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й ребенок  
 (3) супруг – гражданин Кореи                       (4) супруг, не являющийся гражданином Кореи  
 (5) брат или сестра                                   (6) отец или мать  
 (7) нет     (8) другое

8. Какой ущерб Вы потерпели, работая в Кореи? Отметьте все подходящие пункты

- (1) невыдача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2) насилие  
 (3) надувательство                                       (4)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травма  
 (5) половое насилие                                       (6) принужденная проституция  
 (7) домашнее насилие                                   (8) дискриминация

\_\_ (9) другое

\_\_ (10) не было ущерба

9. Что привело вас стать нелегалом?

\_\_ (1) срок визы закончился

\_\_ (2) несмотря на срок визы, покинул компанию

\_\_ (3) превысило количество изменения работы

\_\_ (4) истёк 2 месячный срок поиска работы

\_\_ (5) после ухода с работы, истёк срок (1 месяц)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по поиску работы

\_\_ (6) не имея разрешения работать, был задержан в процессе работы

\_\_ (7) был(а) в браке с гражданином(кой) Кореи, по причине развода не смог(ла) продлить срок визы

\_\_ (8) другое ( )

▶ 9-1. Если причина вашего арест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ы работали в неразреш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ая именно относится к вам?

\_\_ (1) был арестован, так как работал в иной компании, где не был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со стороны Центра найма.

\_\_ (2) владея студенческой визой, но не получил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_\_ (3) так как работал, имея визу коротковременного визита.

\_\_ (4) так как, участвовал в трудов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движениях.

\_\_ (5) другое ( )

10. Отметьте если вы беженец или подали заявление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защиту.

\_\_ (1) Был арестован, когда получил отказ беженца.

\_\_ (2) Был арестован в период рассмотрения заявления.

\_\_ (3) Подал(а) заявление на беженца, после ареста.

## В. Задержание, ход расследования

11. Когда Вас задержали?



200  год  месяц  день

12. В какое время Вас задержали?

- (1) 09:00 ~ 18:00  
 (2) 18:00 ~ 00:00  
 (3) 00:00 ~ 06:00  
 (4) 06:00 ~ 09:00

13. Кем вы были задержаны?

- (1) сотрудником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2) сотрудником полиции  
 (3) другое  
 (4) не знаю

14. Укажите, как он был одет при задержании?

- (1) в униформе  (2) в спец.безрукавке  (3) в гражданской форме  (4) не знаю

15. Где Вас задержали?

- (1) дома, в общежитии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15-1)  
 (2) на работе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15-2)  
 (3) на улице, в парке, в банке, в терминале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16)  
 (4) в ресторане, в магазине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15-3)  
 (5)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чреждении ( в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офис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в полицейском участке)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15-4)  
 (6) другое (  )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16)

▶ 15-1. Если на месте проживания, то каким образом вы были задержаны?

- (1) сотрудник иммиграции и полиции предъявили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попросили открыть дверь, открыв дверь вы были задержаны  
 (2) не предъявляя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попросили открыть дверь, открыв дверь, они внезапно вторглись и вы были задержаны  
 (3) вторглись без разрешения через дверь или окно и задержали вас  
 (4) находясь в засаде (поджидая) возле дома, задержали вас

\_\_ (5) Другое ( )

▶ 15-2. Если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то каким образом вы были задержаны?

\_\_ (1) взяв разрешение у работодателя, они вошли в предприятие и задержали

\_\_ (2) они вошли в предприятие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и вы были задержаны

\_\_ (3) взломав дверь или окно, вломиться в предприятие и задержали вас

\_\_ (4) пошёл брать за невыплаченной зарплатой в предприятие, на основе заявки работодателя был задержан

\_\_ (5) находясь в засаде (поджидая) возле предприятия, задержали вас

\_\_ (6) Другое ( )

▶ 15-3. Если в ресторане, в магазине, то каким образом вы были задержаны?

\_\_ (1) имея разрешение хозяина

\_\_ (2) не имея разрешения хозяина

\_\_ (3) пришли без всякого разрешения

\_\_ (4) не знаю.

▶ 15-4. Есл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чреждении (в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офисе, в Центре занятости рабочих, в полицейском участке), то каким образом вы были задержаны?

\_\_ (1) был задержан при подаче жалобы в учреждение

\_\_ (2) во время свидетельских показаний, выяснилось о моём нелегальном нахождении, и я был задержан

\_\_ (3) был задержан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визу в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_\_ (4) был задержан на основе заявки неизвестного лица

\_\_ (5) другое

\* Следуют ли закону сотрудник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при задержании

16. Сотрудник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обязан до задержания предъяви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и доложить личность и отдел, к которому он относится. Отметьте подходящий ответ.

\_\_ (1) предъявил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_\_ (2) не предъявил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17)

▶ 16-1. Когда предъявил св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_\_ (1) до задержания. \_\_ (2) при задержании.

\_\_ (3) после задержания.

17. Какие действия предпринял сотрудник иммиграции во время ареста?

\_\_ (1) устно потребовал предъявить визу.

\_\_ (2) увидев меня, применяя физическую силу, потребовал визу.

\_\_ (3) другое ( )

18. Предъявил ли сотрудник иммиграции “досрочный ордер”?

\_\_ (1) да.(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ы 18-1, 18-2) \_\_ (2) нет.(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ы 19)

▶ 18-1. Объяснил ли сотрудник иммиграции значение “досрочного ордера”?

\_\_ (1) да. \_\_ (2) нет.

▶ 18-2. Когда он предъявил документы?

\_\_ (1) до задержания

\_\_ (2) при задержании

\_\_ (3) после задержания в машине

\_\_ (4) в учреждение надзора

\_\_ (5) не предъявлял

## С. Перевозка после задержания и процесс допроса

※ В процессе перевозки в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19.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вы находились в машине?

\_\_ (1) в течении часа

\_\_ (2) в течении 1-2 часов

\_\_ (3) в течении 2-3 часов

\_\_ (4) в течении 3-4 часов

\_\_ (5) в течении 4 -5 часов

\_\_ (6) более 5 часов

\_\_ (7) другое ( )

▶ 19-1 Какие неудобство вы почувствовали в машине? Отметьте подходящие пункты

- (1) было неудобно из за наручников  
 (2) не мог поесть, был голоден  
 (3) не мог попить, горло пересохло  
 (4) не мог сходить в туалет  
 (5) в машине было жарко, и был неприятный запах  
 (6) не мог использовать сотовый телефон  
 (7) просил помощи, но никто не слушал  
 (8) другое ( )

▶ 19-2. Когда вас посадили в машину, сколько задержанных еще там было?

- (1) не было (я был один)  
 (2) 1-5 человек  
 (3) 5-10 человек  
 (4) более 10 человек

20. Ситуация после задержания. Отметьте подходящие пункты

- (1) после задержания сразу же приехал в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2) после задержания, ожидал в машине, пока не набрали пол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3) потребовали доложить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других иностранцев и вместе направились туда.

21. Подверглись ли Вы насилью со стороны работников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 (1) да       (2) нет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22)

▶ 21-1. Каким образом вы подверглись насилью. Отметьте все подходящие варианты.

- (1) били по ногам и рукам       (2) били оружием  
 (3) был охвачен и избит несколькими людьми.

22. Получили ли вы повреждение во время задержания?

- (1) да       (2) нет(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23)

▶ 22-1. Какие меры предприняли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вашего повреждения?

- (1) вызвали скорую помощь во время задержания.  
 (2) получил лечение после прихода в учреждение надзора.

\_\_ (3) не смог получить лечение.

\_\_ (4) степень повреждения не была значительной для лечения.

23. Подверглись ли Вы нечеловеческому обращению (оскорблению, бранью и грубыми словами дискриминирующие личность) со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кам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_\_ (1) да                    \_\_ (2) нет

24. Какие орудия использовали сотрудник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при задержании? Отметьте все подходящие варианты.

\_\_ (1) наручники    \_\_ (2) верёвка    \_\_ (3) дубинка (милицейская)

\_\_ (4) газовый баллон                    \_\_ (5) электрическая дубинка, сеть

\_\_ (6) водяной пистолет    \_\_ (7) другие средства(                    )

\_\_ (8) не использовали никаких орудий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24-1)

▶ 24-1. Были ли повреждения или царапины от орудий, наручников используемых со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ками иммиграции?

\_\_ (1) да                    \_\_ (2) нет

25.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ли наручники внутри машины?

\_\_ (1) наручники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с начала до конца

\_\_ (2) сначала надели наручники, а потом освободили

\_\_ (3) сначала не использовали, но потом надели

\_\_ (4) н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26)

▶ 25-1.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вы находились в наручниках?

\_\_ (1) в течении часа                    \_\_ (2) в течении 1-2 часов                    \_\_ (3) в течении 2-3 часов

\_\_ (4) в течении 3-4 часов                    \_\_ (5) в течении 4-5 часов                    \_\_ (6) более 5 часов

26. Кем был сотрудник иммиграции ?(Пол)

\_\_ (1) мужчина                    \_\_ (2) женщина                    \_\_ (3) мужчина и женщина

27. При задержании почувствовали Вы стыд или позор?

\_\_ (1) да                    \_\_ (2) нет(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28)

▶ 27-1. В чём причина чувства стыда или позора? (Отметьте все подходящие варианты)

- (1) почувствовал(а) стыд, так как был(а) задержан(а) сотрудниками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го пола
- (2) из-за того что долгое время находилась (ся) в одной машине с лицами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го пола
- (3) так как долгое время находился в машине, не мог сходить в туалет
- (4) сходя с машины, было стыдно при людях идти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связанными людьми.
- (5) было стыдно, так как сотрудник иммиграции предпринял шутку сексу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 (6) было стыдно, так как сотрудник иммиграции прикасался к телу.
- (7) другое( )

28. Принуждали ли Вас подписывать документы, смысл, которого вы не знаете?

- (1) принуждали, подписал  (2) так как принуждали, отказал.

29. Известил ли вас сотрудник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о том, что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адвоката или других людей и у вас есть право иметь защиту?

- (1) да  (2) нет

※ \* Процесс допроса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до приезда в учреждение надзора.

30. Испытывали ли Вы трудности в понимании при опросе в учреждении надзора?

- (1) Не было
- (2) Так как был переводчик, не было
- (3) Был переводчик, но были проблемы
- (4) Так как не было переводчика, общение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 30-1. На каком языке общались в процессе допроса?

- (1) на корейском  (2) на английском  (3) на русском  (4) другое)

31. Присутствовал ли переводчик при опросе?

- (1) да  (2) нет(переходите на вопрос 32)

▶ 31-1. Кто был переводчиком?

- (1) сотрудник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 (2) переводчик, приглашенный для перевода
- (3) иностранец, находящийся в учреждении надзора

32. Сколько Вы находились в учреждении надзора?

- \_\_ (1) менее недели                      \_\_ (2) менее двух недель  
\_\_ (3) менее 3 недель                  \_\_ (4) менее 4 недель  
\_\_ (5) 1-2 месяца                      \_\_ (6) 2-3 месяца  
\_\_ (7) 3-6 месяцев                    \_\_ (8) от 6 месяцев до года  
\_\_ (9) более года

\* ответившие на (1), (2), (3), (4) пункты переходите на 33 вопрос

33. Каковы причины Вашего длительного нахождения под надзором?

- \_\_ (1) не было денег на билет самолета  
\_\_ (2) не был решен вопрос по квартплате, получению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личного имущества и т.д.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33-1)  
\_\_ (3) шел судебный процесс по поданным жалобам, заявлениям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33-1)  
\_\_ (4) так как был(а) в процесс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беженца  
\_\_ (5) не мог(ла) получить обратно свою сумку и личные вещи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33-1)  
\_\_ (6) ожидал(а)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и леч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травмы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33-1)  
\_\_ (7) не мог возвратиться домой, так как была причина,

▶ 33-1 Обращались ли вы за помощью к сотруднику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по вопросам квартплаты,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уд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травмы?

- \_\_ (1) Попросил помощи, приняли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33-2)  
\_\_ (2) Попросил помощи, отказали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34)  
\_\_ (3) не обращался за помощью (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34)

▶ 33-2. Удовлетворились ли вы результатом просьбы?

- \_\_ (1) да, очень помогли.              \_\_ (2) чуть чуть помогли.  
\_\_ (3) так себе                          \_\_ (4) не было никакой пользы.  
\_\_ (5) вообще не было никакой пользы.

## D. Перевозка и приезд в учреждении надзора

34. В каком виде Вы проходили мед. осмотр?

\_\_ (1) в одежде      \_\_ (2) в нижнем белье      \_\_ (3) голый      \_\_ (4) другое

35. При прохождении мед. осмотра просили ли вы сделать снимок рентгена для предъявления доказательств травмы на вашем теле?

\_\_ (1) да      \_\_ (2) нет(перейти на вопрос 36)

▶ 35-1 В каком виде сохранились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_\_ (1) рентгеновский снимок      \_\_ (2) запись мед.осмотра  
\_\_ (3) диагноз врача      \_\_ (4) другое

36. Во время перевозки с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офиса в учреждение надзора, каким образом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наручники? (Отметьте все подходящие пункты)

\_\_ (1) был один в наручниках  
\_\_ (2)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наручник пристегнули к другому задержанному  
\_\_ (3) 2 наручника пристегнули с обеих сторон к другим задержанным  
\_\_ (4) наручники н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был в свободном положении

37. Были ли случаи, когда на глазах у людей вас переводили наручниках в учреждение надзора, больницу, суд?

\_\_ (1) да      \_\_ (2) нет

## E.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38. Получили ли вы сведения о ваших правах от сотрудник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во время прибытия в учреждение надзора? Отметьте подходящие варианты.

\_\_ (1) право на свидание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семьей.  
\_\_ (2) право на встречу с адвокатом и консуло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раны, а также обращение с помощью к данным лицам.  
\_\_ (3) право на заявку о возражении заключения  
\_\_ (4) право подачи жалобы (заявления) по поводу ущемления человеческих прав возникшие в учреждении надзора



\_\_\_ (5) право на письма и телефонные звонки.

39. Знаете ли вы что имеете право на заявку о возражении по поводу принужденной депортации  
или заключения?

\_\_\_ (1) да                      \_\_\_ (2) нет

40. Знаете ли вы что имеете права на подачу жалобы (заявление) в Комиссию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_\_\_ (1) да                      \_\_\_ (2) нет

- Спасибо. -

## 2009 оны гадаад иргэдийг түр хорих газарт явуулах судалгаа

\* 몽골어

Сайн байна уу?

Улсын Хүний Эрхийн Комисс нь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зорилготойгоор байгуулагдсан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 иргэдээс гадна солонгосын нутаг дэвсгэрт ажиллаж амьдарч буй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эрх ашгийг ч хамгаалахын тулд бүх хүчээ дайчлан ажиллаж байна.

Бид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ж буй гадаад иргэдийг баривчлах явцад хүний эрх хэрхэн зөрчигдөж байгааг тогтоохоор энэ удаагийн судалгааг явуулж байна. Энэхүү санал асуулганд үндэслэн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эрх ашгийг хамгаалах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х юм.

Энэхүү материал статистик мэдээлэл болон нэгтгэгдэх бөгөөд хувийн нууцыг найдвартай хадгална. Тиймээс нууж хаалгүй үнэн зөв хариулахыг хүсье. Түүнчлэн та нэмж хэлэх санал гомдол байвал санал асуулга авч буй ажилтанд хэлэн тусгайлан уулзах боломжтой.

Та алтан цаг гарган санал асуулганд хариулсан баярлалаа.

2009 он 7 сар

Улсын Хүний Эрхийн Комисс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Сөүл хот Жүн дүүрэг Өлжиру 1 га 16 тоот Кымсэги билдин

Шуудангийн дугаар: 100-842

Та ‘\_\_’ дотор  ‘□’ дотор тоо, ‘( )’ дотор бичиж хари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Хариулахад хэцүү асуулганд хамгийн эхлээд толгойд чинь орсон зүйлээ бичнэ үү.

Уг санал асуулгатай холбогдсон асуултыг доорх утсаар хүлээн авна.

Улсын Хүний Эрхийн Комиссын шалгах хэлтэс: Утас) 02-2125-9875, 9656 Факс) 02-2125-9658

## А. Хувийн мэдээлэл

1. Та аль улсын иргэн бэ?

- |  |  |
|--|--|
| <input type="checkbox"/> (1) Бангладеш   | <input type="checkbox"/> (2) БНХАУ     |
| <input type="checkbox"/> (3) Энэтхэг     | <input type="checkbox"/> (4) Индонези  |
| <input type="checkbox"/> (5) Иран        | <input type="checkbox"/> (6) Кана      |
| <input type="checkbox"/> (7) Япон        | <input type="checkbox"/> (8) Казакстан |
| <input type="checkbox"/> (9) Киргизстан  | <input type="checkbox"/> (10) Монгол   |
| <input type="checkbox"/> (11) Мьянма     | <input type="checkbox"/> (12) Непал    |
| <input type="checkbox"/> (13) Нигер      | <input type="checkbox"/> (14) Пакистан |
| <input type="checkbox"/> (15) Филиппин   | <input type="checkbox"/> (16) ОХУ      |
| <input type="checkbox"/> (17) Шриланка   | <input type="checkbox"/> (18) Тайланд  |
| <input type="checkbox"/> (19) Үзбекистан | <input type="checkbox"/> (20) Вьетнам  |
| <input type="checkbox"/> (21) Камбожи    | <input type="checkbox"/> (22) Тонгимор |
| <input type="checkbox"/> (23) Бусад ( )  |  |

2. Таны хүйс?

- |                                      |                                      |
|--------------------------------------|--------------------------------------|
| <input type="checkbox"/> (1) Эрэгтэй | <input type="checkbox"/> (2) Эмэгтэй |
|--------------------------------------|--------------------------------------|

3. Та хэдэн настай бэ?

- |  |  |
|--|--|
| <input type="checkbox"/> (1) 9-с доош        | <input type="checkbox"/> (2) 10 нас ~ 18 нас |
| <input type="checkbox"/> (3) 19 нас ~ 30 нас | <input type="checkbox"/> (4) 31 нас ~ 40 нас |
| <input type="checkbox"/> (5) 41 нас ~ 50 нас | <input type="checkbox"/> (6) 51-с дээш       |

4. Та БНСУ-д хэр хугацааны турш амьдарсан бэ?

- |   |   |
|---|---|
| <input type="checkbox"/> (1) 6-с доош сар | <input type="checkbox"/> (2) 1-с доош жил |
| <input type="checkbox"/> (3) 1~2 жил      | <input type="checkbox"/> (4) 2~3 жил      |
| <input type="checkbox"/> (5) 3~4 жил      | <input type="checkbox"/> (6) 4~5 жил      |
| <input type="checkbox"/> (7) 5~6 жил      | <input type="checkbox"/> (8) 6~7 жил      |



8. БНСУ-д ажиллаж амьдрах хугацаандаа ямар нэгэн хохирол амсаж байсан уу? Тохирох хариултыг тэмдэглэнэ үү.

- |   |   |
|---|---|
| <input type="checkbox"/> (1) Цалингаа авч чадаагүй  | <input type="checkbox"/> (2) Хараал                         |
| <input type="checkbox"/> (3) Залилан                | <input type="checkbox"/> (4)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
| <input type="checkbox"/> (5) Бэлгийн хүчирхийлэл    | <input type="checkbox"/> (6) Биеэ үнэлэхийг шаардсан дарамт |
| <input type="checkbox"/> (7) Гэр бүлийн хүчирхийлэл | <input type="checkbox"/> (8) Зодож хүчирхийлэх              |
| <input type="checkbox"/> (9) Байхгүй                | <input type="checkbox"/> (10) Бусад                         |

9. Та яагаад хууль бус болсон бэ?

- (1) Визний хугацаа дууссан .
- (2) Визний хугацаа үлдсэн боловч үйлдвэрээсээ зугтсан .
- (3) Тогтсон тооноос хэтрэн ажлын байраа солисон.
- (4) Ажил солих 2 сарын хугацаа хэтэрсэн.
- (5) Ажлаас гарснаас хойш 1 сарын дотор ажил солих бүртгэлээ хийгээгүй.
- (6) Зөвшөөрөгдсөнөөс өөр компанид ажиллаж байгаад баригдсан. (9-1-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7) Солонгос хүнтэй суугаад салсан буюу тусдаа амьдарч байгаад визээ сунгуулж чадаагүй.
- (8) Бусад ( )

▶ 9-1. Оршин суух эрхээс гадуур зөвшөөрөлгүйгээр ажилласан уу? Тохирох хариултыг сонгоно уу.

- (1) Хөдөлмөрийн биржид бүртгэлтэй байгаа компаниас өөр газарт ажиллаж байгаад баригдсан.
- (2) Оюутны визтэй ажиллах зөвшөөрөл авалгүй ажиллаж байгаад баригдсан.
- (3)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ы виз болон бусад ажиллах эрхгүй визтэй ажиллаж байгаад баригдсан.
- (4) Бослого, улс төрийн эсэргүү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оролцсон хэмээн барисан.
- (5) Бусад ( )

10. Дүрвэгсэд юмуу тусгай хамгаалалтанд байгаа хүн л хариулна уу.

- (1) Дүрвэгчээр суурьших зөвшөөрөл гараагүй тул баригдсан.

\_\_ (2) Дүрвэгчээр суурьших тухай зөвшөөрөл гараагүй байхад барисан.

\_\_ (3) Баригдсаныхаа дараа дүрвэгчээр суурьших өргөдөл гаргасан.

### Б. Баривчилгааны явц

11. Та хэзээ баригдсан бэ?

200  он  сар  өдөр

12. Та хэдэн цагт баригдсан бэ?

\_\_ (1) 09 : 00 ~ 18 : 00 (9 цаг~18 цаг)

\_\_ (2) 18 : 00 ~ 00 : 00 (18 цаг~шөнийн 12 цаг)

\_\_ (3) 00 : 00 ~ 06 : 00 (Шөнийн 12 цаг~06 цаг)

\_\_ (4) 06 : 00 ~ 09 : 00 (06 цаг ~09 цаг)

13. Ямар хүн баривчилсан бэ?

\_\_ (1)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ны ажилтан \_\_ (2) Цагдаа

\_\_ (3) Бусад ( ) \_\_ (4) Мэдэхгүй

14.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хан ямар хувцастай байсан бэ?

\_\_ (1) Дүрэмт хувцастай байсан \_\_ (2) Баривчлах багийн хантаазтай байсан

\_\_ (3) Энгийн хувцастай байсан \_\_ (4) Мэдэхгүй

15. Та хаанаас баригдсан бэ?

\_\_ (1) Гэр, дотуур байр (амьдарч байсан газар)(15-1-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_\_ (2) Ажлын газар (үйлдвэр) (15-2-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_\_ (3) Гудамж, цэцэглэг, банк, автобусны буудал (16-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_\_ (4) Цайны газар, дэлгүүр (15-3-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_\_ (5) Албан байгууллага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 Хөдөлмөрийн бирж, Цагдаагийн газар )(15-4-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_\_ (5) Бусад ( )

※ Дараах нь баривчилгааны хэсгийнхэн таныг баривчлахдаа хууль дагаж мөрдсөн эсэх тухай асуулт юм.

16.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хан баривчлахаасаа өмнө үнэмлэхээ үзүүлэн, хаана ажилдаг тухайгаа мэдэгдэх үүрэгтэй.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хан үнэмлэхээ үзүүлсэн эсэх тухай хариулна уу.

\_\_ (1) Үнэмлэхээ үзүүлсэн.

\_\_ (2) Үнэмлэхээ үзүүлээгүй(17-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16-1.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хан хэзээ үнэмлэхээ үзүүлсэн бэ?

\_\_ (1) Баривчилахаас өмнө үзүүлсэн

\_\_ (2) Баривчилж байх явцад үзүүлсэн

\_\_ (3) Баривчилсныхаа дараа үзүүлсэн.

17.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хан хэрхэн яаж баривчилсан бэ?

\_\_ (1) Визээ үзүүл гэж шаардсан.

\_\_ (2) Харангуутаа бариж аван визээ үзүүлэхийг шаардсан.

\_\_ (3) Бусад ( )

18. Танд баривчлах бичиг зэрэг албан бичиг үзүүлэн баривчилсан уу?

\_\_ (1) Үзүүлсэн(18-1, 18-2-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_\_ (2) Үзүүлээгүй(19-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18-1. Баривчлах бичиг зэрэг албан бичгийн талаар тодорхой тайлбарласан уу?

\_\_ (1) Тайлбарласан. \_\_ (2) Тайлбайрлаагүй.

▶ 18-2. Танд хэзээ уг бичгийг үзүүлсэн бэ?

\_\_ (1) Баривчлахаас өмнө үзүүлсэн.

\_\_ (2) Баривчилж байх явцад үзүүлсэн.

\_\_ (3) Баривчилсны дараа машин дотор үзүүлсэн.

\_\_ (4) Түр хорих газарт очсоны дараа үзүүлсэн.



\_\_ (5) Үзүүлээгүй.

## В. Баривчилсны дараа шилжүүлэх болон байцаах явц

※ Баривчлагдсаны дараа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 руу шилжигдэх үйл явцын тухай асуулт.

19. Та баривчилгааны машин дотор хэдэн цаг байсан бэ?

\_\_ (1) 1 цагаас доош

\_\_ (2) 1 цаг ~ 2 цаг

\_\_ (3) 2 цаг ~ 3 цаг

\_\_ (4) 3 цаг ~ 4 цаг

\_\_ (5) 4 цаг ~ 5 цаг

\_\_ (6) 5 цагаас дээш

\_\_ (7) Бусад ( )

▶ 19-1 Баривчилгааны машинд баригдаад байж байхад ямар хүндрэлүүд учирсан бэ? Тохирох хариултыг бүгдийг тэмдэглэнэ үү.

\_\_ (1) Гав зүүлтэй байсан учраас хэцүү байсан.

\_\_ (2) Хоол идэж чадахгүй их өлссөн.

\_\_ (3) Ус ууж чадахгүй ам цангасан.

\_\_ (4) Бие засч чадахгүй хэцүү байсан.

\_\_ (5) Машин дотор халуун, эвгүй үнэр ханхлан хэцүү байсан.

\_\_ (6) Гар утсаар ярихыг хориглож хүндрэл учруулж байсан.

\_\_ (7) Тусламж хүссэн боловч тусламж үзүүлээгүй.

\_\_ (8) Бусад ( )

▶ 19-2. Таны баригдаж суусан машинд өөр хэдэн гадаад иргэн байсан бэ?

\_\_ (1) Байхгүй байсан.(ганцаараа байсан.)

\_\_ (2) 1 хүн ~ 5 хүн

\_\_ (3) 5 хүн ~ 10 хүн

\_\_ (4) 10-с дээш хүн

20.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хан таныг барьсныхаа дараа яасан тухай хариулна уу.

\_\_ (1) Баригдаад шууд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 руу ачигдсан.

\_\_ (2) Баривчилгааны машинаа дүүргэхийн тулд өөр хууль бус хүн барихаар явсан. Хүн баригдаж дүүртэл би машинд байсан.

\_\_ (3) Өөр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хүн хаана байгааг асууж шаардан хамт явсан.

21. Баривчилгааны хэсгийнхэн таныг барихдаа зодсон уу?

\_\_ (1) Тийм                      \_\_ (2) Үгүй(22-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21-1. Таныг яаж зодсон бэ? Тохирох хариултыг бүгдийг нь тэмдэглэнэ үү.

\_\_ (1) Гар хөлөөрөө өшиглөж зодсон.

\_\_ (2) Хэрэгслээр зодсон.

\_\_ (3) Олон хүн бүлэглэн зодсон.

22. Баривчлагдах явцад та бэртэж гэмтсэн үү?

\_\_ (1) Гэмтсэн                      \_\_ (2) Гэмтээгүй(23-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22-1. Гэмтэх үед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хан ямар арга хэмжээ авсан бэ?

\_\_ (1) Тэр дор нь анхны тусламж үзүүлсэн.

\_\_ (2) Түр хорих газарт ирсний дараа эмнэлгийн тусламж үзүүлсэн.

\_\_ (3) Эмнэлгийн тусламж авч чадаагүй.

\_\_ (4) Эмнэлгийн тусламж авахаар хүнд гэмтээгүй.

23.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хан таныг харааж зүхэн, арьс өнгөөр ялгаварлаж байсан уу?

\_\_ (1) Тийм                      \_\_ (2) Үгүй

24.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хан таныг ямар хэрэгсэл, төхөөрөмжөөр баривчилсан бэ?

\_\_ (1) Гав                      \_\_ (2) Олс                      \_\_ (3) Цагдаагийн бороохой

- \_\_ (4) Газан буу                      \_\_ (5) Цахилгаан бороохой                      \_\_ (6) Топ  
\_\_ (7) Бусад тоног хэрэгсэл (    )                      \_\_ (8) Юу ч ашиглаагүй (25-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24-1.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хны хэрэглэсэн гав зэрэг хэрэгсэлээс болон та гэмтсэн үү?

- \_\_ (1) Тийм                      \_\_ (2) Үгүй

25. Баривчилгааны машин дотор та гавтай байсан уу?

- \_\_ (1) Эхнээсээ эцсийг хүртэл гавтай байсан.  
\_\_ (2) Эхлээд гавлаад хэсэг хугацааны дараа тайлсан.  
\_\_ (3) Эхлээд гавлаагүй ба хэсэг хугацааны дараа гавласан.  
\_\_ (4) Гавлаагүй.(26-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25-1. Таныг хэдэн цагийн турш гавтай байлгасан бэ?

- \_\_ (1) 1-с доош цаг                      \_\_ (2) 1 цаг -2 цаг                      \_\_ (3) 2 цаг -3 цаг  
\_\_ (4) 3 цаг -4 цаг                      \_\_ (5) 4 цаг -5 цаг                      \_\_ (6) 5-с дээш цаг

26. Таныг ямар хүн баривчилсан бэ?

- \_\_ (1) Эрэгтэй                      \_\_ (2) Эмэгтэй                      \_\_ (3) Эрэгтэй, эмэгтэй

27. Танд баривчлагдах явцад болон баривчилгааны машин дотор хүйсний ялгаанаас болон хүндрэл учирсан уу?

- \_\_ (1) Тийм                      \_\_ (2) Үгүй (28-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27-1. Хүйсний ялгаанаас болон хэцүү байсан зүйлүүдээ тэмдэглэнэ үү.

- \_\_ (1) Эсрэг хүйсний баривчилгааны хэсгийнхэнд баригдахад гутамшигтай байсан.  
\_\_ (2) Удаан хугацааны турш эсрэг хүйснийхэнтэй давчуу машин дотор хоригдоход хэцүү байсан.  
\_\_ (3) Баривчилгааны машин дотор удаан хугацаагаар хоригдоод ариун цэврийн өрөө ч орж чадаагүй.  
\_\_ (4) Машинаас бугаад бусад хүмүүсийг харж байхад туугдан явахад маш шившигтэй

байсан.

\_\_ (5)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 хүмүүс хүйсээр ялгаварлан доромжлоход гутамшигтай байсан.

\_\_ (6) Баривчилгааны багийн хүмүүс биенд наалдан хүрэхэд хэцүү байсан.

\_\_ (7) Бусад ( )

28. Таныг мэдэхгүй ямар нэг бичиг баримт дээр гарын үсэг зур гэж шаардсан удаа бий юу?

\_\_ (1) Дарамт шахалтаас болон гарын үсэг зурсан.

\_\_ (2) Дарамт үзүүлсэн бөгөөд гарын үсэг зураагүй.

29. Та баривчилгааны хэсгийнхэнд өмгөөлөгч авах эрхтэй, өөрийгөө өмгөөлүүлэх эрхтэй тухайгаа хэлсэн үү?

\_\_ (1) Тийм

\_\_ (2) Үгүй

\* Доорх нь та баригдаад түр хорих газарт хоригдохоос өмнө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ны ажилтан танаас мэдүүлэг авах үйл явцтай холбогдох асуулт юм.

30. Баригдсаныхаа дараа түр хорих газарт очин мэдүүлэг өгөхөд хэлний бэрхшээл хэр гарсан бэ?

\_\_ (1) Солонгос хэлээр ярьж ойлголцоход төвөг учраагүй.

\_\_ (2) Орчуулагчийн тусламж авсан тул ямар нэг төвөг учраагүй.

\_\_ (3) Орчуулагч байсан ч ойлголцоход хэцүү байсан.

\_\_ (4) Орчуулагч байхгүй байсан бөгөөд бараг ойлголцоогүй.

► 30-1. Ямар хэлээр та мэдүүлэг өгсөн бэ?

\_\_ (1) Солонгос хэл \_\_ (2) Англи хэл

\_\_ (3) Эх хэл \_\_ (4) Бусад ( )

31. Таныг байцааж байхад орчуулагч байсан уу?

\_\_ (1) Тийм \_\_ (2) Үгүй(32-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31-1. Орчуулагч байсан бол ямар хүн байсан бэ?

\_\_ (1)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ны ажилтан \_\_ (2) Гадны орчуулагч

\_\_ (3) Түр хорих газарт хоригдож байсан гадаад хүн

32. Түр хорих газарт хэр хугацааны турш байсан бэ?

- (1) 1 долоо хонгоос доош       (2) 2 долоо хонгоос доош  
 (3) 3 долоо хонгоос доош       (4) 4 долоо хонгоос доош  
 (5) 1~2 сар       (6) 2~3 сар  
 (7) 3~6 сар       (8) 6 сар~1 жил  
 (9) 1-с дээш жил

\* (1), (2), (3), (4) дугаарыг сонгосон бол 33-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33. 1 сараас дээш хоригдож байгаа бол ямар шалтгааны улмаас бэ?

- (1) Онгоцны билет байхгүй тул  
 (2) Байрны барьцаа, цалингаа авч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 эзрэг мөнгөний асуудлаас болоод (33-1-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3) Иргэний болон эрүүгийн зарга үүсгэсэн, өргөдөл гаргасан эзрэг шалтгаанаас болоод (33-1-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4) Дүрвэгчээр өргөдөл гаргасан байгаагаас.  
 (5) Цүнх зэрэг хувийн эд материалаа авч чадаагүй байгаагаас (33-1-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6)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д орон эмчлүүлж байгаа юмуу нөхөн төлбөр зэргээ авч чадаагүй байгаагаас (33-1-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7) Эх орон руугаа буцах боломжгүй учраас

▶ 33-1 Байрны барьцаа, авч чадаагүй цалин, шүүхэд заргалдаж байгаа,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д орсон эзрэг асуудлаа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ны ажилтанд мэдэгдэж туслалцаа хүссэн үү?

- (1) Туслалцаа хүссэн бөгөөд хүлээн авсан. (33-2-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2) Туслалцаа хүссэн боловч хүлээж аваагүй. (34-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3) Туслалцаа хүсээгүй(34-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33-2. Туслалцаа хүсээд гарсан хариуд нь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на уу?

- (1) Маш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на       (2) Бага зэрэг л тус болсон  
 (3) Тиймэрхүү       (4) Тус болоогүй.  
 (5) Огтхон ч тус болоогүй.

Г. Түр хорих газар руу шилжүүлэх болон хорих үйл явц

34. Таныг Хорих өрөөнд оруулахад яаж шалгасан бэ?

- \_\_ (1) Хувцастай байхад шалгасан.                      \_\_ (2) Зөвхөн дотуур хувцас өмсүүлэн шалгасан.  
 \_\_ (3) Шалдлуулан шалгасан.                              \_\_ (4) Бусад

35. Таны биеийг шалгаж байх явцад биен дээрх шарх сорвийг нотолгоо болгох үүднээс зургийг нь авсан уу?

- \_\_ (1) Тийм    \_\_ (2) Үгүй (36-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на уу)

▶ 35-1 Таны биеийг шалгахдаа ямар аргаар нотлох баримт үлдээсэн бэ?

- \_\_ (1) Зураг    \_\_ (2) Бие шалгасан тухай тэмдэглэл  
 \_\_ (3) Эмчийн магадлагаа                              \_\_ (4) Бусад аргаар

36.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наас түр хорих газар руу шилжүүлэх явцад гав зүүсэн эсэхтэй холбогдох асуултанд тохирох хариултыг тэмдэглэнэ үү.

- \_\_ (1) Ганцаараа гавлагдан явсан.  
 \_\_ (2) Нэг гаваар 2 хүнийг гавласан.  
 \_\_ (3) Хоёр гарыг хоёр өөр хүнтэй гавлан урт цуваа болон явсан.  
 \_\_ (4) Гавлалгүй түр хорих газар руу шилжүүлсэн.

37. Түр хорих газар, эмнэлэг, шүүх зэрэг гадны байгууллага руу таныг явахад олон хүний өмнө гавтай байлгасан уу?

- \_\_ (1) Тийм    \_\_ (2) Үгүй

Д. Өргөдөл

38. Та баригдан түр хорих газарт ороход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ны ажилтан танд таны эдлэх ёстой эрхийн талаар танилцуулсан уу? Тохирох хариултыг бүгдийг нь тэмдэглэнэ үү.

- (1) Төрөл садан гэр бүлийнхэнтэйгээ уулзах эрх  
 (2) Өмгөөлөгч юмуу өөрийн орны консултай уулзан туслалцаа хүсэх эрх  
 (3) Баривчлагдсантай холбогдон гомдол гаргах эрх  
 (4) Гадаад иргэдийг түр хорих газарт зөрчигдөж буй хүний эрхийн талаар Улсын Хүний Эрхийн Комисст өргөдөл гаргах эрх  
 (5) Гадагшаа утсаар ярих юмуу захиа бичих эрх

39. Хоригдсон, албадан буцаагдсан зэрэгтэй холбогдон гомдол гаргах эрхтэй гэдгээ мэдэх үү?

- (1) Тийм  (2) Үгүй

40. Улсын Хүний Эрхийн Комисст өргөдөл гарган эрхээ хамгаалуулах эрхтэйгээ та мэдэх үү?

- (1) Тийм  (2) Үгүй

- Баярлалаа -

## Noqonuniy chet elliklarni nazorat qilish sharoitlarini aniqlash so'rovnoma 2009

우즈백어

Assalomu alaykum!

Davlat inson huquqlarini himoya qilish Komissiyasi - davlat muassasasi hisoblanib, Koreya hududida istiqomat qilayotgan nafaqat koreys fuqarolarini, balki chet elliklarning ham huquqlarini himoya qilishda bor kuchini ishga solmoqda.

Hozirgi paytda Komissiya noqonuniy chet elliklarni qo'lga olish jarayonidagi inson huquqlariga rioya qilinishi to'g'risida so'rovnoma asosida izlanishlar olib bormoqda. Bu izlanishlar natijasida biz chet elliklarning inson huquqlarini takomillashtirish loyihalarini tuzishni rejalashtirmoqdamiz. Mazkur so'rovnoma yangi loyihalarni tuzishda qimmatbaho manbaa sifatida foydalaniladi.

Kelajakda sizning javoblaringiz statistikada qo'llanilayotganligi sababli, shaxsiylikingiz maxfiy saqlanishiga kafolat beramiz. Savollarga samimiy javob berishingizni iltimos qilamiz. Bundan tashqari kamsitish yoki huquqlar poymol qilinishi borasida biror fikrlaringiz bo'lsa, so'rovnomani olib borayotgan xodimga murojat eting. So'rovnoma tugagandan keyin sizning fikr va mulohazalaringiz ham alohida tahlil qilamiz. Qimmatbaho vaqtingizni ajratganingiz uchun minnatdorchilik bildiramiz.

Iyul oyi 2009 yil

Davlat Inson huquqlarini himoya qilish Komissiyasi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100-842 Seul shahri, Chungu, Iljiro-1-Ga 16, Kimsegi binosi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가 16 번지 금세기빌딩

Savollarga javob berish qoidasi: “\_\_” ichiga ✓ belgisini qo'ying, ‘□’ ichiga raqamni, ‘( )’ ichiga esa harf qo'ying. Savolga javob berishga qiynalsangiz, o'z fikringizni yozing.

Mazkur so'rovnoma bo'yicha savollaringiz bo'lsa, qo'yidagi manzilga murojaat qiling:  
Davlat inson huquqlarini himoya qilish Komissiyasi, diskriminatsiya bo'limi.  
Tel) 02-2125-9875, 9656 Faks) 02-2125-9658



## A. Shaxsiy ma'lumotlar

1. 1. Qaysi davlat fuqarosiga tegishlisiz?

- |  |  |
|--|--|
| <input type="checkbox"/> (1) Bangladesh        | <input type="checkbox"/> (2) Xitoy       |
| <input type="checkbox"/> (3) Hindiston         | <input type="checkbox"/> (4) Indoneziya  |
| <input type="checkbox"/> (5) Eron              | <input type="checkbox"/> (6) Gana        |
| <input type="checkbox"/> (7) Yaponiya          | <input type="checkbox"/> (8) Qozog'iston |
| <input type="checkbox"/> (9) Qirg'iziston      | <input type="checkbox"/> (10) Mongoliya  |
| <input type="checkbox"/> (11) Myanmar          | <input type="checkbox"/> (12) Nepal      |
| <input type="checkbox"/> (13) Nigeriya         | <input type="checkbox"/> (14) Pokiston   |
| <input type="checkbox"/> (15) Filippin         | <input type="checkbox"/> (16) Rossiya    |
| <input type="checkbox"/> (17) Shrilanka        | <input type="checkbox"/> (18) Tailand    |
| <input type="checkbox"/> (19) O'zbekiston      | <input type="checkbox"/> (20) Vyetnam    |
| <input type="checkbox"/> (21) Kambodja         | <input type="checkbox"/> (22) Timor      |
| <input type="checkbox"/> (23) va boshqalar ( ) |  |

2. Jinsingiz

- (1) erkak       (2) ayol

3. Yoshingiz

- |   |   |
|---|---|
| <input type="checkbox"/> (1) 9 yoshdan past | <input type="checkbox"/> (2) 10~18yosh        |
| <input type="checkbox"/> (3) 19~30 yosh     | <input type="checkbox"/> (4) 31~40 yosh       |
| <input type="checkbox"/> (5) 41~50yosh      | <input type="checkbox"/> (6) 51yoshdan yuqori |

4. Koreyada qancha vaqt davomida istiqomat qilmoqdasiz?

- |   |   |
|---|---|
| <input type="checkbox"/> (1) 6oydan kam | <input type="checkbox"/> (2) 1yildan kam      |
| <input type="checkbox"/> (3) 1~2yil     | <input type="checkbox"/> (4) 2~3yil           |
| <input type="checkbox"/> (5) 3~4yil     | <input type="checkbox"/> (6) 4~5yil           |
| <input type="checkbox"/> (7) 5~6yil     | <input type="checkbox"/> (8) 6~7yil           |
| <input type="checkbox"/> (9) 7~8yil     | <input type="checkbox"/> (10) 8~9yil          |
| <input type="checkbox"/> (11) 9~10yil   | <input type="checkbox"/> (12) 10yildan yuqori |

5. Qaysi viza bilan Koreyaga tashrif buyurgansiz?

- \_\_ (1) C2, C3 qisqa muddatli                      \_\_ (2) D2 o'qish  
 \_\_ (3) D3 stajor-ishchi                              \_\_ (4) F1 tashrif, birga yashash  
 \_\_ (5) F2 koreys fuqarosi yoki yashash guvohnomasiga ega bo'lgan shaxsning turmush o'rtog'i  
 \_\_ (6) F4 hamyurtdosh                              \_\_ (7) E6 san'at dasturi asosida  
 \_\_ (8) E9 mutaxassisligi bo'lmagan ishchi      \_\_ (9) E10 dengizchi  
 \_\_ (10) boshqa (                                      )

6. Qo'lga olinishdan oldin nima ish qilgansiz?(tegishli bo'lgan variantlarni belgilang).

- \_\_ (1) zavod ishchisi                                  \_\_ (2) qurilishda("qora ishchi")  
 \_\_ (3) baliqchilik                                      \_\_ (4) qishloq xo'jaligi/o'rmonchilik sohasida  
 \_\_ (5) xizmat ko'rsatish doirasida, oshxonada: oshpaz, farrosh, ofitsiant  
 \_\_ (6) uy xizmatchisi, enaga, hamshira  
 \_\_ (7) ko'ngilochar joylarda mehmonlarga xizmat ko'rsatish      \_\_ (8) talaba  
 \_\_ (9) davolanish mobaynida(sanoatda jarohat, avtohalokat, kasallik)  
 \_\_ (10) ishsiz    \_\_ (11) boshqa (                                      )

7. Koreya hududida qarindoshlaringiz bormi?

- \_\_ (1) ha (7-1 savolga o'ting)                      \_\_ (2) yo'q(8 savolga o'ting)

▶ 7-1. Koreya hududida qarindoshlaringiz bormi? (tegishli variantlarni belgilang)

- \_\_ (1) voyaga yetmagan farzand                      \_\_ (2) voyaga yetgan farzand  
 \_\_ (3) Koreya fuqarosiz turmush o'rtoq      \_\_ (4) Koreya fuqarosi bo'lmagan turmush o'rtoq  
 \_\_ (5) aka-uka, opa-singil                              \_\_ (6) ota-ona  
 \_\_ (7) yo'q    \_\_ (8) boshqa (                                      )

8. Koreyada ishlayotib qanday zarar/ziyon ko'rgansiz? (tegishli variantlarni belgilang)

- \_\_ (1) oylik maoshining kechiktirilishi              \_\_ (2) zo'ravonlik  
 \_\_ (3) firibgarlik    \_\_ (4) ishlab chiqarishda jarohat  
 \_\_ (5) jinsiy zo'ravonlik                                  \_\_ (6) majburiy fohishabozlik  
 \_\_ (7) oilaviy zo'ravonlik                              \_\_ (8) farqlanish(diskriminatsiya)  
 \_\_ (9) boshqa(    )      \_\_ (10) yo'q

9. Sizni noqonuniylikka olib kelgan sabab nima?

- \_\_ (1) viza muddatining tugashi.





- (1) do'kon yoki oshxona ho'jayinidan ruhsat olib
- (2) do'kon yoki oshxona ho'jayinidan ruhsat olmay
- (3) umuman ruhsatga ega bo'lmay kelishdi
- (4) bilmayman.

▶ 15-4. Davlat muassasasi (immigratsiya boshqarmasi, ish bilan ta'minlash markazi, polisiya mahkamasi)da qay tarzda qo'lga olingansiz?

- (1) Muassasaga jabr ko'rganligim to'g'risida ariza berishga borganimda qo'lga olindim .
- (2) guvohlik ko'rsatmalarini berishga borganimda, noqonuniyligim fosh etilib, qo'lga olindim.
- (3) immigratsiya boshqarmasiga viza arizasini berishga borganimda qo'lga olindim.
- (4) kimdir ustimdan ariza berganligi sababli qo'lga olindim.
- (5) boshqa ( )

※Immigratsiya xodimi qo'lga olish jarayonida qonun-qoidalarga rioya qilganligini tekshirish to'g'risida savollar.

16. Immigratsiya xodimi qo'lga olishdan oldin shaxsiylik guvohnomasini ko'rsatayotib, tegishli bo'lim va shaxsiylikni aytish- majburiyati hisoblanadi. Xodimning shaxsiylik guvohnomasini taqdim etish bilan bog'liq tegishli variantni belgilang.

- (1) shaxsiylik guvohnomasini ko'rsatdi.
- (2) shaxsiylik guvohnomasini ko'rsatdi.(17savolga o'ting)

▶ 16-1. Immigratsiya xodimishaxsiylik guvohnomasini qachon ko'rsatdi?

- (1) qo'lga olishdan oldin.     (2) qo'lga olish mobaynida.
- (3) qo'lga olgandan keyin.

17. Qo'lga olish jarayonida immigratsiya hodimi qanday harakatlar qildi?

- (1) vizamni ko'rsatishimni talab qildi.
- (2) meni ko'rib, jismoniy kuch ishlatib vizamni talab qildi..
- (3) boshqa( )

18. Immigratsiya xodimi "Muddatdan oldingi orderni" ko'rsatdimi?

- (1) ko'rsatdi (18-1, 18-2savolga o'ting)     (2) ko'rsatmadi.(19savolga o'ting)

▶ 18-1. Immigratsiya xodimi "Muddatdan oldingi order" mazmunini tushuntirdimi?

\_\_ (1) tushuntirdi. \_\_ (2) tushuntirmadi.

▶ 18-2. Immigratsiya xodimi hujjatlarni qachon taqdim etdi?

\_\_ (1) qo'lga olishdan oldin.

\_\_ (2) qo'lg aolish vaqtida.

\_\_ (3) qo'lga olgandan keyin mashinada.

\_\_ (4) qamoqxonada.

\_\_ (5) taqdim etmadi.

### C. Qo'lga olgandan so'ng ko'chirish va tergov jarayoni

※ Qo'lga olingandan so'ng immigratsiya boshqarmasiga olib ketish jarayoni.

19. Maxsus mashinada qancha vaqt davomida bo'ldingiz?

\_\_ (1) 1soat davomida

\_\_ (2) 1- 2 soat

\_\_ (3) 2-3 soat

\_\_ (4) 3-4 soat

\_\_ (5) 4-5 soat

\_\_ (6) 5 soatdan ortiq

\_\_ (7) boshqa ( )

▶ 19-1 Maxsus mashinada o'tirganingizda qanday noqulayliklarni his qildingiz?(tegishli variantlarni belgilang)

\_\_ (1) qo'l kishanlarida bo'lganligim uchun qiynaldim.

\_\_ (2) ovqatlana olomaganligim uchun qornim ochdi.

\_\_ (3) suvsizlikdan qiynaldim.

\_\_ (4) hojatga borolmay qiynaldim.

\_\_ (5) mashinani ichi issiq bo'lib, nohushbuy hid kelgani uchun qiynaldim.

\_\_ (6) uyali telefonni ishlatish qiyin edi.

\_\_ (7) yordam suraganimda, yordam berishmadi..

\_\_ (8) boshqa( )

▶ 19-2. Sizni mashinaga qamaganda, ichida boshqa chet elliklar ham bor edimi

\_\_ (1) yo'q(yolg'iz edim)

- \_\_ (2) 1-5kishi  
\_\_ (3) 5-10kishi  
\_\_ (4) 10kishidan ortiq

20. Hibsga olingandan so'nggi holat to'g'risidagi tegishli variantlarni belgilang.

- \_\_ (1) qo'lga olingandan so'ng to'g'ri immigratsiya boshqarmasiga olib kelishdi.  
\_\_ (2) maxsus mashina odamlar bilan to'lmaguncha, mashinada kutib utirdim.  
\_\_ (3) boshqa noqonuniy chet elliklar joyini aytishni talab qilib, boshqa korxonada tomon yo'l oldik.

21. Qo'lga olinganingizda xodim sizga kuch ishlatdimi?

- \_\_ (1) ha                      \_\_ (2) yo'q (22savolga o'ting)

▶ 21-1. Qay tarzda sizga nisbatan kuch ishlatildi? □ tegishli variantlarni belgilang.

- \_\_ (1) oyoq va qo'llardan urishdi                      \_\_ (2) maxsus moslamalar bilan urishdi.  
\_\_ (3) o'rab olinib bir necha odamlar qurshovida kaltaklandim.

22. Qo'lga olish jarayonida sizga jarohat yetkazildimi?

- \_\_ (1) ha                      \_\_ (2) yo'q (23savolga o'ting)

▶ 22-1. Jarohat olganingizdan keyin qanday chora tadbirlar ko'rildi?

- \_\_ (1) qo'lga olinganimda tez tibbiy yordam chaqirishdi.  
\_\_ (2) qamoqxonaga kelganimda davolanish oldim.  
\_\_ (3) davolanish ololmadim.  
\_\_ (4) davolanadigan darajadagi jarohat emas edi.

23. Immigratsiya xodimlari tominidan qo'lga olinganingizda sizni haqoratlash, qo'pol so'z hamda shaxsiyatingizga tegadigan diskriminasiya harakatlarini qo'lladimi?

- \_\_ (1) ha                      \_\_ (2) yo'q

24. Qo'lga olish jarayonida qanday qurollardan foydalanildi? (tegishli variantlarni belgilang).

- \_\_ (1) qo'l kishanlari                      \_\_ (2) arqon)                      \_\_ (3) polisiya tayog'i                      \_\_ (4) gaz baloni  
\_\_ (5) elektr tayoq, to'r                      \_\_ (6) Suv pistoleti                      \_\_ (7) boshqa (                      )  
\_\_ (8) hech narsadan foydalanilmadi (25 savolga o'ting)

► 24-1. Xodimning foydalangan moslamalaridan ziyon ko'rdingizmi?

\_\_ (1) ha                      \_\_ (2) yo'q

25. Maxsus mashina ichida qo'l kishanidan foydalanilganmi?

- \_\_ (1) boshidan oxirigacha foydalanildi.  
 \_\_ (2) boshida kishan taqib, keyin yechib qo'yishdi.  
 \_\_ (3) boshida foydalanmasdan, keyin taqildi.  
 \_\_ (4) kishanlardan foydalanilmagan. (26 savolga o'ting).

► 25-1. Qo'l kishanlari qancha vaqt taqildi?

- \_\_ (1) 1soat ichida              \_\_ (2) 1-2 soat              \_\_ (3) 2-3soat  
 \_\_ (4) 3-4soat                  \_\_ (5) 4-5soat              \_\_ (6) 5soatdan ortiq

26. Immigratsiya xodimi jinsi?

- \_\_ (1) erkak                  \_\_ (2) ayol                  \_\_ (3) erkak va ayol

27. qo'lg aolish jarayonida uyat yok isharmandalik hissi tug'ildimi?

- \_\_ (1) ha                      \_\_ (2) yo'q (28savolga o'ting)

► 27-1. Uyat yoki sharmandalikni his qilishingizning sababi nima edi? Tegishli variantlarni belgilang.

- \_\_ (1) qarama qarshi jinsli xodim tomonidan ushlanganligim tufayli uyat hissiyoti tug'ildi.  
 \_\_ (2) qarama qarshi jinsli shaxslar bilan uzoq vaqt davomida mashinada bo'lganlikdan uyaldim .  
 \_\_ (3) uzoq vaqt davomida mashinaga qamab qo'yib hojatga borolmaganlikdan uyaldim.  
 \_\_ (4) mashinadan tushgandan so'ng, boshqa odamlar bilan birga olib ketayotganini boshqalarko'rganidan uyaldim.  
 \_\_ (5) immigratsiya xodimlari jinsiy harakterga ega bo'lgan hazilni qilganidan uyaldim .  
 \_\_ (6) immigratsiya xodimi tanamni ushlaganidan uyaldim.  
 \_\_ (7) boshqa (                      )

28. Hujjatga mazmunini bilmagan imzo chekishga zo'rlashganmi?

- \_\_ (1) zo'rlagashdi, imzo chekdim.              \_\_ (2) zo'rlagani uchun inkor etdim.

29. Xodim sizga advokat kabi boshqa shaxslarning yordamini olish hamda o'zini himoya qilish huquqi borligi to'grisida aytganmi?

- \_\_ (1) ha                      \_\_ (2) yo'q



※ Q' o'yidagi savollar hibsga olgandan so'ng, immigratsiya xodimi bilan yuzma-yuz o'tirib, tergov olib borilishi jarayoniga tegishlidir.

30. Tergov jarayonida muloqotda qiyinchilik his qildingizmi?

- (1) his qilmadim.  
 (2) tarjimon bo'lganligi sababli qiynalmadim.  
 (3) tarjimon bo'lishiga qaramay, muloqotda qiyinchilik his qildim.  
 (4) tarjimon yo'qligi sababli muloqot qilishni iloji yo'q edi.

▶ 30-1. Tergov jarayonida qaysi tilda muloqot qildingiz?

- (1) koreys tilida  (2) ingliz tilida  (3) o'zbek tilida  (4) boshqa( )

31. Tergov jarayonida tarjimon bor edimi?

- (1) ha  (2) yo'q (32savolga o'ting)

▶ 31-1. Sizga tarjima qilgan tarjimon kim edi?

- (1) immigratsiya xodimi  (2) taklif qilingan chet ellik tarjimon  
 (3) qamoqxonadagi chet ellik

32. Qancha muddat davomida qamoqxonada bo'ldingiz?

- (1) 1 haftadan kam  (2) 2haftadan kam  
 (3) 3haftadan kam  (4) 4haftadan kam  
 (5) 1~2oy  (6) 2~3oy  
 (7) 3~6oy  (8) 6oydan 1yilgacha  
 (9) 1yidan ortiq

\* (1), (2), (3), (4) javobni tanlaganlar 33 savolga o'ting.

33. Qamoqxonada uzoq vaqt bo'lishingizning sababi nimada?

- (1) bilet sotib olishga mablag' yo'qligi  
 (2) garovga qo'yilgan uy puli, oylik kabi shaxsiy mulk masalalari yechilmaganligi (33-1 savolga o'ting)  
 (3) berilgan ariza va shikoyatlar yuzasidan sud prossesi jarayonida ekanligi (33-1 savolga o'ting)  
 (4) qochoqlik arizasini berish jarayonida ekanligi (33-1 savolga o'ting)  
 (5) sumka va shaxsiy buyumlarimni qaytarib ololmaganligim (33-1 savolga o'ting)  
 (6) sanoatda jarohat bo'yicha muolajalar hamda kompensasiyani kutish davrida bo'lganligi (33-1 savolga o'ting)  
 (7) uyga qaytolmaslik sababi borligi uchun

- 33-1 Immigratsiya xodimidan uy puli, ish haqi, sud jarayoni va sanoatdagi jarohat yuzasidan yordam so'raganmisiz?  
 \_\_ (1) yordam so'radim, yordam berishdi (33-2 savolga o'ting)  
 \_\_ (2) yordam so'radi, inkor etishdi (34 savolga o'ting)  
 \_\_ (3) yordamga murojat qilmadi (34 savolga o'ting)
- 33-2. Talabingiz natijasi bilan qoniqdingizmi?  
 \_\_ (1) ha, juda yordam berishdi.      \_\_ (2) ozgina yordam berishdi.  
 \_\_ (3) shunchaki                      \_\_ (4) foydasi tegmadi.  
 \_\_ (5) umuman foydasi tegmadi.

#### D. Qamoqxonaga ko'chirish va u yerdagi hayot

34. Qamoqxonaga kelganingiz bilanoq, qanday holda tibbiy tekshiruvdan o'tdingiz?  
 \_\_ (1) kiyimda \_\_ (2) ichki kiyimda \_\_ (3) yalang'och holda \_\_ (4) va boshqa
35. Tibbiy ko'rikdan o'tish jarayonida tanangizdagi jarohatlarni dalil sifatida qo'llash uchun rentgenga tushirishni iltimos qilganmisiz?  
 \_\_ (1) ha \_\_ (2) yo'q (36savolga o'ting)
- 35-1 Dalillar qay holatda saqlanib qolgan?  
 \_\_ (1) rentgen sur'atlari                      \_\_ (2) tekshirish bo'yicha qaydnomalar  
 \_\_ (3) shifokor diagnozi                      \_\_ (4) boshqa
36. Immigratsiya boshqarmasidan qamoqxonaga ko'chirish jarayonida qo'l kishanlari qay holatda ishlatildi? Tegishli variantlarni belgilang.  
 \_\_ (1) yolg'iz o'zingga kishanlarni taqib ko'chirdi.  
 \_\_ (2) bir qo'limdagi kishanni boshqa odamga taqib ko'chirdi.  
 \_\_ (3) ikki qo'limdagi kishanni ikki tarafdagi odamlarga taqib, ko'chirdi.  
 \_\_ (4) kishanlarni taqmasdan ko'chirdi..

37. Xalq oldida qamoqxonaga, kasalxonaga, sudga qul kishanlari taqilgan holda olib borilgan holatlar bo'lganmi?

\_\_ (1) ha                      \_\_ (2) yo'q

### E. Ariza berish

38. Qamoqxonaga kelishingizda immigratsiya xodimlaridan o'z huquqlaringiz haqida ma'lumotlar oldingizmi? Tegishli javoblarni tanlang..

- \_\_ (1) oila a'zolarim va qarindoshlarim bilan uchrashish huquqi
- \_\_ (2) advokat yoki tegishli davlat konsuli bilan uchrashish yoki shbu shaxlarga murajaat etish huquqi
- \_\_ (3) hibsga olinganlik haqidagi norozilik arizasini berish huquqi
- \_\_ (4) qamoqxonada inson huquqlari poymol qilinishi haqida ariza berish huquqi
- \_\_ (5) xat va qo'ng'iroq qilish huquqi

39. Majburiy deportatsiya yoki qamoqqa olinish haqidagi norozilik bo'yicha ariza berish huquqi borligini bilasizmi?

\_\_ (1) ha                      \_\_ (2) yo'q

40. Inson huquqlarini himoya qilish komissiyasiga ariza berish huquqqi borligini bilasizmi?

\_\_ (1) ha                      \_\_ (2) yo'q

- Rahmat. -

## แบบสอบถามด้านการ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ประจำปี 2009

한국어

สวัสดีค่ะ?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ได้ทำการก่อตั้งสถาบัน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ขึ้นและมีความพยายามที่จะพัฒนา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ทั้งหมดให้เกิดความเจริญก้าวหน้ายิ่งขึ้นไปอีก และการคุ้มครองนี้ไม่ใช่เพียงแค่คุ้มครองคนเกาหลีอย่างเดียวยุทธเท่านั้นหมายรวมถึงบุคคลธรรมดาและ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ด้วย

ในครั้งนี้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การของเราต้องเผชิญกับขั้นตอนของการควบคุมแรง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 ดังนั้นจึงจำเป็นต้องมีความเข้าใจสภาพข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ให้มากยิ่งขึ้น เพราะฉะนั้น

ผลลัพธ์ข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แบบสำรวจขั้นพื้นฐานนี้ จะนำมาเพื่อ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คนต่างชาติ อีกทั้งทา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ยังมี การเตรียมแผ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แก้ไขไว้ล่วงหน้าอีกด้วย ดังนั้น

เนื้อหาจากคำตอบของท่านจึงจำเป็นอย่างมาก เนื่องจากเนื้อหาของคำตอบของท่านจะเป็นปัจจัยในการใช้ประโยชน์ เพื่อนำไปสู่การปรับปรุงนโยบายให้ดียิ่งขึ้นต่อไป

และเราขอรับรองว่าจะเก็บการตอบคำถามในแบบสอบถามนี้ทั้งหมดไว้เป็นความลับและจะไม่มีการนำไปเปิดเผยโดยเด็ดขาด ดังนั้น

ทางเราจึงขอความกรุณาทุกท่านให้ช่วยทำแบบสอบถามฉบับนี้ด้วยความจริงใจและเที่ยงตรง โดยมีต้องเกรงกลัวกับสิ่งใดๆทั้งสิ้น

สุดท้ายนี้ เราขอกล่าวคำขอบคุณทุกท่าน ที่สละเวลาอันมีค่า เข้าร่วมทำแบบสอบถามฉบับนี้ ขอพระคุณมากค่ะ

กรกฎาคม ค.ศ. 2009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

อาคารคิมเชกึ เลขที่16 ซิลจิโร 1กา จุงกุง กรุงโซล รหัสไปรษณีย์ 100-842

“Óµí°Ó¶ÒÁ ·eÒ¹ÈÒÁÒÃ¶·Òà×èÏ§ÈÁÒÁ ✓ Å§ã¹æÏ§ ‘\_’ÈÃ×Í;ÃÍ;ÈÁÒÁaÅeÅ§ã¹æÏ§  
‘□’ÈÃ×Í ( )ÍÁeÒ§ã ÍÁeÒ§È¹Öe§ã¹é ÈÒ;ÒÓ¶ÒÁã¹æÏ§·ÓãÈe·eÒ¹æeÒÁ¹ÒÓµí°ÁÒ;  
ÒÓµí°Öe·eÒ¹Ò Í;ã»ç¹ÒÓµí°ãÃ;ÈÈÁÒÃ¶·Öe”ĐæeÖÁ¹ Å§ã¹æÏ§ÒÓµí°ã¹æÏ§;Ñ¹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จากแบบสอบถามฉบับนี้ หากท่านมีข้อสงสัยอย่างอื่น สามารถติดต่อสอบถามได้ที่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 แผนก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โทร.) 02-2125-9875, 9656 แฟกซ์.) 02-  
2125-9658

## A. ข้อมูลส่วนตัว

1. ท่านเป็นคนประเทศใด ?

- |   |  |
|---|--|
| <input type="checkbox"/> (1) บังกลาเทศ                    | <input type="checkbox"/> (2) จีน             |
| <input type="checkbox"/> (3) อินเดีย                      | <input type="checkbox"/> (4) อินโดนีเซีย     |
| <input type="checkbox"/> (5) อิหร่าน                      | <input type="checkbox"/> (6) กานา            |
| <input type="checkbox"/> (7) ญี่ปุ่น                      | <input type="checkbox"/> (8) คาซัคสถาน       |
| <input type="checkbox"/> (9) คีร์กีซสถาน                  | <input type="checkbox"/> (10) มองโกล         |
| <input type="checkbox"/> (11) พม่า                        | <input type="checkbox"/> (12) เนปาล          |
| <input type="checkbox"/> (13) ไนจีเรีย                    | <input type="checkbox"/> (14) ปากีสถาน       |
| <input type="checkbox"/> (15) ฟิลิปปินส์                  | <input type="checkbox"/> (16) รัสเซีย        |
| <input type="checkbox"/> (17) ศรีลังกา                    | <input type="checkbox"/> (18) ไทย            |
| <input type="checkbox"/> (19) อุซเบกิสถาน                 | <input type="checkbox"/> (20) เวียดนาม       |
| <input type="checkbox"/> (21) คัมโบเดีย                   | <input type="checkbox"/> (22) ตีมอร์ตะวันออก |
| <input type="checkbox"/> (23) อื่นๆ(                    ) |  |

2. ท่านเพศใด?

- |                                  |                                   |
|----------------------------------|-----------------------------------|
| <input type="checkbox"/> (1) ชาย | <input type="checkbox"/> (2) หญิง |
|----------------------------------|-----------------------------------|

3. ท่านอายุเท่าไร?

- |  |  |
|--|--|
| <input type="checkbox"/> (1) น้อยกว่า 9 ปี | <input type="checkbox"/> (2) 10~18 ปี      |
| <input type="checkbox"/> (3) 19~30 ปี      | <input type="checkbox"/> (4) 31~40 ปี      |
| <input type="checkbox"/> (5) 41~50 ปี      | <input type="checkbox"/> (6) มากกว่า 51 ปี |

4. ท่าน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เป็นเวลาเท่าใด?

- |   |   |
|---|---|
| <input type="checkbox"/> (1) น้อยกว่า 6 เดือน | <input type="checkbox"/> (2) น้อยกว่า 1 ปี  |
| <input type="checkbox"/> (3) 1~2 ปี           | <input type="checkbox"/> (4) 2~3 ปี         |
| <input type="checkbox"/> (5) 3~4 ปี           | <input type="checkbox"/> (6) 4~5 ปี         |
| <input type="checkbox"/> (7) 5~6 ปี           | <input type="checkbox"/> (8) 6~7 ปี         |
| <input type="checkbox"/> (9) 7~8 ปี           | <input type="checkbox"/> (10) 8~9 ปี        |
| <input type="checkbox"/> (11) 9~10 ปี         | <input type="checkbox"/> (12) มากกว่า 10 ปี |

5. ในช่วงที่ท่าน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ท่านมีวีซ่าชนิดใด?

- (1) C2, C3 วีซ่าท่องเที่ยวหรือระยะสั้น
- (2) D2 วีซ่านักศึกษา
- (3) D3 วีซ่าฝึกอบรมงา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 (4) F1 วีซ่าเยี่ยมเยียน
- (5) F2 วีซ่าแต่งงานกับคู่สมรสเกาหลีหรือวีซ่าพำนักอาศัย
- (6) F4 วีซ่าคนที่มีเชื้อสายเกาหลี
- (7) E6 วีซ่าแสดงศิลปะ
- (8) E9 วีซ่าแรงงาน
- (9) E10 วีซ่าลูกเรือ
- (10) อื่นๆ ( )

6. ก่อนที่ท่านจะถูกจับกุมตัว ท่านทำงานอะไรบ้าง? 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ได้ทั้งหมด

- (1) แรงงานในโรงงาน
- (2) แรงงานก่อสร้าง  
(หรือเรียกว่า "กรรมกร")
- (3) แรงงานทำประมง
- (4) แรงงานทำเกษตรหรือปศุสัตว์
- (5) งานบริการ - ร้านอาหาร (งานครัว, ทำความสะอาด, เลิร์ฟ)
- (6) ดูแลบ้าน,  
งานพยาบาล
- (7) ธุรกิจின்றนาการ ผู้มีหน้าที่ต้อนรับ
- (8) นักศึกษา
- (9) อยู่ในช่วงรักษาตัว (อุบัติเหตุในที่ทำงาน, อุบัติเหตุบนท้องถนน, ป่วยเป็นโรค เป็นต้น)
- (10) ว่างงาน
- (11) อื่นๆ ( )

7. ปัจจุบัน คน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ท่านยัง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ใช่หรือไม่?

- (1) ใช่ ( กรุณาไปทำข้อ 7-1)
  - (2) ไม่ใช่ (กรุณาไปทำข้อ 8)
- ▶ 7-1. สมาชิกที่เหลืออยู่ใน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ท่านมีใครบ้าง? 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ข้อที่เกี่ยวข้องได้ทั้งหมด
- (1) เด็กเล็กและผู้เยาว์
  - (2) ผู้ใหญ่และเด็ก
  - (3) คู่สมรสชาวเกาหลี
  - (4) คู่สมรสชาวเกาหลีหรือคู่สมรสที่มี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
  - (5) พี่น้อง
  - (6) บิดาหรือมารดา
  - (7) ไม่มี
  - (8) อื่นๆ

8. ในช่วงที่ท่านทำงานอยู่ในเกาหลี ท่านประส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ในเรื่องใดบ้าง? 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ข้อที่เกี่ยวข้องได้ทั้งหมด

- (1) การค้างจ่ายเงินเดือน
- (2) การค่าหอ
- (3) การถูกล้อโกง
- (4) 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ปิดกิจการ
- (5) การถูกทารุณทางเพศ
- (6) การถูกบังคับให้ค้าประเวณี







\_\_ (2) ถูกจับกุมตัว แต่ไม่ได้ผ่านทาง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นายจ้าง)

เจ้าหน้าที่เข้ามาจับกุมตัวโดยไม่ขออนุญาตนายจ้างก่อน

\_\_ (3)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เข้ามาทางหน้าต่างหรือประตู โดยที่ไม่ขออนุญาตก่อน

\_\_ (4) ท่านเข้ามารับเงินที่โรงงา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ค้างจ่ายไว้ แล้วนายจ้างแจ้งเจ้าหน้าที่ให้มาจับท่าน

\_\_ (5) ถูกจับกุมตัวที่หน้าโรงงานโดย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

\_\_ (6) อื่นๆ ( )

▶ 15-3. กรณีที่ถูกจับกุมตัวที่ร้านอาหารหรือร้านค้าทั่วไป เจ้าหน้าที่จับกุ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ให้เข้าไปหรือไม่

\_\_ (1) ได้รับอนุญาต

\_\_ (2) 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

\_\_ (3) เข้าไปโดยไม่มีการขออนุญาต

\_\_ (4) ไม่ทราบ

▶ 15-4. กรณีที่ถูกจับกุมตัวในสถานที่ราชการ (กรม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กรม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สถานีตำรวจ เป็นต้น) ท่านถูกจับกุมตัวโดยผู้ใด?

\_\_ (1) ไปแจ้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สถานีตำรวจหรือหน่วยงานราช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 กรมการจ้างงาน เป็นต้น) แล้วถูกจับกุมตัว

\_\_ (2) ถูกจับกุมตัว เพราะความจริง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ป็นคนผิดกฎหมายปรากฏ โดยมีพยานให้ปากคำ

\_\_ (3) ถูกจับกุมตัว เนื่องจากไปทำเรื่องขอต่ออายุการพำนักอาศัยที่กรม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_\_ (4) ถูกแจ้งจับกุมตัวโดยบุคคลอื่น

\_\_ (5) อื่นๆ ( )

※ ต่อไปนี้เป็นคำถามเกี่ยวกับกฎหมายที่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ใช้ในขณะที่ยังจับกุมตัวท่าน

16. กรณีก่อนที่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จะจับกุมตัวท่าน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มีการแสดง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หรือหลักฐานการจับกุมตัว กรุณาทำเครื่องหมายหน้าคำตอบที่เกี่ยวข้อง

\_\_ (1) แสดงบัตรประชาชนให้ดู \_\_ (2) ไม่แสดงบัตรประชาชนให้ดู(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17)

▶ 16-1.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แสดง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ให้ท่านดูเมื่อใด?

\_\_ (1) แสดงบัตรก่อนจับกุมตัว \_\_ (2) จับกุมตัวพร้อมกับแสดงบัตร

\_\_ (3) แสดงบัตรหลังจากจับกุมตัวแล้ว

17. ในขณะที่ถูกจับกุมตัว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ปฏิบัติอย่างไรกับท่าน?

\_\_ (1) ขอให้แสดงวิชาให้ดู

\_\_ (2) ใช้อำนาจกล่าวขอดูวิชาทันที

\_\_ (3) อื่นๆ ( )

18. ในขณะที่ถูกจับกุมตัวอย่างกระทันหัน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มีการแสดงเอกสารการจับกุมตัวให้ท่านดูหรือไม่?

\_\_ (1) แสดงบัตรให้ดู (กรุณาไปทำข้อ 18-1, 18-2) \_\_ (2) ไม่แสดงบัตรให้ดู( กรุณาไปทำข้อ 19)

▶ 18-1.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มีการอธิบายเกี่ยวกับเอกสารของการจับกุมอย่างกระทันหันหรือไม่?

\_\_ (1) อธิบาย \_\_ (2) ไม่อธิบาย

▶ 18-2.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แสดงหลักฐานให้ท่านดูเมื่อใด?

- \_\_ (1) แสดงหลักฐานให้ดูก่อนจับ  
\_\_ (2) แสดงหลักฐานให้ดูพร้อมจับกุมตัว  
\_\_ (3) แสดงหลักฐานให้ดู หลังจากจับกุมตัวไปขึ้นรถควบคุมแล้ว  
\_\_ (4) แสดงหลักฐานให้ดูที่สถานที่ควบคุม  
\_\_ (5) ไม่แสดงให้ดู

### C. ขั้นตอนการขนย้ายและการสอบสวน หลังจากการจับกุม

※ ต่อไปนี้เป็นคำถามเกี่ยวกับการขั้นตอนการขนย้ายแรง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เขาไปที่กรม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หลังจากที่ถูกจับกุมตัว

19. ท่านถูกควบคุมตัวอยู่ในรถควบคุม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เท่าไร?

- \_\_ (1) ภายใน 1 ชั่วโมง  
\_\_ (2) 1~2 ชั่วโมง  
\_\_ (3) 2~3 ชั่วโมง  
\_\_ (4) 3~4 ชั่วโมง  
\_\_ (5) 4~5 ชั่วโมง  
\_\_ (6) มากกว่า 5 ชั่วโมง  
\_\_ (7) อื่นๆ ( )

▶ 19-1 สิ่งที่ทำให้ท่านรู้สึกลำบากในขณะที่ถูกควบคุมตัวไว้ในรถควบคุมคือสิ่งใด? กรุณาทำเครื่องหมาย

✓ หน้าข้อที่สัมพันธ์กับท่าน

- \_\_ (1) รู้สึกเหนื่อย เพราะถูกใส่กุญแจมือ  
\_\_ (2) รู้สึกหิวมาก เพราะไม่ได้ทานอาหาร  
\_\_ (3) รู้สึกคอแห้งมาก เพราะไม่ได้ดื่มน้ำ  
\_\_ (4) รู้สึกไม่สบายตัว เพราะไม่ได้ไปห้องน้ำ

- (5) รู้สึกเหนื่อยล้า เพราะในรถร้อนและเหม็น
- (6) ใช้โทรศัพท์ยาก
- (7) 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แต่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ไม่ยอมรับฟัง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ท่าน
- (8) อื่นๆ ( )

▶ 19-2. ในขณะที่ท่านถูกจับกุมตัวนั้น

ภายในรถควบคุมตัวมีแรง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คนอื่นอยู่ภายในรถอีกกี่คน?

- (1) ไม่มี (มีท่านคนเดียว)
- (2) 1~5 คน
- (3) 5~10 คน
- (4) มากกว่า10 คน

20. หลังจากถูกจับกุมตัวแล้วสถานการณ์เป็นอย่างไร? กรุณาทำเครื่องหมาย ✓ หน้าข้อที่สัมพันธ์กับท่าน

- (1) หลังจากถูกจับกุมตัว ก็ถูกล่งตัวมาที่กรม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ทันที
- (2) ถูกควบคุมตัวจนกว่าเจ้าหน้าที่จะจับกุมแรง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เต็มรถตู้หรือรถบัส
- (3) ให้ท่านบอกที่อยู่ของแรง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คนอื่นๆ แล้วขอให้ท่านร่วมเดินทางไปตามที่อยู่นั้นด้วย

21. ในขณะที่ท่านถูกจับกุมตัว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ท่านหรือไม่?

- (1) ทำ  (2) ไม่ทำ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22)

▶ 21-1.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ทำร้ายท่านด้วยวิธีใด? กรุณาทำเครื่องหมาย ✓ หน้าข้อที่สัมพันธ์กับท่าน

- (1) ใช้มือและเท้าทุบตีท่าน  (2) ใช้อุปกรณ์ในการจับกุมทุบตีท่าน
- (3) ถูก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หลายๆคนรวมทำร้าย

22. ท่าน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จากการจับกุมตัวใช่หรือไม่?

- (1) ใช่  (2) ไม่ใช่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23)

▶ 22-1. เมื่อท่าน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ให้การ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ท่านอย่างไร?

- (1) ได้รับการ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ทันที
- (2) ได้รับการ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 ต่อมาถึงกรม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ที่ควบคุม)
- (3) ไม่ได้ได้รับการ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
- (4) ไม่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 จนถึงต้อง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ตัว



- \_\_ (1) ถูก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จากกรม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เขตอื่นๆ ลวนลาม ทำให้ท่านรู้สึกอับอาย
- \_\_ (2) ถูกควบคุมตัวไว้ในรถควบคุมตัวที่คับแคบและติดอยู่กับคนอื่น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 ทำให้ท่านรู้สึกอับอาย
- \_\_ (3) ถูกจับกุมตัวไว้ในรถควบคุม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 โดยไม่ได้ไปเข้าห้องน้ำ
- \_\_ (4) หลังจากทิ้งจากรถควบคุมแล้ว เจ้าหน้าที่ลากตั้งท่านต่อหน้าบุคคลอื่นๆ ที่มองดู  
จึงทำให้ท่านรู้สึกอับอาย
- \_\_ (5)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ใช้คำพูดเชิงลวนลาม ทำให้รู้สึกอับอาย
- \_\_ (6) 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มีการสัมผัสร่างกาย จึงทำให้ท่านรู้สึกอับอาย
- \_\_ (7) อื่นๆ( )

28. ท่านเคยถูกบังคับให้กรอกเอกสารที่ท่านไม่ทราบถึงเนื้อหาของเอกสารนั้นหรือไม่?

- \_\_ (1) ถูกบังคับบังคับและท่านก็กรอกเอกสารเรียบร้อยแล้ว      \_\_ (2) ถูกบังคับบังคับ  
แต่ท่านปฏิเสธการกรอกเอกสาร

29. ท่านทราบข้อเท็จจริงเกี่ยวกับสิทธิ์ด้านการแก้คดี โดยการขอ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ทนายความหรือบุคคลอื่นๆ จาก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หรือไม่?

- \_\_ (1) ทราบ      \_\_ (2) ไม่ทราบ

※ ต่อไปนี้เป็นคำถามเกี่ยวกับขั้นตอนการทำแบบสอบถาม, ก่อนที่ท่านจะถูกจับกุมตัวจะเข้ามาซึ่งสถานที่ควบคุมท่านและเจ้าหน้าที่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เคยนั่งถาม-ตอบคำถามกันมาก่อนหรือไม่

30. หลังจากถูกจับกุมแล้ว การสื่อสารระหว่างการสอบสวนเป็นอย่างไร?

- \_\_ (1) ใช้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 จึงทำให้ไม่เกิดปัญหา
- \_\_ (2) มีล่ามแปลภาษา ทำให้การสื่อสารเป็นไปได้ด้วยดี
- \_\_ (3) มีล่ามแปลภาษา แต่ก็ยังมีปัญหาด้านการสื่อสารเกิดขึ้นมากด้วยเช่นกัน
- \_\_ (4) ไม่มีล่ามแปลภาษา ทำให้เกือบจะสื่อสารกันไม่ได้

▶ 30-1. ภาษาที่ใช้ในการสอบสวนคือภาษาอะไร?

- \_\_ (1) ภาษาเกาหลี      \_\_ (2) ภาษาอังกฤษ      \_\_ (3) ภาษาประเทศของท่าน      \_\_ (4)

อื่นๆ( )

31. มีการใช้ล่ามแปลภาษาระหว่างการสอบสวนใช่หรือไม่?

- \_\_ (1) ใช่      \_\_ (2) ไม่ใช่(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32)

▶ 31-1. หากมีการใช้ล่ามแปลภาษา ล่ามที่แปลนั้นเป็นใคร?

- \_\_ (1) พนักงานของกรม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_\_ (2) ล่ามที่มาจากนอกสถานที่
- \_\_ (3)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ยู่ในสถานที่ควบคุม

32. ท่านถูกจับกุมตัวไว้ในสถานที่ควบคุม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เท่าใด?

- (1) น้อยกว่า 1อาทิตย์                       (2) น้อยกว่า 2อาทิตย์  
 (3) น้อยกว่า 3อาทิตย์                       (4) น้อยกว่า 4อาทิตย์  
 (5) 1~2 เดือน                                   (6) 2~3เดือน  
 (7) 3~6เดือน                                     (8) 6 เดือน ~ 1ปี  
 (9) มากกว่า 1 ปี

\* หากตอบข้อ (1), (2), (3), (4)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33.

33. หากถูกจับกุมมากกว่าหนึ่งเดือน ท่านถูกจับกุมด้วยเหตุผลใด? กรุณาทำเครื่องหมาย ✓ หน้าข้อที่สัมพันธ์กับท่าน

- (1) ไม่มีตัวเครื่องขึ้น  
 (2) ยังไม่ได้รับเงินหรือสิ่งของ การค้างจ่ายเงินเดือนหรือเงินฝาก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33-1)  
 (3) อยู่ในช่วงร้องเรียน, ยื่นการร้องทุกข์, การยื่นฟ้องร้องคดีต่อศาล (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33-1)  
 (4) อยู่ในช่วงสมัครเป็นผู้ลี้ภัย  
 (5) ยังไม่ได้รับกระเป๋ากลับหรือสิ่งของของตนเอง (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33-1 ㄷ)  
 (6) อยู่ในช่วงรักษาตัวเพราะการเกิดอุบัติเหตุในที่ทำงานหรืออยู่ในช่วงมึนเมา (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33-1)  
 (7) อยู่ในช่วงที่ยังไม่สามารถเดินทา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ได้

▶ 33-1 หากมีปัญหา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เงินฝาก, การค้างจ่ายเงินเดือน, การยื่นเรื่องฟ้องคดี, 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จากที่ทำงาน ฯลฯ ท่านเคย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เจ้าหน้าที่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หรือไม่?

- (1) 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และได้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33-2)  
 (2) 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แต่ถูกปฏิเสธ (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34)  
 (3) ไม่เคย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34)

▶ 33-2. ท่านพอใจกับผลการ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อย่างไร?

- (1) ช่วยเหลือได้มาก                       (2) ช่วยเหลือได้นิดหน่อย  
 (3) เฉยๆ                                       (4) ช่วยเหลือได้ไม่มากเท่าไร  
 (5) ช่วยเหลือไม่ได้เลย

#### D. ขั้นตอนการขนย้ายและส่งตัวเข้าห้องควบคุม

34. เมื่อท่านถูกจับกุมตัวไปไว้ในที่ควบคุมแล้ว วิธีการ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ของท่านเป็นอย่างไร?

- (1) สวมชุดขึ้นใน                       (2) สวมเสื้อขึ้นในอย่างเดียว                       (3) เปลือยกาย                       (4) อื่นๆ

35. ท่านได้ถ่ายภาพบาดแผลที่เกิดจากขั้นตอนการ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 เก็บไว้เป็นหลักฐานหรือไม่?  
 \_\_ (1) เคย \_\_ (2) ไม่เคย ( กรุณาไป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 36)
- ▶ 35-1 หากท่านเคยเรียกร้องให้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 หลักฐานที่เลือกจากการตรวจในครั้งนั้นคือสิ่งใด?  
 \_\_ (1) การถ่ายภาพ \_\_ (2) บันทึกการตรวจสุขภาพ  
 \_\_ (3) ใบรับรองแพทย์ \_\_ (4) สิ่งอื่นๆ
36. กรณีเกี่ยวกับการใส่กุญแจมือในช่วงที่ขนย้ายแรง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เข้าไปห้องควบคุมของกรม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ท่าน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ทำเครื่องหมายได้ทั้งหมด  
 \_\_ (1) ถูกใส่กุญแจมือไว้คนเดียว  
 \_\_ (2) ถูกใส่กุญแจมือร่วมกับคนอื่น(สองคน)  
 \_\_ (3) มือทั้งสองข้าง ถูกใส่กุญแจมือร่วมกับคนอื่นๆต่อกันเพิ่มขึ้นเรื่อยๆ  
 \_\_ (4) เคลื่อนย้ายโดยไม่มีการใส่กุญแจมือ
37. ในขณะที่ทำการขนย้ายแรงงานไปที่สถานที่ควบคุม โรงพยาบาลหรือศาล เจ้าหน้าที่ได้สวมกุญแจท่านเมื่อต่อหน้าสาธารณชนใช่หรือไม่?  
 \_\_ (1) ใช่ \_\_ (2) ไม่ใช่

### E. ความสัมพันธ์ด้านการร้องเรียน

38. ในช่วงที่ท่านเข้ามาอยู่ในสถานที่ควบคุมตัว ท่านเคยได้รับการอธิบายจากเจ้าหน้าที่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เกี่ยวกับสิทธิต่างๆที่ท่านจะได้รับหรือไม่? กรุณาทำเครื่องหมาย ✓ หน้าข้อที่สัมพันธ์กับท่าน  
 \_\_ (1) สิทธิด้านการเข้าเยี่ยมของเพื่อนหรือคนในครอบครัว  
 \_\_ (2) สิทธิด้านการ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ทนายความหรือกงสุล  
 \_\_ (3) สิทธิด้านการยื่นร้องเรียนเกี่ยวกับการจับกุม  
 \_\_ (4) สิทธิด้านการยื่นร้องเรียนต่อ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าน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_\_ (5) สิทธิด้านการเขียนจดหมายหรือการโทรศัพท์
39. ท่านทราบเรื่องสิทธิด้านการร้องเรียนเกี่ยวกับการจับกุมและการบังคับขู่หรือไม่?  
 \_\_ (1) ทราบ \_\_ (2) ไม่ทราบ
40. ท่านทราบเรื่องสิทธิด้านการร้องเรียนต่อ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านสิทธิมนุษยชนหรือไม่?  
 \_\_ (1) ทราบ \_\_ (2) ไม่ทราบ

- ขอบคุณค่ะ -



## 2009 年外国人保护所问卷调查

중국어

您好！

国家人权委员会是为保护和提高所有个人的基本人权而设立的国家机关，不仅保护大韩民国的国民，还保护滞留在大韩民国的外国人的权利。

委员会为了了解未登录外国人在管制过程中的人权情况而实施了本次问卷调查。以调查结果为基础，预计出保护和提高被保护外国人的人权的改善方案。因此，您的回答将成为改善外国人保护所政策的相当重要的因素。

因您的回答以无记名方式进行统计处理，完全保障您的隐私。请您如实回答，不要有所顾虑。再者，对于人权侵害或差别事项有补充说明的内容，可向问卷调查人员示意，问卷调查结束后，另外听取您的意见。

衷心感谢您在百忙之中抽出时间来参与本次问卷调查！

2009 年 7 月

国家人权委员会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humanrights.go.kr>

(邮) 100-842 首尔特别市中区乙支路 1 街 16 番地今世纪大厦

回答方法：在'\_\_\_'上打✓，在'□'里填写数据，在'()'里写字。-在回答中有困难的问题，请写上您的第一想法。

如对本次问卷调查有所疑问，请拨打下面的电话联系。

国家人权委员会侵害调查科 电话) 02-2125-9875, 9656 传真) 02-2125-9658

## A. 个人简介

1. 您是哪国人?

- |                                      |                                    |
|--------------------------------------|------------------------------------|
| <input type="checkbox"/> (1) 孟加拉国    | <input type="checkbox"/> (2) 中国    |
| <input type="checkbox"/> (3) 印度      | <input type="checkbox"/> (4) 印度尼西亚 |
| <input type="checkbox"/> (5) 伊朗      | <input type="checkbox"/> (6) 加纳    |
| <input type="checkbox"/> (7) 日本      | <input type="checkbox"/> (8) 哈萨克斯坦 |
| <input type="checkbox"/> (9) 吉尔吉斯斯坦  | <input type="checkbox"/> (10) 蒙古   |
| <input type="checkbox"/> (11) 缅甸     | <input type="checkbox"/> (12) 尼泊尔  |
| <input type="checkbox"/> (13) 尼日利亚   | <input type="checkbox"/> (14) 巴基斯坦 |
| <input type="checkbox"/> (15) 菲律宾    | <input type="checkbox"/> (16) 俄罗斯  |
| <input type="checkbox"/> (17) 斯里兰卡   | <input type="checkbox"/> (18) 泰国   |
| <input type="checkbox"/> (19) 乌兹别克斯坦 | <input type="checkbox"/> (20) 越南   |
| <input type="checkbox"/> (21) 柬埔寨    | <input type="checkbox"/> (22) 东帝汶  |
| <input type="checkbox"/> (23) 其他( )  |                                    |

2. 您的性别是什么?

- |                                 |                                 |
|---------------------------------|---------------------------------|
| <input type="checkbox"/> (1) 男性 | <input type="checkbox"/> (2) 女性 |
|---------------------------------|---------------------------------|

3. 您的年龄有多大?

- |                                      |                                      |
|--------------------------------------|--------------------------------------|
| <input type="checkbox"/> (1) 9岁以下    | <input type="checkbox"/> (2) 10岁~18岁 |
| <input type="checkbox"/> (3) 19岁~30岁 | <input type="checkbox"/> (4) 31岁~40岁 |
| <input type="checkbox"/> (5) 41岁~50岁 | <input type="checkbox"/> (6) 51岁以上   |

4. 您在韩国滞留的时间共有多长时间?

- |                                     |                                     |
|-------------------------------------|-------------------------------------|
| <input type="checkbox"/> (1) 未满6个月  | <input type="checkbox"/> (2) 未满1年   |
| <input type="checkbox"/> (3) 1~2年   | <input type="checkbox"/> (4) 2~3年   |
| <input type="checkbox"/> (5) 3~4年   | <input type="checkbox"/> (6) 4~5年   |
| <input type="checkbox"/> (7) 5~6年   | <input type="checkbox"/> (8) 6~7年   |
| <input type="checkbox"/> (9) 7~8年   | <input type="checkbox"/> (10) 8~9年  |
| <input type="checkbox"/> (11) 9~10年 | <input type="checkbox"/> (12) 10年以上 |

5. 您来韩国时的签证种类是什么?

- |   |                                       |
|---|---------------------------------------|
| <input type="checkbox"/> (1) C2, C3 短期签证        | <input type="checkbox"/> (2) D2 留学    |
| <input type="checkbox"/> (3) D3 产业研修            | <input type="checkbox"/> (4) F1 访问、同居 |
| <input type="checkbox"/> (5) F2 居住国民或持有永住资格者的配偶 |                                       |
| <input type="checkbox"/> (6) F4 在外同胞            | <input type="checkbox"/> (7) E6 艺术演出  |
| <input type="checkbox"/> (8) E9 非专门就业           | <input type="checkbox"/> (9) E10 内港船员 |
| <input type="checkbox"/> (10) 其他( )             |                                       |

6. 您在管制之前做过哪些工作? (可多选)

- |  |  |
|--|--|
| <input type="checkbox"/> (1) 工厂劳动者                 | <input type="checkbox"/> (2) 建筑业劳动者(俗称“노가다”) |
| <input type="checkbox"/> (3) 渔夫或水产产业劳动者            | <input type="checkbox"/> (4) 农林畜产业劳动者        |
| <input type="checkbox"/> (5) 服务业- 食堂(餐厅) 厨房、清扫、服务员 | <input type="checkbox"/> (6) 保姆、医疗护工         |
| <input type="checkbox"/> (7) 娱乐场所接待员               | <input type="checkbox"/> (8) 留学生             |
| <input type="checkbox"/> (9) 治疗中(产灾、交通事故、疾病等)      | <input type="checkbox"/> (10) 无职业            |
| <input type="checkbox"/> (11) 其他( )                |  |

7. 您在韩国是否还有亲人?

- |   |  |
|---|--|
| <input type="checkbox"/> (1) 有 (请回答 7-1 问题) | <input type="checkbox"/> (2) 没有 (请回答第 8 道问题) |
|---|--|

▶ 7-1. 在韩国的亲人是谁? 请选择相应的事项 (可多选)

- |                                    |   |
|------------------------------------|---|
| <input type="checkbox"/> (1) 未成年子女 | <input type="checkbox"/> (2) 成年子女       |
| <input type="checkbox"/> (3) 韩国人配偶 | <input type="checkbox"/> (4) 持有非韩国国籍的配偶 |
| <input type="checkbox"/> (5) 兄弟姐妹  | <input type="checkbox"/> (6) 父亲或母亲      |
| <input type="checkbox"/> (7) 没有    | <input type="checkbox"/> (8) 其他         |

8. 您在韩国工作时, 受到过哪些侵害? 请选择相应的事项 (可多选)

- |                                   |                                    |
|-----------------------------------|------------------------------------|
| <input type="checkbox"/> (1) 拖欠工资 | <input type="checkbox"/> (2) 暴言    |
| <input type="checkbox"/> (3) 诈骗   | <input type="checkbox"/> (4) 产业灾害  |
| <input type="checkbox"/> (5) 性暴力  | <input type="checkbox"/> (6) 强迫性买卖 |
| <input type="checkbox"/> (7) 家庭暴力 | <input type="checkbox"/> (8) 暴行    |
| <input type="checkbox"/> (9) 没有   | <input type="checkbox"/> (10) 其他   |

9. 您成为未登录身份的事由是什么?

- (1) 滞留期满。
- (2) 虽留有许可的滞留期限, 但是脱离了工作场所。
- (3) 超过了工作场所变更次数。
- (4) 超过了就业期限(2个月)。
- (5) 解除雇佣关系后, 超过了就职申请期限(1个月)。
- (6) 在进行滞留资格以外的劳动活动时被管制。(请回答9-1问题)
- (7) 与韩国人结婚后, 因分居或离婚没能延期。
- (8) 其他( )

▶ 9-1. 若进行了滞留资格以外的活动, 其内容是什么?

- (1) 没在雇佣支援中心申报的公司工作, 而在其他公司工作时被管制。
- (2) 持有学生签证, 在未得到劳动许可的情况下参加工作被管制。
- (3) 持有短期签证、其他访问签证的情况下参加工作被管制。
- (4) 因参加劳动运动、政治活动被管制。
- (5) 其他( )

10. 难民或庇护申请者请选择。

- (1) 难民申请驳回的情况下被管制。
- (2) 在申请难民中被管制。
- (3) 管制后作了难民申请。

## B. 管制过程

11. 您被管制的日期是何时?

200  年  月  日

12. 您被管制的时间是何时?

- (1) 09:00~18:00 (上午9时~下午6时)
- (2) 18:00~00:00 (下午6时~午夜)

- \_\_ (3) 00 : 00 ~ 06 : 00 (午夜 ~ 上午 6 时)  
\_\_ (4) 06 : 00 ~ 09 : 00 (上午 6 时 ~ 上午 9 时)

13. 对您进行管制的人员是谁?

- \_\_ (1) 出入境管理局的公务员                      \_\_ (2) 警察  
\_\_ (3) 其他(                      )                      \_\_ (4) 不知道

14. 管制当时, 管制人员的着装状态怎样?

- \_\_ (1) 穿有制服    \_\_ (2) 穿有管制用马甲    \_\_ (3) 穿有便服    \_\_ (4) 不知道

15. 您被管制的场所是哪里?

- \_\_ (1) 家、宿舍(居住地)(请回答 15-1 问题)  
\_\_ (2) 工作场所(工作单位)(请回答 15-2 问题)  
\_\_ (3) 街道、公园、银行、车站(请回答第 16 道问题)  
\_\_ (4) 饭店、商店(请回答 15-3 问题)  
\_\_ (5) 政府机关和公共机关(出入境管理局、雇佣支援中心、警察局)(请回答 15-4 问题)  
\_\_ (6) 其他 (                      )(请回答第 16 道问题)

▶ 15-1. 在家(居住地)被管制时, 是以怎样的方式被管制的?

- \_\_ (1) 出入境管理局的职员或警察明示身份后要求开门, 开门后被管制。  
\_\_ (2) 不明身份的人在未明示自己身份的情况下要求开门, 开门后管制班的职员突然闯进后被管制。  
\_\_ (3) 管制班的职员通过门或窗户闯进后被管制。  
\_\_ (4) 被潜伏在家门前的管制班员管制。  
\_\_ (5) 其他 (                      )

▶ 15-2. 工作场所(单位、工厂)被管制时, 是以怎样的方式被管制的?

- \_\_ (1) 管制班的职员在雇主(社长)的同意之下进入公司被管制。  
\_\_ (2) 管制班的职员在没有得到雇主(社长)的同意之下闯入公司被管制。  
\_\_ (3) 管制班的职员损坏门或窗户闯进后被管制。  
\_\_ (4) 为了要回拖欠的工资, 访问了工作场所(单位), 被雇主(社长)申告后逮捕。  
\_\_ (5) 在工厂前被管制班的职员管制。  
\_\_ (6) 其他 (                      )

▶ 15-3. 在饭店、商店等被管制时, 管制班的职员是否得到了店主的许可?



- (4) 在保护所里给看过。
- (5) 没看过。

### C. 管制后移送及调查过程

※ 管制后移送至出入境管理局过程的相关问题。

19. 您在管制车辆里停留的时间有多长？

- (1) 1 小时以内
- (2) 1 小时~2 小时
- (3) 2 小时~3 小时
- (4) 3 小时~4 小时
- (5) 4 小时~5 小时
- (6) 5 小时以上
- (7) 其他( )

▶ 19-1 被关在管制车辆里，您认为哪些方面吃力？请在相应的栏上打✓（可多选）

- (1) 戴有手铐感到吃力。
- (2) 没有吃饭，肚子饿。
- (3) 没有喝水，口渴。
- (4) 没有去卫生间感到吃力。
- (5) 车里闷热、有异味感到吃力。
- (6) 使用手机困难。
- (7) 想求助，但是根本不听取。
- (8) 其他( )

▶ 19-2. 您被关在管制车辆时，有几名被管制的外国人与您同乘？

- (1) 没有(自己)
- (2) 1 名~5 名
- (3) 5 名~10 名
- (4) 10 名以上

20. 关于管制后的情况，请在下面相应的栏上打✓（可多选）。

- \_\_ (1) 管制后径直来到出入境管理局。
- \_\_ (2) 为了乘满面包车、客车，他们不停地进行管制，期间一直被关在车里。
- \_\_ (3) 要求说出其他未登录外国人滞留的处所，所以一同前往。

21. 您被逮捕时，是否被管制班的职员殴打？

- \_\_ (1) 是
- \_\_ (2) 否(请回答第 22 道问题)

▶ 21-1. 是以怎样的方式进行殴打的？请在相应的栏上打✓（可多选）。

- \_\_ (1) 拳打脚踢。
- \_\_ (2) 用装备进行殴打。
- \_\_ (3) 被几个人围困殴打。

22. 在管制中是否有受伤？

- \_\_ (1) 有
- \_\_ (2) 没有(请回答第 23 道问题)

▶ 22-1. 受伤时，管制班的职员进行了哪些措施？

- \_\_ (1) 管制当时即刻进行了急救处理。
- \_\_ (2) 来到出入境(保护所)后进行了治疗。
- \_\_ (3) 没有进行治疗。
- \_\_ (4) 伤势轻，不至于进行治疗。

23. 您被逮捕时，管制班的职员是否说粗暴的话或进行辱骂以及人种差别的话？

- \_\_ (1) 是
- \_\_ (2) 否

24. 管制班的职员在逮捕您的时候，使用的装备是什么？请在下面相应的栏上作选择（可多选）。

- \_\_ (1) 手铐
- \_\_ (2) 警绳(缚绳)
- \_\_ (3) 警棍
- \_\_ (4) 气枪
- \_\_ (5) 电子冲击机
- \_\_ (6) 网枪
- \_\_ (7) 其他装备( )
- \_\_ (8) 没有使用任何装备(请回答第 25 道问题)

▶ 24-1. 是否因管制班职员使用的戒具、手铐等而留下伤痕或负伤？

- \_\_ (1) 是
- \_\_ (2) 否

25. 在管制车辆里是否有戴手铐？

- \_\_ (1) 自始至终都戴着手铐。
- \_\_ (2) 刚开始有戴手铐，中途被解开了。





\_\_ (3) 虽然有翻译人员,但是在沟通上有很多问题。

\_\_ (4) 没有翻译人员,几乎无法进行沟通。

▶ 30-1. 调查时使用的语言是什么?

\_\_ (1) 韩国语 \_\_ (2) 英语 \_\_ (3) 母语 \_\_ (4) 其他( )

31. 在调查过程中,是否有翻译人员?

\_\_ (1) 有 \_\_ (2) 没有(请回答第 32 道问题)

▶ 31-1. 如果得到了翻译人员的帮助,那么翻译人员是哪里人?

\_\_ (1) 出入境管理局的职员 \_\_ (2) 从外部来的翻译人员

\_\_ (3) 保护所里的国内人、外国人

32. 您在保护所里共住了多久?

\_\_ (1) 未满 1 周 \_\_ (2) 未满 2 周

\_\_ (3) 未满 3 周 \_\_ (4) 未满 4 周

\_\_ (5) 1~2 个月 \_\_ (6) 2~3 个月

\_\_ (7) 3~6 个月 \_\_ (8) 6 个月~1 年

\_\_ (9) 1 年以上

\* 若选择了(1), (2), (3), (4), 请回答第 33 道问题。

33. 若保护的时间超过了一个月,其理由是什么(可多选)?

\_\_ (1) 没有机票

\_\_ (2) 传租金(租房保证金)、拖欠工资等钱财问题没有得到解决(请回答 33-1 问题)

\_\_ (3) 因申诉、异议申请、民、刑事诉讼正在进行中(请回答 33-1 问题)

\_\_ (4) 因正在进行难民申请中

\_\_ (5) 因没有拿到包裹等个人物品(请回答 33-1 问题)

\_\_ (6) 需得到产业灾害治疗或赔偿(请回答 33-1 问题)

\_\_ (7) 有不能回国的理由

▶ 33-1 有传租金(租房保证金)、拖欠工资、进行诉讼、产业灾害等困难,是否向出入境管理局的职员求助过?

\_\_ (1) 有求助过,而且有接受(请回答第 33-2 问题)

\_\_ (2) 有求助过,但是被拒绝(请回答第 34 道问题)

\_\_ (3) 没有求助过(请回答第 34 道问题)

▶ 33-2. 您对求助后的结果满意吗?

- (1) 有很大的帮助。                       (2) 有点帮助。  
 (3) 一般。                                       (4) 几乎没有帮助。  
 (5) 没有任何帮助。

#### D. 保护所移送及入所过程

34. 在进入保护设施时, 以怎样的方式接受了体检?

- (1) 穿衣状态下     (2) 只穿内衣的状态下     (3) 裸体     (4) 其他

35. 在体检过程中, 对身体上的伤痕是否要求过拍照等以作为证据?

- (1) 有     (2) 没有(请回答第 36 道问题)

▶ 35-1 如有要求过体检, 在保护所中以什么方式保留了证据?

- (1) 照片                                       (2) 体检记录  
 (3) 医生诊断书                               (4) 其他方法

36. 以下是从出入境管理局事务所移送至保护所的过程中, 戴手铐的相关事项。请选择相应的事项(可多选)。

- (1) 自己戴一个手铐移动。  
 (2) 两个人戴一个手铐。  
 (3) 两只手分别与他人一起戴手铐排成行移动。  
 (4) 没有戴手铐移送。

37. 在移送至保护所、医院、法院等外部场所期间, 您戴的手铐是否在众人面前曝光?

- (1) 是     (2) 否

#### E. 相关申诉

38. 您在进入保护所时, 出入境管理局的职员是否向您说明过您所拥有的权利?请在相应的栏上打 ✓(可多选)。

- \_\_\_ (1) 与亲人和家属见面的权利
- \_\_\_ (2) 与律师或本国的领事见面接受帮助的权利
- \_\_\_ (3) 对于拘禁的事实申请异议的权利
- \_\_\_ (4) 对于在外国人保护设施内发生的人权侵害问题，向国家人权委员会申诉的权利
- \_\_\_ (5) 向外部写信或打电话的权利

39. 您知道对于拘禁或强制驱逐出境有申请异议的权利吗？

- \_\_\_ (1) 知道
- \_\_\_ (2) 不知道

40. 您是否知道有向国家人权委员会申诉的权利？

- \_\_\_ (1) 知道
- \_\_\_ (2) 不知道

- 谢谢 -

## २००९ साल प्रवासी बन्दिगृह अन्तरवार्ता

नेपाली

नमस्कार!

राष्ट्रिय मानव अधिकार समिती प्रत्येक व्यक्तिको आधारभूत मानव अधिकारको रक्षा र विकास गर्ने उद्देश्यले सन्चालित राष्ट्रिय सस्था भएकोले कोरियन नागरिक मात्र नभई कोरियाको भूमिमा बसोबास गर्ने प्रवासीहरुको समेत अधिकारको सुरक्षा गर्ने प्रयास गर्दै छ।

यसपाली हाम्रो समितिले अवैधानिक प्रवासीहरुको सम्बन्धमा धरपकडको क्रममा मानव अधिकारको अवस्थालाई बुझ्नको लागि भेट सर्भेक्षण गर्न पुग्यो। यसको नतिजा चाँही बन्दी प्रवासीहरुको मानव अधिकार रक्षा र विकासको उपाय खोज्ने आधार हुनेछ। त्यसैगरी तपाईंले उत्तर दिएको विषय चाँही प्रवासी बन्दी नियमको विकास गर्नको लागि एकदमै महत्वपूर्ण कागजको रुपमा उपयोग हुनेछ।

तपाईंको उत्तरहरु सबै गोप्य राखिने कुरामा हामी पूर्ण सचेत र जिम्मेवार हुन्छौं। चिन्ता नागरिकअन इमान्दारसाथ उत्तर दिनुहुन अनुरोध गर्दछौं।

अनि अझ पूर्ण रुपमा मानव अधिकार हनन वा विभेदको विषयमा भन्न मन लागेको कुराहरु छन भने अन्तरवार्ता लिने व्यक्तिसँग भन्नुभएमा सर्भेक्षण सकिने बित्तिकै तपाईंको समस्यालाई सुन्ने प्रयास गर्नेछौं।

व्यस्तताको बेला महत्वपूर्ण समय उपयोग गर्न दिनुभएकोमा सँझै धन्यवाद दिन्छौं।

२००९ साल ७ महिना infringement

राष्ट्रिय मानव अधिकार समिती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가 16 번지 금세기빌딩

उत्तरको लागि '\_\_\_' मा  '□' भित्र अंक, '( )' भित्र अक्षर लेख्नुभएमा हुन्छ। उत्तर दिन गाह्रो भएको प्रश्न चाँही सोचाइमा आएको उत्तरमा चिनो लगाउनुहोस्

यो अन्तर्वार्ताको विषयमा कुनै प्रश्न भएमा तलको फोन नम्बरमा फोन गर्नुहोला। राष्ट्रिय मानव अधिकार समिती अधिकार दुरुपयोग अनुसन्धान विभाग, फोन ०२-२१२५-९८७५, ९६५६ फ्याक्स) ०२-२१२५-९६५८

## A. ब्यक्तिगत विवरण

१ तपाईंको देश कुन हो?

- |                     |                      |
|---------------------|----------------------|
| - (१) बङ्गलादेश     | -- (२) चाइना         |
| -- (३) भारत         | -- (४) इन्डोनेशिया   |
| -- (५) इरान         | -- (६) घाना          |
| -- (७) जापान        | -- (८) काजाकिस्तान   |
| -- (९) किर्किस्तान  | -- (१०) मङ्गोलिया    |
| -- (११) मियान्मार   | -- (१२) नेपाल        |
| -- (१३) नाइजिरिया   | -- (१४) पाकिस्तान    |
| -- (१५) फिलिपिन     | -- (१६) रसिया        |
| -- (१७) थिलड्का     | -- (१८) थाइल्यान्ड   |
| -- (१९) उजबेकिस्तान | -- (२०) भियतनाम      |
| -- (२१) काम्बोडिया  | -- (२२) पूर्वी तिमोर |
| -- (२३) अन्य ( )    |                      |

२ तपाईंको लिङ्ग के हो?

- |               |              |
|---------------|--------------|
| -- (१) स्त्री | -- (२) पुरुष |
|---------------|--------------|

३ तपाईंको उमेर कति भयो?

- |                    |                    |
|--------------------|--------------------|
| - (१) ९ वर्ष मुनी  | - (२) १०~१८ वर्ष   |
| - (३) १९ ~ ३० वर्ष | - (४) ३१ ~ ४० वर्ष |
| - (५) ४१ ~ ५० वर्ष | - (६) ५१ देखि माथि |

४ तपाईंले कोरियामा बसोबास गरेको अवधी कति भयो?

- |                        |                       |
|------------------------|-----------------------|
| _ (१) छ महिना भन्दा कम | _ (२) १ वर्ष भन्दा कम |
| _ (३) १ ~ २ वर्ष       | _ (४) २ ~ ३ वर्ष      |

- \_ (५) ३~४ वर्ष                      \_ (६) ४ ~ ५ वर्ष  
\_ (७) ५ ~ ६ वर्ष                      \_ (८) ६ ~ ७ वर्ष  
\_ (९) ७ ~ ८ वर्ष                      \_ (१०) ८ ~ ९ वर्ष  
\_ (११) ९ ~ १० वर्ष                      \_ (१२) १० वर्षभन्दा माथि

५ तपाईं कोरिया प्रवेश गर्दा कुन प्रकारको भिषा लिएर आउनुभएको थियो?

- \_ (१) C2, C3 छोटो भ्रमण भिषा                      \_ (२) D2 अध्ययन  
\_ (३) D3 ट्रेनिङ भिषा                      \_ (४) F1 आफन्त भेटघाट  
\_ (५) F2 कोरियन नागरिकको जीवन साथी                      \_ (६) F4 प्रवासी कोरियन  
\_ (७) E6 कलाकार                      \_ (८) E9 विनाशिपको मजदुर  
\_ (९) E10                      \_ (१०) अन्य (                      )

६ तपाईंले आफु धरपकड पर्नु भन्दा अघि कस्तो काम गर्नुभएको थियो सबैमा चिनो लगाउनुहोस्?

- \_ (१) कारखाना मजदुर                      (२) निर्माण मजदुर  
\_ (३) माछा पक्रने मजदुर                      \_ (४) कृषि  
\_ (५) पशुपालन                      \_ (६) रेष्टुरेन्ट वा घरमा काम गर्ने मजदुर  
\_ (७) व्यापार                      \_ (८) अध्ययन  
\_ (९) उपचार (रोग लागेर वा दुर्घटनाभएर) \_ (१०) बिरामी स्याहारसुसार  
\_ (११) बेरोजगार

७ हाल कोरियामा तपाईंको परिवारको कोही मानिस छ?

- \_ (१) छ (७-१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_ (२) छैन (८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७-१ यदी छ भने को छ? सम्बन्धित सबैमा चिनो लगाउनुहोस्।

- \_ (१) नाबालक \_ (२) हुर्केको बच्चा  
\_ (३) कोरियन श्रीमान वा श्रीमती \_ (४) अन्य देशको श्रीमान वा श्रीमती  
\_ (५) दाजुभाइ दिदिबहिनी \_ (६) बुवा वा आमा  
\_ (७) छैनन \_ (८) अन्य ( )

८ तपाईंले कोरियामा काम गर्दा कस्तो समस्याहरू भोग्नुभएको थियो? सम्बन्धित सबैमा चिनो लगाउनुहोस्।

- \_ (१) तलब नदिने
- \_ (२) अपशब्द बोल्ने
- \_ (३) ठगी
- \_ (४) कम्पनिमा दुर्घटना
- \_ (५) यौन
- \_ (६) व्यभिचारको प्रस्ताव
- \_ (७) पारिवारिक दुर्व्यवहार
- \_ (८) कुट्टिपट
- \_ (९) छैन
- \_ (१०) अन्य

९ तपाईं अवैधानिक हुनुभएको कारण के हो?

- \_ (१) भिषाको अबधी सकिएकोले।
- \_ (२) भिषा अबधी हुँदा नै कम्पनी छोडेर हिँडेकोले।
- \_ (३) कम्पनी सर्न पाउने सुविधा समाप्त भएकोले।
- \_ (४) नयाँ कम्पनी खोजेर लागू गर्ने २ महिनाको अबधी समाप्त भएकोले।
- \_ (५) कम्पनी छोडेर रोजगार केन्द्रमा जानकारी गराउनुपर्ने समय (१ महिना) समाप्त भएकोले।
- \_ (६) आफ्नो भिषाको किसिमभन्दा फरक काम गरेको भनेर धरपकडमा परेर। (९-१ मा जानुहोस्)
- \_ (७) कोरियनसँग विवाह गरेको तर कारणबस पारपाचुके गरेकोले भिषा नथपिएर।
- \_ (८) अन्य ( )

► ९-१ भिषाको किसिमभन्दा फरक काम गरेको भए त्यो के हो?

- \_ (१) रोजगार केन्द्रमा दर्ता भएको कम्पनी भन्दा फरक कम्पनिमा काम गरेको भनेर धरपकडमा परेको।
- \_ (२) अध्ययन भिषा भएको र श्रम अनुमती नलिई कम्पनिमा काम गरेको समयमा धरपकडमा परेको।
- \_ (३) छोटो भ्रमण गर्ने भिषा लिइ आएर कम्पनिमा काम गरेको समयमा धरपकडमा परेको।
- \_ (४) मजदुर आन्दोलन, राजनीतिक कृयाकलाप गरेको भनेर धरपकडमा परेको।
- \_ (५) अन्य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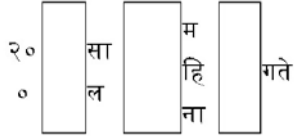
१०. शरणार्थी भिषाको निम्ती आवेदन दिनुभएकाहरूले मात्र चिनो लगाउनुहोस्।

- \_ (१) शरणार्थी भिषाको लागि दिएको आवेदन अस्वीकार भएको समयमा धरपकडमा परेको।
- \_ (२) शरणार्थी भिषाको लागि आवेदन दिएको अबधिमा धरपकडमा परेको।



\_ (३) धरपकडमा परिसकेपछि शरणार्थी भिषाको लागि आवेदन दिएको।

## B. धरपकडको अवस्था



११ तपाईं कहिले धरपकडमा पर्नुभयो?

१२ तपाईं कुन समयमा धरपकडमा पर्नुभयो?

- \_ (१) ०९:०० ~ १८:०० (बिहान ९ बजे ~ बेलुका ६ बजेसम्म)
- \_ (२) १८:०० ~ ००:०० (बेलुका ६ बजे ~ मध्य रातसम्म)
- \_ (३) ००:०० ~ ०६:०० (मध्यरात ~ बिहान ६ बजे सम्म)
- \_ (४) ०६:०० ~ ०९:०० (बिहान ६ बजे ~ बिहान ९ बजेसम्म)

१३ तपाईं कोद्वारा धरपकडमा पर्नुभयो?

- \_ (१) अध्यागमन विभागको कर्मचारीद्वारा \_ (२) प्रहरीद्वारा
- \_ (३) अन्य ( ) \_ (४) थाहा छैन

१४ धरपकडको समयमा धरपकड गर्नेको पहिरनको अवस्था कस्तो थियो?

- \_ (१) प्रहरिको पहिरन
- \_ (२) अध्यागमन कर्मचारीको पहिरन
- \_ (३) साधारण पहिरन
- \_ (४) थाहा छैन

१५ तपाईं कुन स्थानमा धरपकडमा पर्नुभयो?

- \_ (१) घरमा, बासस्थान (डेरा) (१५-१ हरफमा जानुहोस्)
- \_ (२) काम गर्ने स्थान (कम्पनी) (१५-२ हरफमा जानुहोस्)
- \_ (३) बाटोमा, पार्कमा, बैंकमा, टर्मिनलमा (१६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_ (४) रेष्टुरेन्टमा, पसलमा (१५-३. हरफमा जानुहोस्)
- \_ (५) कार्यालयमा (अध्यागमन विभाग, रोजगार केन्द्र, प्रहरी चौकी) (१५-४. हरफमा जानुहोस्)
- \_ (६) अन्य ( ) (१६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१५-१. घर (डैरा)बाट धरपकड हुँदा कस्तो प्रकारले धरपकड भयो?

- \_ (१) अध्यगमन विभागको कर्मचारी वा प्रहरिले आफ्नो परिचय दिएर ढोका खोल्नुहोस् भन्दा ढोका खोल्दा धरपकड भयो।
- \_ (२) कोही व्यक्तिले आफ्नो परिचय नदिइ ढोका खोल्नुस् भनेकोले ढोका खोल्दा अचानक धरपकड गर्नेहरू घरभित्रै आएर धरपकड भयो।
- \_ (३) धरपकड गर्ने व्यक्तिहरू ढोका वा झ्यालबाट अनुमतिबिना छिरेर धरपकड भयो।
- \_ (४) घर अगाडि लुकेर बसेका धरपकडकर्ताद्वारा धरपकड भयो।
- \_ (५) अन्य ( )

▶ १५-२. कामगर्ने स्थान (कार्यालय, कम्पनी)बाट धरपकड भएको भए कस्तो प्रकारले धरपकड भएकोथियो?

- \_ (१) धरपकडकर्ताहरू कम्पनीको मालिक (साहु)सँग अनुमती लिएर कम्पनी भित्र पसी धरपकड भयो।
- \_ (२) धरपकडकर्ताहरू कम्पनीको मालिक (साहु)सँगको अनुमती बिना कम्पनी भित्र पसी धरपकड भयो।
- \_ (३) धरपकडकर्ताहरू कम्पनीको ढोका वा झ्याल फोरेर अनुमती बिना कम्पनी भित्र पसी धरपकड भयो।
- \_ (४) लिन बाँकी भएको तलब लिन कार्यालय (कम्पनी) मा जादा कम्पनीको मालिक (साहु) ले उजुरी गरेकोले समातिए।
- \_ (५) कम्पनी अगाडिबाट धरपकडकर्ताहरूद्वारा धरपकड भयो।
- \_ (६) अन्य ( )

▶ १५-३. रेष्टुरेन्ट, पसलबाट धरपकड हुँदा त्यहाको मालिकले धरपकडकर्ताहरूलाई भित्र पस्ने अनुमती दिएका थिए?

- \_ (१) अनुमती दिएका थिए
- \_ (२) अनुमती दिएका थिएनन
- \_ (३) अनुमती नै नमागी भित्र आए
- \_ (४) राम्रो थाहा भएन

▶ १५-४. सरकारी कार्यालय (अध्यागमन विभाग, रोजगार केन्द्र, प्रहरी चौकी आदी) बाट धरपकड भएको भए कस्तो प्रकारले भएको थियो?

- \_ (१) प्रहरी वा सरकारी कार्यालय (श्रम विभाग, रोजगार केन्द्र आदी) मा अन्यायको उजुरी गर्न जाँदा धरपकड भयो।
- \_ (२) साक्षी, प्रतक्ष दर्शीको गवाही दिन जाँदा अवैधानिक भएको थाहा भई समातिएँ।
- \_ (३) भिषाको लागि आवेदन दिन अध्यागमन विभागमा जाँदा समातिएँ।
- \_ (४) कसैले उजुरी गरेकोले समातिएँ।
- \_ (५) अन्य ( )

※ तलका प्रश्नचाहिँ तपाईँ धरपकडमा पर्नुहुँदा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कानून पालन गरेकी गरेनन भन्ने बारेमा हो।

१६.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धरपकड गर्नुभन्दा अघि आफ्नो परिचयपत्र देखाउने र आफ्नो सम्बन्धित कार्यालयको जानकारी गराउनु आवश्यक हुन्छ।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आफ्नो परिचयपत्र प्रस्तुत गरेको समयको अवस्थामा चिनो लगाउनुहोस्।

\_ (१) परिचयपत्र देखाए \_ (२) परिचयपत्र देखाएनन (१७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१६-१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परिचयपत्र कहिले देखाए नि?

- \_ (१) धरपकड अघि देखाए \_ (२) धरपकडसँगै देखाए
- \_ (३) धरपकड पछि देखाए

१७. धरपकडको समयमा धरपकडकर्ताको व्यवहार कस्तो थियो?

- \_ (१) मुखले भिषा देखाउनुहोस् भनी भने।
- \_ (२) देखनेबित्तिकै बलजफती हात पछाडि फर्काएर भिषा देखाउन भने।
- \_ (३) अन्य ( )

१८. तपाइलाई धरपकड गर्दा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आकस्मिक पक्राउको पत्र देखाए त?

\_ (१) देखाए (१८-१, १८-२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_ (२) देखाएनन (१९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१८-१. आकस्मिक पक्राउको पत्रको बारेमा पूर्णरूपमा बताए त?

\_ (१) बताए \_ (२) बताएनन्

► १८-२ तपाईंलाई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त्यो पत्र कहिले देखाए नि?

\_ (१) धरपकड गर्नु अघि देखाए

\_ (२) धरपकड सङ्गै देखाए

\_ (३) धरपकड भैसकेपछि बसभिन्न देखाए

\_ (४) बन्दिगृह पुगेर देखाए

\_ (५) देखाएनन्

### C. धरपकड पछि ठाउँ परिवर्तन तथा जाँचको अवस्था

※ धरपकड भैसकेपछि अध्यागमन विभाग जाने अवधिको सम्बन्धका प्रश्नहरू

१९. तपाईं धरपकडको गाडीमा कति समय रहनुभयो?

\_ (१) १ घण्टाभन्दा कम

\_ (२) १ घण्टा ~ २ घण्टा

\_ (३) २ घण्टा ~ ३ घण्टा

\_ (४) ३ घण्टा ~ ४ घण्टा

\_ (५) ४ घण्टा ~ ५ घण्टा

\_ (६) ५ घण्टा भन्दा बढी

\_ (७) अन्य ( )

)

► १९-१ धरपकड पछि गाडीमा रहदा दुःख अफ्ठ्यारो केही भएको थियो भने तलका मध्य अनुभव गरेका सबैमा ✓ चिनी लगाउनुहोस्।

\_ (१) हतकडी लगाएर रहेकोले अफ्ठ्यारो भएको थियो।

\_ (२) खाना खान नपाएर भोक लागेकोथियो।

\_ (३) पानी पिउन नपाएर तिर्खा लागेको थियो।

\_ (४) शौचालय जान नपाएर अफ्ठ्यारो भएको थियो।

\_ (५) एकदमै गर्मी भै गन्ध आएकोले अफ्ठ्यारो भएको थियो।

\_ (६) फोन प्रयोग गर्न कठिन भएको थियो।

\_ (७) सहायता माग्न खोजेको तर पटकै कुरा सुनिदिएनन्।

\_ (८) अन्य ( )

▶ १९-२ तपाईं धरपकड गाडीमा कोचिएर रहदा धरपकड भएका अन्य प्रवासीहरु कतिजना सँगै चढेका थिए?

- \_ (१) थिएनन (एकलै थिए)
- \_ (२) १ जना ~ ५ जना
- \_ (३) ५ जना ~ १० जना
- \_ (४) १० जना भन्दा माथि

२० धरपकड पछिको अवस्थाको विषयमा तलका मध्य सम्बन्धित सबैमा ✓ चिनो लगाउनुहोस्।

- \_ (१) धरपकडपछि सोझै अध्यागमन विभागमा आइयो।
- \_ (२) गाडी, बसमा अरु मानिसहरु नभरुनजेल फनफनि घुमेर धरपकड गरेर नियमित गाडीभित्र कोचिएर बस्नु पर्यो।
- \_ (३) अरु अवैधानिक प्रवासीहरु भएको ठाउँ देखाइद्वे भनेकोले सँगै अर्को ठाउमा गइयो।

२१ तपाईं पक्राउ पर्नुहुँदा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तपाईंमाथि कुटपिट पनि गरे?

- \_ (१) हो \_ (२) होइन (२२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२१-१ कस्तो किसिमले कुटपिट गरेका थिए सम्बन्धित सबैमा चिनो लगाउनुहोस्।
- \_ (१) हात र खुट्टाले पिटे \_ (२) हतियारले पिटे
- \_ (३) धेरै जनाले घेरेर पिटे

२२ धरपकडको क्रममा कतै चोटपटक लागेको छ?

- \_ (१) छ \_ (२) छैन (२३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२२-१ चोटपटक लागेको बेला धरपकडकर्ताहरुबाट कस्तो व्यवस्था भयो?

- \_ (१) धरपकडको समयमा तुरुन्तै प्राथमिक उपचार पाएँ।
- \_ (२) अध्यागमन (थुनागृह)मा आएर उपचार पाएँ।
- \_ (३) उपचार नै पाउन सकिन।
- \_ (४) उपचार गर्नुपर्ने गरी ठुलो चोटपटक लागेको थिएन।

२३ तपाईं पक्राउ पर्नुहुँदा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अपशब्द वा गाली, जातिय भेदभाव जस्तो व्यवहार गरेका थिए?

- \_ (१) थिए
- \_ (२) थिएनन

२४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तपाईंलाई पक्रदा प्रयोग गरेको बस्तुचाँही के हो? तलका मध्य सम्बन्धित सबै छान्नुहोस्।

- \_ (१) हाथकडी      \_ (२) डोरी (दाम्लो)      \_ (३) प्रहरिको लौरो  
 \_ (४) हावाको बन्दुक      \_ (५) करेन्ट      \_ (६) जाली फाल्ने बन्दुक  
 \_ (७) अन्य हतियार (                      )      \_ (८) केहिपनि प्रयोग गरेको थिएन (२५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२४-१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प्रयोग गरेको पक्रने साधन, हाथकडी जस्ता बस्तुको कारण घाऊ वा कतै चोटपटक लागेको थियो?

- \_ (१) थियो      \_ (२) थिएन

२५ धरपकडको गाडी भित्र हाथकडी लगाएको थियो?

- \_ (१) शुरुदेखि अन्त्यसम्म निरन्तर लगाएको थियो।  
 \_ (२) शुरुमा चाँही हाथकडी लगाएर बीचमा खोलिदिए।  
 \_ (३) शुरुमा चाँही नलगाएर बीचमा गएर हाथकडी लगाए।  
 \_ (४) लगाएनन (२६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२५-१ औजार (हाथकडी) प्रयोग भएको थियो भने कती घण्टासम्म हाथकडी लगाइयो?

- \_ (१) १ घण्टाभन्दा कम      \_ (२) १ घण्टा ~ २ घण्टा      \_ (३) २ घण्टा ~ ३ घण्टा  
 \_ (४) ३~४ घण्टा      \_ (५) ४~५ घण्टा      \_ (६) ५ घण्टा भन्दा माथि

२६ तपाईंलाई धरपकड गर्दा धरपकडकर्ताको लिङ्ग चाँही?

- \_ (१) पुरुष      \_ (२) स्त्री      \_ (३) स्त्री पुरुष दुवै

२७ तपाईंले धरपकडको अवधी वा धरपकडको गाडीभित्र यौन सम्बन्धित शर्म अनुभव गर्नुभएको थियो?

- \_ (१) थियो      \_ (२) थिएन (२८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यौन सम्बन्धित शर्म अनुभव गर्नुभएको कारणको बारेमा तलका मध्य सम्बन्धित सबै छान्नुहोस्।

- \_ (१) आफुभन्दा फरक लिङ्गकाका अध्यगमन धरपकडकर्ताद्वारा समातीएर जानुपर्दा यौन सम्बन्धित शर्म अनुभव भयो।
- \_ (२) साँघुरो धरपकडको गाडीभित्र लामो समयसम्म फरक लिङ्गका मानिसहरूसङ्ग जोडिएर रहनुपर्दा
- \_ (३) धरपकडको गाडीभित्र लामो समयसम्म कोचिएर रहनुपर्दा शौचालय पनि जान पाइएन।
- \_ (४) गाडीबाट ओर्लेपछि अरु मान्छेहरूको सामु धेरै मानिसहरू सङ्गै बाँधिएर जानुपर्दा शर्म लाग्यो।
- \_ (५)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यौन सम्बन्धी टट्टा गरेकाले शर्म अनुभव भयो।
- \_ (६)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शरिरमा छोएकोले शर्म अनुभव भयो।
- \_ (७) अन्य ( )

२८ तपाईंलाई विषय नै के हो भनी थाहा नभएको अवस्थामा कागजमा सहि गर्न जबर्जस्ती गरिएको थियो?

- \_ (१) जबर्जस्ती गरेकोले सहि गर्ने।
- \_ (२) जबर्जस्ती गरेको थियो तर इन्कार गर्ने।

२९। धरपकडकर्ताले वकिल वा अन्य व्यक्तिको सहायता लिन वा आफैले आफ्नो वकालत गर्न पाउने अधिकार छ भन्ने जानकारी गराएका थिए?

- \_ (१) थिए \_ (२) थिएनन

\* तल चाँही तपाईं पक्राउ परेर आएपछि बन्दीगृहमा पस्नुभन्दा पहिले अध्यागमनका कर्मचारीको आमने सामने बसेर प्रश्न उत्तर गर्दै अनुसन्धान लिएको क्रमका प्रश्नहरू हुन्।

३० धरपकडको लगत्तै पछि बन्दी कोठा अनुसन्धानको क्रममा भाषा कत्तिको बुझ्नुभएको थियो?

- \_ (१) कोरियन भाषामा बातचित गरेको हुनाले कुनै समस्या भएन।
- \_ (२) उल्था गर्ने व्यक्तिको सहायताले गर्दा भाषामा समस्या भएन।
- \_ (३) उल्था गर्ने व्यक्ती थियो तर पनि भाषाको निकै समस्या भयो।
- \_ (४) उल्था गर्ने व्यक्ती नभएकोले भाषा केही पनि बुझिएन।

▶ ३०-१ अनुसन्धान चाँही कुन भाषामा भएको थियो?

\_ (१) कोरियन \_ (२) अङ्ग्रेजी \_ (३) आफ्नै भाषामा \_ (४) अन्य

३१ अनुसन्धानको क्रममा उल्था गर्ने व्यक्ती थियो?

\_ (१) थियो \_ (२) थिएन (३२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३१-१ उल्था गर्नेको सहायता लिएको भए उल्था गर्ने व्यक्ती कस्तो मानिस हो?

\_ (१) अध्यगमन विभागको कर्मचारी \_ (२) बाहिरबाट आएको दोभाषे  
\_ (३) बन्दीगृहको स्वदेशी विदेशी

३२. बन्दीगृहमा रहेको समय करिव कति जती भयो?

\_ (१) एक हप्ता भन्दा कम \_ (२) २ हप्ता भन्दा कम  
\_ (३) ३ हप्ता भन्दा कम \_ (४) ४ हप्ता भन्दा कम  
\_ (५) १~२ महिना \_ (६) २ ~ ३ महिना  
\_ (७) ३~ ६ महिना \_ (८) ६ महिना ~ १ वर्ष  
\_ (९) १ वर्षभन्दा माथि

\* (१), (२), (३), (४) नम्बरको उत्तर हुनेहरु चाँही ३३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३३ एक महिनाभन्दा बढी बन्दी हुनुहुन्छ भने त्यसको कारण के हो सबैमा चिनो लगाउनुहोस्।

\_ (१) जहाजको टिकट नभएकोले  
\_ (२) धरौटी, तलब तथा पैसा र अन्य कुराको समस्या समाधान नभएकोले।  
\_ (३) कुनै विषयमा आवेदन, अन्य निवेदन सामाजिक वा कुनै अपराधिक कुराको कार्वाही प्रकृया भैरहेकोले। (३३-१ मा जानुहोस्)  
\_ (४) शरणार्थीकोलागी आवेदन दिएको हुनाले।  
\_ (५) झोला वा आफ्नो व्यक्तिगत सामान पाउन नसकेकोले। (३३-१ मा जानुहोस्)  
\_ (६) कम्पनी दुर्घटनाको उपचार वा क्षतिपुर्ति पाउन बाँकी भएकोले। (३३-१ मा जानुहोस्)  
\_ (७) आफ्नो देशमा जान नमिल्ने कारण भएकोले।



▶ ३३-१ धरौटी, पाउन बाँकी तलब, मुद्धा चलिरहेको, कम्पनी दुर्घटना जस्ता कुराहरुको समस्या भोगिरहनुभएको भए अध्यागमन विभागका कर्मचारीहरूसँग सहायताको लागि अनुरोध गर्नुभयो?

- \_ (१) सहायताको लागि अनुरोध गरेको सुनिदिनुभयो। (३३-२ मा जानुहोस्)
- \_ (२) सहायताको लागि अनुरोध गरेको तर सुनुवाई भएन। ३३-२ मा जानुहोस्)
- \_ (३) सहायताको लागि अनुरोध गरेकै छैन। (३४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३३-२ सहायताको लागि अनुरोध गरेपछिको नतिजामा सन्तुष्ट हुनुहुन्छ?

- \_ (१) एकदमै सहायता भयो। \_ (२) केही मात्रामा सहायता भयो।
- \_ (३) त्यस्तै त्यस्तै भयो। \_ (४) त्यति राम्रो सहायता भएन।
- \_ (५) केहिपनि सहायता भएन।

#### D. बन्दिगृह प्रवेश तथा सर्ने अवस्थामा

३४. बन्दीकोठामा प्रवेश गर्दा कस्तो तरिकाले शरीर जाँच गरियो?

- \_ (१) कपडा लगाएको अवस्थामा \_ (भित्री कपडा मात्र लगाएको अवस्थामा)
- \_ (३) नाङ्गो शरिरमा \_ (४) अन्य ( )

३५. शारीरिक परिक्षण गर्ने क्रममा शरीरमा भएको घाउचोटको बारेमा प्रमाण जोगाउनको लागि फोटो खिच्न माग गरिएको थियो?

- \_ (१) थियो \_ (२) थिएन (३६ नम्बरमा जानुहोस्)

▶ ३५-१ शारीरिक परिक्षणको माग गरिएको थियो भने बन्दीगृहबाट कस्तो तरिकाले प्रमाण जोगाइ राखेका छन?

- \_ (१) फोटो खिचेर \_ (२) शारीरिक परिक्षणको लेखा
- \_ (३) डाक्टरको रिपोर्ट \_ (४) अन्य तरिका

३६. अध्यागमन विभागबाट बन्दीगृहमा सर्ने क्रममा हाथकडी प्रयोगसँग सम्बन्धित अवस्था। सम्बन्धित सबै अवस्थामा चिनो लगाउनुहोस्।

- \_ (१) एकलै हाथकडी लगाएर हिँडेको
- \_ (२) एउटा हाथकडी दुई जनालाई प्रयोग गरेर हिँडेको
- \_ (३) दुबैपट्टिको हातमा फरक मानिसहरूसँग हाथकडी लगाएर लामो लाइन लागेर हिँडेको
- \_ (४) हाथकडी प्रयोग नगरी त्यसै हिँडेर सरेको

३७ बन्दीगृह, अस्पताल, अदालत जस्ता बाहिरका ठाउँमा जानुपर्दा तपाईंको हाथकडी प्रयोग धेरै व्यक्तिहरूको सामनेमा देखेको अवस्था थियो?

\_ (१) थियो

\_ (२) थिएन

### E. वास्तविकता सम्बन्धी

३८ तपाईं प्रवासी बन्दीगृह भित्र प्रवेश गर्दा अध्यागमनको कर्मचारीबाट तपाईंले पाउन सक्ने अधिकारको बारेमा जानकारी पाउनुभएको थियो? सम्बन्धित सबैमा ✓ चिनो लगाउनुहोस्।

\_ (१) साथी वा आफन्तलाई भेट गर्न पाउने अधिकार

\_ (२) बकिल वा आफ्नो देशको मानिससँग परमर्श लिएर अथवा भेटेर सहायता लिना पाउने अधिकार

\_ (३) बन्दिभएको यथार्थता वा अन्य विषयमा उजुरी गर्न पाउने अधिकार

\_ (४) प्रवासी बन्दीगृह भित्र भएको मानव अधिकार हननको बारेमा राष्ट्रिय मानव अधिकार समितिमा उजुरी गर्न पाउने अधिकार

\_ (५) बाहिर चिट्ठी लेख्न वा फोन गर्न पाउने अधिकार

३९ बन्दी भएको वा बलजफती देश पठाउन लागेको विषयमा उजुरी गर्न पाउने अधिकार छ भन्ने थाहा छ?

\_ (१) छ \_ (२) छैन

४० राष्ट्रिय मानव अधिकार समितिलाई निवेदन गर्न पाउने अधिकार छ भन्ने थाहा छ?

\_ (१) छ

\_ (२) छैन

धन्यवाद।

---

##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 인 쇄 | 2010년 2월

| 발 행 | 2010년 2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675 | F A X | (02) 2125-965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사전 승인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29-14